

# 베트남

---

# 투자진출

---

# 상담사례집

---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KOTRA 및 저자들은 베트남 투자진출 상담사례집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베트남 외국투자청(FIA) 및 관련 기관의 출판물, 홈페이지, 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5

<b>I. 투자기초지식</b> .....	<b>3</b>
상담사례 1. 안경점 .....	4
상담사례 2. 유아복&아동복 .....	4
상담사례 3. 호치민시 인근 공단 및 항구 .....	5
상담사례 4. 제조업 공장 .....	5
상담사례 5. 법인설립 및 업종전환 .....	6
상담사례 6. 부품제조업체 .....	7
상담사례 7. 자동화 물류 설비 .....	8
상담사례 8. 호치민 하이테크 파크 .....	8
상담사례 9. 요식업과 유통업 겸업 .....	9
상담사례 10. 보세구역(EPE) 설정 .....	11
상담사례 11. 식품 유통업 .....	11
상담사례 12. 다단계 유통 .....	12
상담사례 13. 빙수 프랜차이즈 .....	12
상담사례 14. 통신장비 원부자재 제조업 .....	13
상담사례 15. 중장비 임대사업 .....	13
상담사례 16. 다른 법인의 여유 부지를 임대하여 법인 설립 시 고려 사항 .....	14
상담사례 17. 유통업, 성형외과 .....	14
상담사례 18. 무역업 .....	14
상담사례 19. 제조업 진출을 위한 베트남 투자환경 .....	15
상담사례 20. 법인 설립 시 100%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등 .....	16
상담사례 21. 내륙운송업의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여부 .....	17
상담사례 22. 안프억 공단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	18
상담사례 23. 건설업 법인 설립 .....	18
상담사례 24. 아마타 공단 & 연짜 공단 .....	19
상담사례 25. 인터넷을 통한 의류 유통업 .....	19
상담사례 26. 농업비료 시장현황 .....	20
상담사례 27. 전력요금 및 인건비(제조업) .....	21
상담사례 28. 커피 프랜차이즈 .....	22
<b>II. 투자 환경</b> .....	<b>23</b>
상담사례 29. 빈증성 공단 정보 및 투자환경 .....	24
상담사례 30. 베트남 투자환경 .....	24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상담사례 31.	주변국과 임금 수준 비교 .....	25
상담사례 32.	베트남 임금 .....	25
상담사례 33.	베트남 농업 관련 투자환경 .....	26
상담사례 34.	베트남 전력 수급 현황 .....	26
상담사례 35.	중고 엔진 수출 .....	27
상담사례 36.	베트남 교육업 구체적 사례 문의 .....	27
상담사례 37.	M&A 동향 문의 .....	28
상담사례 38.	메콩델타 지역 물류비, 현지법인설립 vs 외투법인설립 .....	28
상담사례 39.	빈증성 임대공장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 .....	29
상담사례 40.	냉장/냉동창고, 냉장차량, 창고업 .....	29
상담사례 41.	청산 절차 및 공단 외 투자 시 유의점 .....	30
상담사례 42.	건설업 지사 설립 가부 .....	31

**Ⅲ. 투자 유치제도 .....** **33**

상담사례 43.	환경오염유발산업 진출 허용 여부 .....	34
상담사례 44.	원산지 증명서 중 AK Form 발행 .....	34
상담사례 45.	현지법인 지분 양수도 절차 및 유의점 .....	35
상담사례 46.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	35
상담사례 47.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36
상담사례 48.	계약업 .....	36
상담사례 49.	베트남 공단 현황 .....	37
상담사례 50.	교육업 .....	37
상담사례 51.	베트남 내에서 ISO 인증 가부 .....	38
상담사례 52.	계약유통업 가부 .....	38
상담사례 53.	사행성 게임 가부 .....	38
상담사례 54.	인쇄업 투자진출 가부 문의 .....	39
상담사례 55.	외식업 100% 외국인 지분 진출 가부 .....	40
상담사례 56.	합작법인 설립 시 지분율 설정 .....	40
상담사례 57.	수출가공공단 내 제조업체 설립 .....	41
상담사례 58.	현물출자 가부 및 중고차 수입 .....	41
상담사례 59.	교육업종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가부 .....	42
상담사례 60.	물류업 .....	42
상담사례 61.	알루미늄 스크랩 통관 .....	43
상담사례 62.	무역업, 유통업 .....	43
상담사례 63.	틸라피아 양식업 .....	44
상담사례 64.	화장품 수입업체 설립 가부 .....	44

베트남 투자진출 상담사례집  
**CONTENTS**



상담사례 65.	최저 법정자본금 및 총 투자자본금과 정관자본금의 비율 .....	45
상담사례 66.	프로젝트 투자 방식 .....	46
상담사례 67.	원산지증명서 취득 .....	46
상담사례 68.	법인설립 전 광고계약 .....	47
상담사례 69.	물류업 .....	47
상담사례 70.	사이공하이테크파크 입주 조건 .....	47
상담사례 71.	무역법인 설립 가부 및 이후 절차 .....	48
상담사례 72.	투자자 국적 .....	48
상담사례 73.	청산 .....	48
상담사례 74.	바리아-붕따우 투자환경 .....	49
상담사례 75.	유통업 .....	50
상담사례 76.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전환 절차 .....	50
상담사례 77.	건설업, 도급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필요 여부 .....	51
상담사례 78.	금형설계 법인 설립 .....	52
상담사례 79.	화장품 유통점 합작법인 설립 .....	52
상담사례 80.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	53
상담사례 81.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	54
상담사례 82.	파견업, 유료직업소 개업 .....	54
상담사례 83.	한국산 생수 유통에 필요한 등록 사항 .....	55
상담사례 84.	폐기물 리사이클 사업 .....	55
상담사례 85.	저온 창고 운영 .....	55
상담사례 86.	우선주 .....	56
상담사례 87.	건설업(하청)의 설립 형태 .....	57
상담사례 88.	공단사업체의 지분 인수 .....	57
상담사례 89.	현지인 명의 이용 호텔사업 시 위험성 .....	57
상담사례 90.	영업을 위한 지사 설립 .....	58
상담사례 91.	건설 중장비 개인 소유 가부 .....	58

**IV. 투자 절차 .....** **59**

상담사례 92.	의료기기 무역, 유통법인 설립 가부 및 절차 .....	60
상담사례 93.	한국으로 채권 회수 시 절차 .....	60
상담사례 94.	물류업종 투자 시 고려 사항 .....	61
상담사례 95.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	61
상담사례 96.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 .....	62
상담사례 97.	유통법인 진출 시 2호점 개설 관련 .....	62
상담사례 98.	요식업 외국인투자회사 진출 가부 .....	63
상담사례 99.	베트남 물류 .....	63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상담사례 100. 제2공장 설립 시 신규법인 설립 여부	63
상담사례 101. 물류업 현황	64
상담사례 102. 초과	65
상담사례 103. 대표사무소 폐쇄하지 않고 법인 설립	66
상담사례 104. 설계업체 설립 시 정관자본금 설정, 법적 대표자의 부재 시 처리	66
상담사례 105. 제조업(공단 외 부지)	68
상담사례 106. 경리장 채용 의무, 법인인감	68
상담사례 107. 화장품 소매 유통업	69
상담사례 108. 현물출자	69
상담사례 109. 제조업 최소자본금	70
상담사례 110. AEO 공인신청	70
상담사례 111. 공단/비공단 투자 차이점 및 투자인센티브	71
상담사례 112. 사출업체 설립	71
상담사례 113. 허가 절차대행	71
상담사례 114. 제조업 인수 시 유의점	72

## **V. 현지 경영관리** ..... 73

### **1. 세무** ..... 74

상담사례 115. 부가세	74
상담사례 116. BCC계약, 로열티	74
상담사례 117. 특별우대세율	75
상담사례 118. 임대업 및 관련 세금	76
상담사례 119. 부가세 환급	76

### **2. 외환/금융** ..... 77

상담사례 120. 법인설립 전 자본금 인정 요건	77
상담사례 121. 해외송금	77
상담사례 122. 본·지사간 자금대여 약정	78

### **3. 매각/청산** ..... 81

상담사례 123. 청산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81
상담사례 124. 청산방법	82
상담사례 125. 청산, 영업정지	82



# 2016

<b>I. 투자 기초지식</b> .....	<b>85</b>
상담사례 1.  출입국, 무비자 .....	86
상담사례 2.  취업규칙 .....	86
상담사례 3.  농장설립 .....	87
상담사례 4.  현물출자 납입기한 초과 .....	87
상담사례 5.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방 .....	88
상담사례 6.  제조업 .....	88
상담사례 7.  제조업체의 법적 최저자본금, 장기차입금 비율 제한 .....	88
상담사례 8.  재무이사 채용 .....	89
상담사례 9.  로컬기업 투자 .....	89
상담사례 10.  지분투자, 양도 .....	89
상담사례 11.  교육컨텐츠 수출 절차 .....	90
상담사례 12.  임가공 .....	90
상담사례 13.  노사분규 .....	91
상담사례 14.  공단 외 부지 .....	91
상담사례 15.  조건부허가업종의 의미 .....	91
상담사례 16.  공장 유희 토지에 부동산 임대업 .....	92
상담사례 17.  소규모 제조업 라이선스 특수성 여부 및 공장 임대료 .....	93
상담사례 18.  호치민 근교 투자환경 .....	93
상담사례 19.  IT인력 평균 임금 .....	94
<b>II. 투자 환경</b> .....	<b>95</b>
상담사례 20.  투자환경 .....	96
상담사례 21.  호치민(남부), 다낭(중부) 비교 .....	96
상담사례 22.  기업신용조사 .....	97
<b>III. 투자 유치제도</b> .....	<b>99</b>
상담사례 23.  제조업 공단 입주 필수적인지 .....	100
상담사례 24.  유통/창고업 .....	100
상담사례 25.  분쟁해결(유치권, 가압류) .....	100
상담사례 26.  전자상거래(유통업), 법인장 국적 .....	101
상담사례 27.  현지 파트너에게 사업 위임 .....	101
상담사례 28.  의료설비 .....	102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상담사례 29.	기업법 .....	103
상담사례 30.	합작회사 파트너의 자본금 미납 .....	103
상담사례 31.	여행사 세무처리 .....	104
상담사례 32.	국제학교 설립 .....	104
상담사례 33.	수출입보험 여부 .....	105
상담사례 34.	레저스포츠업 .....	105
상담사례 35.	유한회사 전환 .....	106
상담사례 36.	상장기업 공시정보 조회 .....	106
상담사례 37.	농약 제조/유통업 .....	106
상담사례 38.	약국 투자 가부 .....	107
상담사례 39.	화장품 .....	107
상담사례 40.	태양광 모듈 인증 .....	108
상담사례 41.	베트남 기업 인수 시 지분을 제한 .....	108
상담사례 42.	유통법인 설립 및 법인장은 베트남인이어야 하는지 .....	109
상담사례 43.	조달시장 참여 조건 .....	109
상담사례 44.	무역업 .....	110
상담사례 45.	여행사(캠핑) .....	110
상담사례 46.	현물투자 여부 및 방법 .....	111
상담사례 47.	유통업 허가 .....	111
상담사례 48.	물류업 .....	112
상담사례 49.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 전환 .....	112
상담사례 50.	자본금 .....	112
상담사례 51.	유료직업소 개업 .....	113
상담사례 52.	음식 제조업 vs 유통업 .....	113
상담사례 53.	지연이자 .....	114
상담사례 54.	프랜차이즈 .....	114
상담사례 55.	중고기계 수입 .....	115
상담사례 56.	건설시방서 .....	116
상담사례 57.	대금결제 .....	116
상담사례 58.	총 납입자본금의 의미 .....	117
상담사례 59.	중고제품 수입 .....	117
상담사례 60.	비료 생산 .....	117
상담사례 61.	법인 혹은 대표사무소의 부동산 구매 .....	118

**IV. 투자 절차 .....** **121**

상담사례 62.	식당 프랜차이즈 .....	122
----------	----------------	-----



베트남 투자진출 상담사례집  
**CONTENTS**



상담사례 63.	합작투자 유의점 .....	122
상담사례 64.	M&A 유의사항 .....	124
상담사례 65.	프로젝트오피스 업무 범위, 청산 기간 .....	124
상담사례 66.	유아용품 유통업 .....	125
상담사례 67.	제조업 .....	125
상담사례 68.	PC방, PC제조업 .....	126
상담사례 69.	유통업체의 물류, 창고업종 추가 .....	126
상담사례 70.	지사설립 .....	127
상담사례 71.	수출입업(다낭 지역) .....	128
상담사례 72.	건설업 .....	128
상담사례 73.	M&A 체크리스트 .....	129
상담사례 74.	업종코드, CPC코드 .....	129
상담사례 75.	섬유·유통업 .....	129
상담사례 76.	정관자본금 .....	130
상담사례 77.	연락사무소, 제조업 .....	130
상담사례 78.	노동허가증, 임시거주증 .....	131
상담사례 79.	번역/공증 절차 .....	131
상담사례 80.	서비스업 .....	132

**V. 현지 경영관리 .....** 133

**1. 세무 .....** 134

상담사례 81.	재고자산 .....	134
상담사례 82.	EPZ, 관부과세 .....	134
상담사례 83.	베트남 당국의 한국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요구 .....	135
상담사례 84.	세율 .....	135
상담사례 85.	결산 .....	136
상담사례 86.	관세환급 .....	136
상담사례 87.	오토바이, 자동차산업 .....	137
상담사례 88.	비용처리 .....	137
상담사례 89.	대표사무소 직원 급여 지급 및 세금 처리 .....	138
상담사례 90.	프로젝트오피스 소득세를 협력업체에 전가 가부 .....	138

**2. 외환/금융 .....** 139

상담사례 91.	배당금 해외송금 .....	139
상담사례 92.	주식시장, IPO .....	139
상담사례 93.	법정 최고금리 .....	14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 매각/청산 .....	141
상담사례 94. 청산 .....	141
상담사례 95. 자본회수 .....	141
<b>부록 .....</b>	<b>143</b>
I. 호치민시 수출가공공단, 공단 .....	145
II. 빈증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	147
III. 동나이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	153
IV. 룡안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	162
V. 바리아-붕따우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	168



**2015**

I

# 투자 기초지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상담사례 — 1 안경점

**Q** 한국에서 안경원을 운영 중입니다. 호치민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경원 개업 절차 및 투자조건,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30~40평 기준), 현지 안경사 임금, 사업자 명의를 외국인(본인)도 가능 여부, 호치민시 안경원 업체수, 한인 업체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현재 고객님의게 적합한 투자 방법은 합작기업(법인설립)을 통한 투자, 단독 투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단독으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처럼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기 투자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허가 사항으로 법무법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3배 정도이며 임대료는 2천~4천 달러 정도 예상되지만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인 업체수는 호치민 경우 3~5군데 정도로 보입니다. (2015-01-03)

### 상담사례 — 2 유아복&아동복

**Q** 저희는 유아동복 브랜드를 국내 및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유아동복 브랜드 총판 및 대리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HS CODE는 6111.20.1000, 6111.30.1000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입 관세 및 총판이나 직영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판이나 직영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진행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총판 설립이나 대리점 진행 시 사업자를 한국인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총판이나 직영할 경우 매니지먼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및 해외 유아동 브랜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HS코드 6111.20.1000는 베트남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는 6111.2000(Of Cotton)으로 Wto 20%/Akfta 15%/Vat 10% 입니다. HS코드 6111.30.1000도 베트남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는 6111.3000(Of Synthethic fibres)으로 Wto 20%/Akfta 15%/Vat 10% 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총판과 대리점을 유통과 소매업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며 2015년부터 유통 소매업 관련하여 외국인이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나 실제로 적용받은 사례가 아직까지 없으며 적용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합니다. 총판이나 직영의 경우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여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딜러나 대리점을 통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한국 브랜드 제품의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http://zaodich.webtretho.com/forum/f2758/quan-ao-tre-em-cua-han-quoc-hang-chocostars-rat-dep-ngo-nghinh-nhieu-kieu-de-lua-chon-1502721/>

(2015-03-02)

### 상담사례 — 3 호치민시 인근 공단 및 항구

**Q** 베트남 호치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① 호치민 및 인근 성의 공단주소 list
- ② Long An성의 면적/인구수/한국진출기업/특징
- ③ 호치민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및 거리(호치민시 기준으로)

**A**

- ① 호치민 및 인근 성의 공단주소 list 및 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은 동나이성/빈증성/롱안성 지역이며 중요 관리공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롱하우 산업단지: [www.longhau.com.vn](http://www.longhau.com.vn)
  - 롱안성 아마타 산업단지: [www.amata.com.vn](http://www.amata.com.vn)
  - 동나이성 송탄 산업단지: <http://kcn.binhduong.gov.vn/bantin/pages/CMSDetail.aspx?tabid=4&MenuID=4&ArticleID=ARTICLE11050042#>
- ② Long An성의 면적/인구수/한국진출기업/특징 면적은 약 4500km<sup>2</sup>, 인구 150만명(2011), 수질이 좋아 란슬렛 생수브랜드가 입주해 있습니다.
- ③ 호치민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및 거리(호치민시 기준으로)는 호치민 내에 중요 항구(cat lai)가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3개성에서 약 2~3시간 소요됩니다. (2015-03-04)

### 상담사례 — 4 제조업 공장

**Q** 당사는 베트남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필요부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면적: 10,000~13,000m<sup>2</sup> 업종: 제조(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전력: 2,000~3,000KW 인원: 베트남 현지인 150~200명 채용가능
- 공장높이: 처마끝 15m, 용마루(공장 가운데) 17m

동나이성 내에 허가 및 입주 가능한 공단이 어디이며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이 있는지, 마당 넓이는 어느정도인지(컨테이너 상/하차가 가능하여야 함),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승용차 및 현지인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하여야 함), 매년 납부하는 세금(법인세, 면허세, 부가가치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 유지비용(부지임대료, 인프라사용비, 인프라관리비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15년 현재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시간외 수당(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설비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하므로 주야 2교대 또는 3교대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공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지당 건폐율(50%이상)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마당 부지 활용으로 컨테이너 상하차는 충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들은 면적이 넓은 편으로 주차 불편은 없습니다. 2015년 법인세의 경우 22%이며, 2016년 이후 20%로 변경됩니다. 유지비용은 공단마다 차이가 있고, 전기세, 관리비, 오폐수 처리비용 등 부과합니다. 2015년 임금은 1지역 기준 310만 동이며, 8시간 이후 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초과근무 제한 기준에 월 30시간이 추가되어 2교대 근무는 어렵고, 3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5-03-10)

### 상담사례 — 5 법인설립 및 업종전환

**Q** 저희는 베트남(호치민)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①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② 사업자등록 절차 및 비용 등은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③ 차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전환이 가능한가요?
- ④ 기계 등 실물 투자 시 투자금액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나요? 이 경우 투자금 회수 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 가능한가요?
- ⑤ 현지인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한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인건비 지급 시 세무신고와 고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⑥ 투자금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통장계좌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전용계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⑦ 중도 이익배당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가요? 세무정리, 국내와 현지 신고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A**

- ① 베트남 업종 등록의 경우 투자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허가서에 업종코드 등록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종도 어느 분야인지에 따라 관련규정 및 WTO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② 투자허가서 등록 시 제조업종의 경우 미화 5,000달러(로펌 등 대행업체) 이상이며 까다로운 절차의 경우 금액이 상향됩니다.
- ③ 업종코드 전환·추가 가능하며, 신규 투자허가서 신청과 유사하게 업종 관련 투자계획서 요구됩니다.
- ④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동산의 경우 감가상각 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⑤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베트남에 소득세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자가 비용 등 송금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⑥ 투자자는 베트남 법령에 의해 재정적 의무 등을 다하면 원칙적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배당의 방법 등 / 그리고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시면 원칙적으로 법인계좌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 ⑦ 이익 배당 및 세무관련은 전문회계법인 등과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2015-04-02)

## 상담사례 — 6 부품제조업체

**Q** 삼성, LG전자 가전사업부를 거래하는 1차 벤더 입니다. 삼성이 SHTP에 2016년 9월부터 가전 품목(에어컨, 냉장고 등)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LG도 하이퐁에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라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투자 지역 선정 - 호치민 근처 베트남 남부/SHTP 에서 차로 2시간 내외 지역 고려 중  
1-1) 빈증성 투자개발공사인 베카맥스가 조성한 미퓌 3공단 또는 바우방 공단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방문 예정입니다. 근데 호치민 인근 빈증성과 동나이성 등, 거리는 SHTP와 가까워 지리상 이점이 있으나, 구인난이 심하다고 들어 걱정이 됩니다.

1-2) 그래서 떠이닌성(Tay Ninh), 빈퓌성 (Binh Phuoc) 등 호치민으로부터 좀 더 떨어진 지역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 떠이닌성, 빈퓌성 등 좀더 외곽지역의 성은 인력 수급이 수월한 편인가요? 아님, 호치민 SHTP와 거리가 좀더 멀어지더라도 인력 수급이 수월한 지역과 그 지역의 공단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얼핏 듣기에 캄보디아와 국경지역에 있는 성들, 또는 베트남에 붙어 있는 캄보디아가 인력 수급이 좀 편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② 베트남 수입 시 관세율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각종 부품과 자재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입니다.

2-1) Thermistor Element H,S Code: 8533.40.2000 베트남 수입 관세율 from 한국, 중국

2-2) Connector (연호, Molex, KET 등) H,S Code: 8536.90.9090 베트남 수입 관세율 from 한국

2-3) Epoxy H,S Code: 3097.30.9000 각각의 베트남 수입 관세율 from 한국, 일본

2-4) Wire H,S Code: 8544.49.1012 (80V 이상 & 1,000V 이하) 각각의 베트남 수입관세율 from 한국, 중국

2-5) 금속 Tube SUS(서스) Tube-HS Code: 7222.11.0000 Copper (동) Tube - HS Code: 7411.10.0000 각각의 베트남 수입관세율 from 중국, 한국

### A

① 추천 공단 관련: 현재 삼성 가전 진출 및 베트남 투자 증가로 인하여 호치민시, 빈증시, 동나이성 등 공단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하신 기업의 경우는 인력수급 관점을 중심으로 공단선정 중이지만, 거리가 멀어질 경우 베트남 인력이 외곽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워 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신 빈증성 미퓌 공단, 빈퓌성(민흥공단 등), 떠이닌성 공단, 빈증성 아센다스 공단, 룡안성 룡하우, 키즈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수입 관세율 문의 2-1) MFN 0% 2-2) 20% (FTA 비적용) 2-3) 관련 코드 확인 요망 2-4) 10% MFN 유리(한국 비적용, 중국 비유리-20%) 2-5) MFN 0%, FTA 양국 0%(AKFTA/ACFTA)

(2015-04-22)



### 상담사례 — 7 자동화 물류 설비

**Q** 당사는 자동화 물류 설비의 제조회사입니다. 베트남에 현지 법인 및 현지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와 공단 지도 등의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A** 베트남은 288개 산업공단, 80,809ha 전체 면적이며(2013년 12월 기준) 그 중 운영하는 산업공단은 190개, 54,093ha 면적을 차지하고, 나머지 98개 산업공단(26,716ha)은 부지 개발 및 보상 단계입니다. 베트남 남부지역 공단은 호치민시, 빈중성, 동나이성에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상황이며, 점점 롱안성, 바리아-붕따우성, 빈푹성 등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산업공단 특징: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은 산업단지관리위원회입니다. 토지임차료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단지 내 외국기업들이 상당 입주해 있어 인건비가 비싼 편입니다. 토지사용권은 이미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기업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게 되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합니다.

산업공단 선택 시 유의사항: 노동력 수급, 항만까지 거리와 시간, 도로 상황-한국기업의 입주 정도-물류 운송의 용이성-전력 및 용수, 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의 조성 목적(봉제, 첨단사업)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05-07)

### 상담사례 — 8 호치민 하이테크 파크

**Q** 당사에서 호치민 하이테크 파크 공단이나 인근 공단에 설비제조 관련으로 진출예정입니다. 하이테크 파크에 관련된 자료나 지도 등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이공하이테크파크의 경우 면적대비 투자금액이 높게 요구되는 공단입니다(1ha 당 1,500만 달러 이상). 토지임차료는 50년 기준 스퀘어미터당 1달러 정도로 저렴한 편이며, 인프라 구축 등이 잘되어있는 공단입니다. (2015-05-26)

### 상담사례 — 9 요식업과 유통업 겸업

**Q** 저는 남부 빈중 지역에서 회사원으로 8년 근무하고 올해 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베트남인이고 그동안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국에 있는 상품을 베트남 시장에 수출하여 판매하는데 그 첫 품목이 요식업에 관련된 기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요식업 1호점을 함께 창업하려고 합니다. 만약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도매, 소매점까지 아우르는 무역업으로 창업해서 요식업을 겸할 수 있나요?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무역관련 회사를 창업하고 요식업을 따로 창업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A** 무역업으로 창업하셔서 요식업을 겸하시는 건 법적으로 각각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우선 베트남 요식업 관련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외식 선호 문화로 인해 요식업 진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의 WTO Commitments에 따라 품목별로 개방 정도와 개방 시점이 다른데, 요식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호텔 레스토랑 투자 진출만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하노이에서 일부 외국인의 요식업 투자에 대한 허가를 해주었으나 현재는 호텔 레스토랑 투자 진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요식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호텔업과 병행하거나 호텔 개조 등에 투자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처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요식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요식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반드시 적절한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업의 경우 100% 단독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으며, 유통업의 경우 2007년 49%까지 합작가능, 2008년 지분제한 없는 합작가능, 2009년 100% 단독투자법인 설립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는 이하와 같습니다.

#### □ 주요 내용

- 수출업 (Export Rights): 100% 단독투자 가능 -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와, 구입한 제품을 제반 수출 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매네트워크(Network of Purchasing)를 구축할 수는 없음
  - 외국인 수출업체 권리. 수출금지품목, 잠정수출제한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출권한 적법한 생산업체/딜러로부터의 직접 제품 구입권한. 수출을 위한 세관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
- 수입업 (Import Rights): 100% 단독투자 가능
  - 제반 수입절차를 직접 진행해 수입한 제품의 유통권한을 가진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
  - 그러나,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유통네트워크(Goods Distribution System)를 구축할 수는 없음

- 외국인 수입업체 권리. 수입금지품목, 잠정수입제한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입권한. 수입을 위한 세관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 유통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유통업체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단, 판매 시 베트남 Import Tax Table에 나와 있는 Chapter별로 하나의 유통업체에만 판매 가능.

예) 베트남 Import Tax Table의 Section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은 Silk(Chapter 51), Cotton(Chapter 53) 등 14개 Chapter로 구성되어 있음. Silk 수입 시 1개의 유통업체에만 판매 가능

- 유통업 (Import Rights): 2007년 외국인지분 최대 49%까지 합작회사 설립 가능
  - 2008년 외국인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설립 가능
  - 2009년 100% 단독투자 가능
  -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시, 프랜차이즈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 외국인 유통업체 권리. 유통금지 품목을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된, 또는 베트남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시, 프랜차이즈 권한. 소매업의 경우, 첫번째 매장은 유통업 허가 신청 시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매장 개설은 건별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수 등의 조건에 따라 허가여부 결정됨
  - \* 주: 2017. 9. 현재 호텔 레스토랑 이외 일반 요식업(식당, 커피숍 등) 외국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 □ 투자 절차

- 무역업-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s)를 득해야 함
  - 기투자기업은 현재의 투자허가서에 수출/수입권을 추가하여 변경신청 해야함
  - 제출서류: 신규/변경 신청 모두 투자법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수출/수입 제품 리스트
  - 승인기관 신규투자기업: 투자허가서 승인기관과 동일(공단 입주기업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DPI).
  - 기투자기업: 최초 투자허가서 승인기관(단, MPI에서 허가 받은 투자기업의 경우 개정 투자법상 MPI는 더이상 투자승인기관이 아니므로, 공단 입주기업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DPI)
- 신규 유통업 투자기업
  - 제출서류: 투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유통할 제품 리스트
  - 승인기관: 투자허가서 승인기관과 동일하나,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 기투자기업 유통업 추가시- Business License를 별도로 득해야 함
  - Business License 제출서류: Circular 09/2007/TT-BTM의 Form MD1에 따른 신청서, 유통할 제품 리스트
  - 승인기관: 최초 투자허가서 승인기관이나,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법인세는 22%로 2016년부터 20%로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2015-06-24)

### 상담사례 — 10 보세구역(EPE) 설정

**Q** 저희는 기계제작업체로서 수출생산 공장을 호치민에 설립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계를 조립 제작하여 타 국가로 수출할 계획인데, 보세구역설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공단 입주 시 보세구역 설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공단 입주 시 공단 내 지정된 보세구역 사용은 공단과 협의 가능하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만큼 입주업체가 자체 보세구역설정을 희망할 경우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서 보세구역 내 입출고 되는 물품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 망이나 감시카메라의 의무적 설치와 같은 세부규정 외에 자체 보세구역설정(이는 법률적으로는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입니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입 총 금액이 연간 1억 달러(2년간 평균)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특별한 신청 서류는 없으며, 다만 투자허가서 등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고 투자청과 세관 사이에 내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5-07-01)

### 상담사례 — 11 식품 유통업

**Q** 국내 축산 유통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마장동 시장과 같은 베트남 축산 거점 소매시장에 한국식 고기 유통업을 구상 중입니다. 이전 사료 제조업 등에도 경험이 있으며, 사료는 대기업이 기진출해 있으므로 소매 유통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양돈 업체 협업도 구상 중입니다. 이에 관련한 기본 투자 정보 및 절차, 시장조사 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 유통업은 WTO에 의해 개방되어 있으나, 베트남 현실상 하위 법령인 투자법 혹은 그 시행령, 규칙 등으로 인해 허가가 어려워 지거나 일부 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엔 대부분 허가가 순조로운 편입니다. 식품 유통의 경우 관련 관청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투기업에는 경제적 수요 조사(Economic Needs Test, ENT) 제도가 있어 1호점은 쉽게 진출하더라도 2호점부터는 쉽지 않았던 선례가 많습니다. 다만, 면적 500㎡ 이하는 면제되는 제도가 생겨 소규모 소매상의 경우 수월하게 확장 가능합니다. (2015-08-31)

### 상담사례 — 12 다단계 유통

**Q** 해당 기업은 다단계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법인을 이미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베트남의 경우 내년 설립을 구상 중입니다. 이에 베트남에서의 투자 기초 사항 및 다단계 유통 사업 관련 법규 정보 등을 문의 드립니다.

**A** 베트남에서 다단계 유통은 유통점 개설 등 하드웨어 등을 위한 많은 자본투자 없이 폭넓은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유통 방식입니다. 암웨이, 허벌라이프 등 세계적인 동종 업체들은 이미 진출하여 해당 시장은 매해 20~30% 성장세입니다. 2013년 말까지 현지, 외투 법인 포함하여 총 102개사, 3억5천만 달러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다단계 비즈니스 모델이 생소하여 베트남 정부의 관리가 허술하나 정부가 관련 시행령(Decree No. 42/2014/ND-CP)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인허가 및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시행령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이전보다 허가를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지고 한국과 같이 소위 피라미드 모델 등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 해당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특히 다단계 유통의 경우 화장품류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품 성분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규제 및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파악하고 수입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2015-09-01)

### 상담사례 — 13 빙수 프랜차이즈

**Q** 시장상황,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진입 전략, 명의 대여 등 문의

**A** 빙수 시장은 각 한국계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거의 모든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 프랜차이즈들의 특징은 고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수준의 질과, 인테리어,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저가판매로는 베트남에서 수익구조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가시장에서는 베트남 로컬 기업과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 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은 외투기업 허가는 가능하나, 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까다롭고, 외투기업으로 승인 받을 경우에도 통관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베트남 명의를 빌리거나, 합작투자-마스터프랜차이즈를 베트남인에게 주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할리스 커피의 사례). 또한 프랜차이즈 등록은 동종 업력 1년 이상이 된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단순 명의 대여의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므로 주의 바랍니다. (2015-09-25)

### 상담사례 — 14 통신장비 원부자재 제조업

**Q** Viettel 등 베트남 현지 로컬 인터넷 업체 등에 광통신 부자재를 납품하는 소규모 제조업입니다. 공장크기는 약 3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 환경 및 진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하이테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유통법인(BtoB) 및 제조업 모두 외투법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제조업이 조금 더 원활한 편입니다. 호치민시 인근 최저임금은 17만원 정도이나, 평균 임금(각종 보험 사업주 부담 분, 추가수당 등 포함)은 근로자당 월 300달러 가까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인력 이동이 흔한 편입니다.

해당 기업이 원하는 크기의 공장(약 3000㎡)의 경우 일부 임대전문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임대하기에는 다소 큰 규모입니다. 소규모의 기타 임대공장들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임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입니다. 하이테크법령의 하이테크 산업군에 속하는 경우 법인세 4년 면제, 9년 50% 감면, 그리고 15년간 법인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과학기술부(MoST)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하며, R&D 조건 등 다른 조건도 있어 통과 및 운영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2015-10-06)

### 상담사례 — 15 중장비 임대사업

**Q** 베트남에서 건설기계(중장비) 임대사업의 가능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기계 임대 사업의 경우 기사(operator) 포함 임대하는 경우에만 WTO 양허안에 의해 100%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이외에 다른 부분 - 예를 들어 각 중장비의 수입 통관 문제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를 추천해 드리자면, 현지 물류업체 등 접촉을 통하여 관련 중장비 수입 방안 등에 대해 먼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성을 확인하신 후 마지막으로 베트남 내 법무법인 등과 상담을 통해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5-10-19)

**상담사례 — 16** 다른 법인의 여유 부지를 임대하여 법인 설립 시 고려 사항

**Q** 기존 진출한 계열사 공단 부지 중 일부에 진출 시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존 진출 기업(법인)의 투자 허가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임대 받아 설립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부지를 기존 프로젝트에서 분리 후(투자허가서 변경), 해당 자산을 양도받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임대인이 임대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15년 개정될 부동산사업법에 의해 임대법인의 최소자본금이 200억동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부 성정부의 경우 기존 법인의 정관자본금에 추가로 200억동 이상 증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에 사업 분야를 추가하여 법인 설립하지 않고 추가 투자만 하는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0-25)

**상담사례 — 17** 유통업, 성형외과

**Q** 유통업체, 성형외과 설립 절차 및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유통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 허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성형외과 등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는 유통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법인으로, 100% 외투법인으로 설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는 것이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인 설립 이외에 한국인 의사의 베트남 의사라이선스 획득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10-25)

**상담사례 — 18** 무역업

**Q** 당사는 베트남에 법인을 운영 중에 있으며 베트남 현지 업체에서 HS CODE 3506.91-0000 제품을 현지에서 매입, 한국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사의 베트남 법인은 임가공 수출만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품목 포함 기타 제품에 대해 중계무역 진행 시 베트남 세관에 별도의 라이선스 및 절차 등을 필요로 하는지요?

**A** 우선 베트남 내에서 무역(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선 무역업 투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귀하의 현재 법인 업종인 제조업과는 별개로, 무역업을 추가(또는 별도 법인 설립)하셔야 합니다. 신규

무역업 법인설립보다 기존 법인에 무역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좀더 수월할 수는 있으나, 서비스업(무역/유통업 등)은 제조업과 다르게 허가에 있어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100% 허가가 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선, 관할 기관(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 및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10-29)

### 상담사례 — 19 제조업 진출을 위한 베트남 투자환경

**Q** 저희는 주로 공기 주입식 보트를 만들기 때문에 본드가 잘 마를 수 있는 날씨가 건조한 공장 지대를 선호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습도: 월별로 평균 습도가 어떠한지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공장 지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 ② 공장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 ③ 인력 공급은 원활할까요?
- ④ 평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⑤ 호치민 지역에서의 전력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⑥ 인천 또는 부산항에서 호치민 지역까지 가는 물류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 ⑦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에 어려움이 자주 생기나요?(참고로 캄보디아 쪽은 어려움이 잦다고 합니다)
- ⑧ 예상 인원은 100명에서 2,3년 뒤에는 30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을까요?

#### A

- ① 호치민시 인근은 5~10월 정도까지 우기이며 습도는 80% 정도입니다. 1,2,3월 정도가 건기에 해당하며 이때 습도는 60% 정도입니다. 베트남 대부분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건조/습한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습도는 80% 정도로 높습니다. 다만, 특히 건조한 지대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만약 건조한 지대를 찾으시더라도 지역별 물류 비용 등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공장 임대료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매입과 비슷한 개념인 토지사용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 동나이성 공단의 경우 US\$ 50~100/m<sup>2</sup>/40~50년 입니다(공장 건축 필요, 관리비, 인프라 사용료 등 제외). 임대공장의 경우 US\$ 3~5/m<sup>2</sup>/월 (각종 비용 포함인 경우 많음)입니다.
- ③ 200~300명 고용까지는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조건이 맞는 경우).
- ④ 호치민시 인근 지역은 최저임금 1급지로 최저임금은 \$160 수준이나, 각종 수당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면 인당 \$3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⑤ 전기요금은 KW당 VND900~2,700 정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력청 사이트(<http://cshk.hcmpe.vn/tracuu/giabandien>)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전역이 동일하나 일부 공단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⑥ 운송비는 베트남 내 내륙운송 비용이 호치민시 인근 공단일 경우 \$150-200선, 40ft 컨테이너 한국-베트남이 \$400 선입니다. - 다만 호치민 인근이 아닌 경우 물류비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물류회사 등과 상담을 요합니다.
- ⑦ 베트남에서도 통관문제는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입니다.
- ⑧ 지역 및 생각하시는 연봉, 작업환경 수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2015-10-28)

### 상담사례 — 20 법인 설립 시 100%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등

**Q**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 ① 호치민 법인 설립 절차(규정)\_100% 지분 투자
- ② 법인 설립 시 소요 기간
- ③ 필요 서류 및 투입 비용 법인등록비, 컨설팅 필요 시 업체 처리 비용, 각종 서류 비용, 최소자본금, 기타 발생 비용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
- ④ 법인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법적 RISK

**A**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법인 설립은 사실상 허가제이며, 어느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허가 조건 등이 다릅니다. 100% 외국인투자 허가 여부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WTO 양허 기준 상 요즘에는 상당수 업종이 100% 외투 허가가 가능합니다(업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허가가 쉬운 편이며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1~2달 후에 완료될 정도로 짧습니다. 만약 수입/유통만 하는 법인의 경우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지 가계약→투자 허가→법인 등록→법인인감, 계좌개설 등 각종 부수 절차→부지 본계약]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립 대행업체도 로컬업체에서 한국계 대형 법무법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또한 대형 업체의 종류와 허가 대상 업종에 따라 최소 3,000달러에서 10,000달러 이상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공증 비용, 비자 비용 등 실비 정도가 들 것이며, 보통 몇 십 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최소 정관자본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업종, 회사 크기에 따라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허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30~50만달러 이상의 정관자본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 리스크에 관하여는, 허가 관련하여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시고 진행하시라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명 설립 등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10-30)

### 상담사례 — 21 내륙운송업의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여부

**Q**

조건1.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 업종별 외국인투자지분에 관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국내 법인으로서 베트남 현지 법인(이하 A투자법인이라 칭함)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베트남 현지에 새로운 신규법인(이하 B투자법인이라 칭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조건2. 베트남 현지에 있는 A투자법인은 최소 2004년 이전에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이 5:5로 만든 투자법인입니다.

- ① 베트남의 경우 해외투자지분이 51%를 넘으면 안된다는 등 업종별로 해외투자지분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B투자법인의 업종은 아래와 같은데 저희의 지분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B투자법인의 업종(아래의 3가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코자 함) 1) 컨테이너 운송(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베트남 내륙 왕복 수송) 2) 장비임대(B투자법인 소유의 컨테이너장비, 지게차 등을 타 기업체에 임대하고 임대수수료 취득) 3) 용역(타 기업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비를 취득)
- ② 신규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 법인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법인이므로 함께 투자를 의논하고 있는 A투자법인이 현지법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투자법인이 투자하면 현지법인의 지분투자자로 인정받아 저희와 함께 신규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A투자법인은 조건2를 참조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 ① 1) 물류업의 경우 2015. 1. 1.부터 물류업의 많은 세부업종 중 많은 업종이 100% 외투법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호치민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100% 외투 허가를 받은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어쩔 수 없이 명목상으로나마 합작법인(예를 들어 99% 외투 1% 베트남 현지 지분) 형태로 설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륙운송은 외국인투자회사에 허용되지 않는 분야이며, 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지분 51% 미만의 합작법인만 설립 가능합니다.
- 2) 장비임대업(단, operator와 동시 임대)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전면 개방된 분야이므로 이 또한 100%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에 따라 투자조건이 다르며, 정확한 업무 영역을 밝혀 주시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② 법인 설립의 투자자는 법인/개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 7. 1. 개정 투자법 제3조 14호에 의하면, '국내투자자'를 '외국인 구성원 또는 지분 보유자가 없는 경제적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어 5:5 투자된 베트남 법인이 '현지법인 투자자'로 인정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2015-11-16)

## 상담사례 — 22 안프억 공단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Q** 안프억 공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투자여건, 세제혜택, 현재상황 등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말씀하신 안프억 공단은 동나이성 롱탄 지역에 있어 위치상으로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안프억 공단의 경우 아직 한국 기업 입주 that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단 입주 시 일반적인 세제 혜택은 법인세 2년 면제, 4년 50% 감면이며 위 공단의 고유한 인센티브는 아니라 대부분의 공단 입주 시에 적용됩니다. 한편, 위 인센티브 외에도 산업별(하이테크 등)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별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별도의 인증 등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안프억 공단에 대해서는 해당 공단의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Tin Nghia Corporation— An Phuoc IP Management Unit

- Address : An Phuoc Industrial Park,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 Tel: +84.61 3510439 Fax: +84.61 3510438 Email: info@tinnghiacorp.com.vn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SHTP)의 경우 베트남 정부에서 설립한 공단으로 보통 하이테크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면적당 투자금액 하한선이 있는 등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제 입주한 기업들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R&D, 하이테크 제조 대기업이나 그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하이테크산업 기업 혹은 삼성 협력업체의 경우 사이공하이테크 입주를 선호하나, 기술 인증 등을 만족하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015-11-24)

## 상담사례 — 23 건설업 법인 설립

**Q**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 현지 법인(LLC)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건설업 혹은 건설업+유통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 항목과 같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 ① 베트남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허가 및 등록비
- ② 법인 설립 초기 납부 세금
- ③ 법정 최저 법인 자본금
- ④ 기타 국가기관 및 세무당국에 납부할 비용

**A**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업을 construction & related engineering services (CPC Codes: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로 이해하여 일반적인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① 베트남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허가 및 등록비 총 2가지 허가 필요 (1)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 (2)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 두가지 허가서의 비용 (1) IRC 없음 ERC: VND 500,000, 이하 포함: + VND 200,000 for ERC issuance; + VND 300,000 for announcement of information of enterprise registration

\*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스스로 해당 절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통 컨설팅 회사 혹은 법무법인이 설립업무를 대행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업종,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USD5,000~10,000 선 입니다.

② 법인 설립 초기 납부 세금

설립 초기 납부 세금은 없으나 운영 과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 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법정 최저자본금

이 부분은 생각하시는 업무에 따라 법정자본금, 그리고 실무상 요구되는 자본금 수준이 다르므로, 설립 진행 시 대행업체와 논의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④ 기타 국가기관 및 세무당국에 납부할 비용

초기 납부 세금은 없으나 설립 이후 운영 시 다양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2015-12-07)

## 상담사례 — 24 아마타 공단 & 연짜 공단

**Q** 사출 및 금형 제조 업체로 삼성 입주 SHTP 근처 공단 선정 문의드립니다.

**A** 고객 문의한 공단(아마타 및 연짜 공단)은 모두 SHTP와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아마타 공단의 경우 인프라 및 환경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연짜 공단의 경우 가격은 60달러 선으로 동나이성 공단 중 저렴하고 후에 인근 고속도로 건설 예정이므로 전망이 밝은 공단입니다. 산업에 따라 공단별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5-12-15)

## 상담사례 — 25 인터넷을 통한 의류 유통업

**Q** 인터넷 호스팅 업체로 베트남에 의류 온라인 유통 및 물류업 관련 문의

**A** 유통업은 조건부 허가 업종이나 일반적으로 허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물류업의 경우 WTO 양허안을 기준으로 세부 업무별로 기준이 달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나, 어쩔 수 없이 합작법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유통을 하기 위하여는 베트남에 법인 설립 없이, 베트남 사이트에 리스팅 및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지 법인이 각 물건별로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통관하고, 모든 재고를 현지 법인 소유 후 리스팅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현재 최대 인터넷 쇼핑 업체인 lazada 등에서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팅 시 물건별 인증뿐 아니라, 간혹 광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소규모 외투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기에 아직은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2016-12-15)

## 상담사례 — 26 농업비료 시장현황

**Q** 베트남에 유기농 비료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베트남 농업분야 비료사용 현황과 비료생산 및 수출입 현황에 대해 아래 자료를 문의드립니다.

- ① 베트남 비료 사용 현황
- ② 베트남 비료 생산 현황(화학 및 유기농비료)
- ③ 베트남 비료 수출입 현황

**A**

### ① 베트남 비료 사용 현황 (2014년 기준)

- 총 수요량: 1,100만톤(2013년 대비 4% 증가)
- 제품별 수요량: NPK 4백만톤(37%), 요소비료 2.2백만톤(20%), 인산비료 1.8백만톤(17%), 칼륨비료 1백만톤(9%), SA와 DAP 비료가 각각 90만톤(8%)
- 지역별 수요량: 남부 6.24백만톤(57.8%), 북부 2.59백만톤(24.0%), 중부 1.97백만톤(18.2%)
- 작물별 비료 사용 비율: 벼 65%, 옥수수 9%, 고무나무 8%, 커피 5%, 사탕수수과 캐슈 너트 각각 3%

### ② 베트남 비료 생산 현황

- 국내 비료생산량은 약 8백만톤으로 수요 대비 80% 수준으로, 신규공장 설립 및 기존공장 확장으로 NPK, 인산비료, 요소비료는 수요대비 공급량이 초과함
- DAP 비료의 경우, 수요 대비 30~35% 공급 수준이나, 연 330,000톤 규모의 공장 설립 중임
- SA와 칼륨비료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제품별 생산량: NPK 3.8백만톤, 요소비료 2.4백만톤, 인산비료 1.8백만톤, DAP 비료 33만톤

## ③ 베트남 비료 수출입 현황(2014년 기준)

- 비료 수입 규모: 3.79백만톤/12억3천7백만 달러 (2013년 대비 수량은 17.85%, 금액은 26.38% 감소)
- 제품별 수입 증감 현황(2013년도 대비): 요소비료 213,000톤(전년도 798,000톤 대비 73.3% 감소), NPK 234,000톤(전년도 421,000톤 대비 44.4% 감소), 칼륨비료 986,400톤(전년 대비 수량 0.57%, 금액 21.58% 감소)
- 주요 수입국: 중국 53%, 러시아 11%, 일본 7%, 벨라루스 6%, 이스라엘/캐나다 각각 4%, 한국 3% 등...
- 비료 수출 규모(2014년) : 107만톤/384만 달러 (2013년 대비 수량은 0.51 증가했으나, 금액은 8.06% 감소함)
- 주요 수출 품목은 NPK 338,861톤/요소비료 300,284톤/DAP 비료 210,345톤 등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캄보디아(461,790톤, 46%), 한국(10%), 말레이시아(7%), 필리핀(7%), 라오스(4%)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12-18)

**상담사례 — 27** 전력요금 및 인건비(제조업)

**Q** 법인사업자로 베트남(바리아 붕따우성)에 공장신설 관련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 ① 산업전력요금, 산업수도요금 1) 현 요금 및 과거 4개년도 요금 변동 추이 2) 시간대 별 할인요금 및 피크타임 등 구간별 요금
- ② 제조, 관리 평균 인건비 1) 현 평균 인건비 및 과거 4개년도 변동 추이

**A**

- ① 2015년 공업용수 1m<sup>3</sup> 당 약 0.475동(VAT 5%포함), 2013년에는 0.458동입니다. 시간별, 연도별 전력요금에 대하여는 전력청 사이트(EVN HCMC 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인건비 상승 추이는 저희 KOTRA 해외시장뉴스 사이트 국가정보-베트남-노무관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2015→2016년 최저임금은 12.4% 정도 올랐으며, 호치민시 인근 주요 산업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1급지로 월 350만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임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및 사업자 부담 보험(총 22% 및 노동조합에 대한 2%)를 포함하면, 생산직 기준 실 부담은 월 \$250~\$300 수준입니다. (2015-12-18)

## 상담사례 — 28 커피 프랜차이즈

**Q** 한국 저가 커피숍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 시 법적 절차 및 시장 상황 등 문의

**A** 커피숍의 경우 베트남에서 100% 외투자본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후 1년 후에 프랜차이즈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기업이 1년 이상 영업하였다면 베트남 내 법인이 아닌, 한국 내 법인이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할리스, 카페베네 등 한국계 커피숍 진출이 활발하며, 현지 기업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 커피숍은 고가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중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II

# 투자 환경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상담사례 — 29 빈증성 공단 정보 및 투자환경

**Q** 빈증성 공단 정보 및 투자환경 문의

**A** 호치민시 및 동나이성, 빈증성, 바리아붕타우성, 빈푹성, 띠이닌성, 롱안성, 띠장성 등 7개 성과 함께 남부경제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지리적 특성은 북으로 빈푹성, 남쪽은 호치민시, 동쪽은 동나이성, 서쪽은 띠이닌성과 접하고 있습니다.

빈증성 면적은 2,696km<sup>2</sup>, 인구는 약 180만명의 행정도시로 Thu Dau Mot으로 산업공단 29개, 소규모 공업지구 8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공단면적만 8,700ha, 기업수는 1,200여개(국내외), 총자본금 130억불이 투자된 곳입니다. 2004년부터 외국인투자가 많아 '나이키', 'H&M' 등 유명브랜드 제조공장이 있으며 롯데마트, 메트로, Co.op mart, Big C 등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빈증성은 외국계기업들이 왕성한 투자활동 중인 지역으로 교통의 편리성, 기초인프라 완비, 행정수속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넓고 깨끗한 투자공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투자대비 수익효과가 높은 곳입니다. 2014년부터 전기 및 전자, 기타 공업관련 분야, 정밀기계, 기초공업, 약품제조, 의약장비, 식량 및 식품생산 등 영역에서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01-26)

### 상담사례 — 30 베트남 투자환경

**Q** 베트남 투자 환경 및 공단 정보 등 문의

**A** 최근 대 베트남 국가별 외국인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누적 투자금액, 건수 등 1위를 달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 누계 투자건수 4,063건, 투자금액 367억 달러로 일본의 투자건수 2,454건, 투자금액 365억 달러보다 건수, 금액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타이응우웬성에 30억 달러 투자허가 취득, LG전자의 하이퐁성, 흥옌성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 Posco · 금호 · 두산 등 투자 확대는 대한민국의 베트남 투자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납품업체들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수반하므로, 향후 대 베트남의 대한민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베트남 투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이 매년 약 15% 정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손재주, 2014년 기준으로 4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약 9,065만)의 약 66%인 젊은 인구 구조 등으로 제조업체에게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입니다. 전력, 물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ODA 자금 유입 등으로 인프라 시설 구축과 투자환경 개선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권위적인 관료주의, 호치민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이 떨어지는 베트남 법체계가 투자에 있어 애로사항이지만, 최근 투자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개정으로 점점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베 FTA 실질타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베-EU FTA 타결 전망은 투자처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예전처럼 무조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유발산업 등 베트남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투자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동나이성과 바리아붕따우성에서 투자 제한 사업과 금지 사업 분야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리아붕따우성은 향후 금지 사업으로 타피오카 생산, 기본 화학물질(산업 폐기물 발생), 염색, 가죽, 제지, 어분, 환경오염유발 사업 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에도 도금, 수산물가공, 페인트 생산, 산업용 세척제, 일반 근로자 노동집약적인 산업, 토지 대량 사용 산업, 낮은 부가가치 사업, 폐기물 유발 사업 특히, CO<sub>2</sub> 발생 사업, 낙후된 기술 도입 사업 등은 투자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성별 투자허가제한 업종은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들은 공단선정에 있어 검토해야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2015-01-26)

### 상담사례 — 31 주변국과 임금 수준 비교

**Q** 주변국과 임금 수준 비교 문의

**A** 베트남 투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은 매년 약 15% 정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베트남 USD 181, 라오스 USD 119, 캄보디아 USD 121, 인도네시아 USD 174, 태국 USD 357, 말레이시아 USD 609, 싱가포르 USD 3,547) (2015-02-09)

### 상담사례 — 32 베트남 임금

**Q** 베트남 임금 관련 등 투자환경 문의

**A** 베트남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1999~2005년까지 62만 6,000동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2006년부터 상승하여 매년 10%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270만 동까지 상승하여 2005년 대비 4.3배나 올랐습니다. 2011년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2012년 인상안이 2011년 10월부터 조기에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2008년 연평균 23% 상승, 2011년 18.6% 상승). 다음으로 학력별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의 경우 667만동,

무학의 경우 361만 동으로 300만동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517만동, 농촌지역의 경우 383만동으로 지역별로도 130만동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사원의 급여도 2013년 5월 발효된 노동법 28조에 의해 정상급여의 70%에서 8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수습사원의 급여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 훈련(회사에서 제공하는 훈련 포함)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7%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02-09)

### 상담사례 — 33 베트남 농업 관련 투자환경

**Q** 베트남 농업 관련 투자환경 문의

**A** 베트남 남부지역 농업 중심지는 메콩델타 지역이며, 쌀, 커피 등 생산량이 세계적입니다. 매해 약 800만톤 정도의 쌀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보관 등에 있어 농업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유통망 등이 부족하여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생산 관련 기계 등도 주로 일본 농기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달랏 지역에 한국인 영세 농업인들이 진출해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농업부문 투자에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2015-03-11)

### 상담사례 — 34 베트남 전력 수급 현황

**Q** 베트남 투자 시 전력환경 문의

**A** 2013년 베트남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148억kWh였습니다. 전체 생산전력의 52.8%는 산업 및 건설용 수요로, 47.2%는 일반 소비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2012년 전력 생산 총 설비 용량은 26,475MW입니다. 발전소 비율은 수력 47.5%, 석탄 17.8%, 천연가스 27.1%, 중유 1.7%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그 비중이 수력 25.5%, 석탄 48%, 천연가스 16.5%, 재생에너지 5.6%, 원자력 1.3%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2011~2015년 베트남 전력 수요는 연평균 14~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7만5,000MW, 2030년 14만6,800MW로 총 전력 생산 설비 용량을 증대하고, 전력 발전량은 2020년 330TWh, 2030년 695TWh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총 175개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력 분야에 연간 US\$49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잦아지는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전력 수입국에서 전력 수출국으로 전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전력개발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US\$6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38개의 대형 화력발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US\$480억의 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 낮은 전력 매입 가격과 투자자 보호 미흡, 비우호적 법률 등의 영향으로 외국계 자본을 이용한 BOT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법규 및 가격 체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을 포함, 외국계 BOT 프로젝트가 활발히 등록되어 진행 중입니다.

(2015-03-26)

### 상담사례 — 35 중고 엔진 수출

**Q** 베트남(호치민)으로 중고 엔진을 수출하려 준비 중입니다. 듣기로 베트남 정부 중고 엔진 수입 규정이 취소되어 아직 명확한 규제 내용이 공표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의 유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중고 엔진 수입 규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3년 11월 20일 “국제 제품 매매, 매매대행, 가공 및 제3국 제품 경우에 관한 법령(187/2013/ND-CP)”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시행문이 2014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승합 또는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류의 중고 차량은 생산연도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연도까지 5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수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차량, 중고 의류기기, 중고 소비재의 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지목록 품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중고 자동차의 개별 부품에 대한 세부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규제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중고 차량에 생산연도를 5년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인 엔진 또한 본 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015년 6월 혹은 7월에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라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2015-06-11)

### 상담사례 — 36 베트남 교육업 구체적 사례 문의

**Q** 베트남 투자 시 교육분야 업종 기투자 사례 문의

**A**

• 단독투자: 100% 외국인 지분의 기관 또는 기업 설립 - 호주계 RMIT 대학 해당

- 합작투자: 베트남 개인/기업/기관과 합작으로 설립 - 하노이 국제학교 해당(베트남 교육기술센터와 해외파트너가 설립)
- 경영협력계약: 최근 가장 확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교육 코스를 제공하여 복수학위 과정이나 교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인 설립이 불필요합니다.
  - 다낭대학교와 퀸즈랜드 대학이 설립한 ELI가 이에 해당 (2015-06-22)

### 상담사례 — 37 M&A 동향 문의

**Q** 베트남 경제상황 및 환경, 한국업체 진출현황, 주요 경제 이벤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특히 신규 진출보다는 M&A를 통한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베트남 내 동향 문의 드립니다.

**A** 베트남 M&A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공기업의 민영화(equitization)도 활발합니다. 특히, 올해 7.1. 개정된 투자법 및 기업법에 의하면 이전과 달리 지분 51% 미만의 경우 외투기업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상으로는 소수 지분 투자 시 경우에 따라 투자허가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개회사의 경우 신규 외국자본 투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정관 제한 사항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위 경우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에 투자비율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신고는 외투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투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신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09-18)

### 상담사례 — 38 메콩델타 지역 물류비, 현지법인설립 vs 외투법인설립

**Q** 베트남 투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 ①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물류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 ② 현지법인설립 시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차이점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 방향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① 베트남의 물류비는 지역별, 화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지역의 경우 실제 물류회사에서도 실사 후 견적을 내어보기 전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 한국기업이 많은 호치민, 빈중, 동나이 지역의 경우 (항구에서 약 100Km 내 지역) - 물류비 예를

들면, 2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공장에서 항구까지 내륙운송 비용은 US\$200~\$300,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300정도(반대로 한국에서 베트남은 약 \$700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순수 운임 기준이며 통관비용 및 도착지 내륙 운송비용 등 별도). 참고로 베트남은 국내 물류비가 비싼편으로 호치민-하노이 선편 운송비용도 약 \$400 정도입니다.

- ② 질의 문맥상 '현지법인설립'은 투자는 외국인이 하나 현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하는 경우로 이해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장점은 대부분 투자허가절차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습니다. 또한 수출입 등 절차 등도 외투법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단점으로는, 법적으로 명의대여자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무자자는 이면계약에서만 존재하게 되므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해결이 곤란하며, 이익 배당, 배당금 송금 등에서도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외국인 100% 지분 회사 설립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추세이며,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2015-09-22)

### 상담사례 — 39 빈증성 임대공장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

**Q** 베트남 빈증성에 3,000평 정도의 공장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대략적인 비용, 전력비, 수도비, 수도관리비, 관리비 등 공장 운영에 관한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빈증성 임대공단의 경우 스퀘어미터당 US\$ 3~5/월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관리비를 포함한 금액). 전기 요금은 사용 시간대, 전압, 공단 내/외 지역에 따라 다르나 평균 1500VND(약 US\$ 0.08)/kWh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도 요금은 산업용수 기준 1m<sup>3</sup>당 US\$ 0.4~0.5입니다. 다만 3,000평(1Ha) 크기 정도의 공장이라면 임대공장이 흔치 않습니다. 호치민 인근 임대공장들은 대부분 500m<sup>2</sup>~2000m<sup>2</sup> 정도 크기의 공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10-05)

### 상담사례 — 40 냉장/냉동창고, 냉장차량, 창고업

**Q**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환경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냉장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베트남 내의 냉장/냉동창고, 냉장차량 현황이나 창고업 관련 물류창고 현황자료를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략 30만 개 이상 회사가 하이테크산업, 전기, 기계 가공 및 경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업이나 소재 산업, 농산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치민 시에는 15개의 공업단지 및 수출 가공 지구가 있으며, 팡쑹 소프트웨어 공원(Quang Trung Software Park) 및 사이공 하이테크 공원(SaiGon Hi-tech Park)이 있습니다. 호치민시에는 소규모의 시장을 빼고서도 171개의 시장과 슈퍼마켓 체인점 10개 계열이 있고, 고급 쇼핑몰 12개, 다수의 미용-의류 센터가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은행이 몇 백개의 지점을 열고 있으며, 이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보험 회사도 20개사 정도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 중단 철도의 중심 허브입니다. 승객들은 북쪽으로 1950킬로미터 떨어진 하노이나 중국 국경까지 여행할 수 있으며 또한 호치민 시와 동나이 강을 따라 사이공항, 신행, Ben Nghe항, VICT항 등 많은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들은 베트남 전체 수출입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출 유망 분야로는 호치민은 섬유산업, 신발산업, 건설업 등이 발달되어 왔고 특히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기반 사업이 등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WTO 가입 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임가공·제조업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베FTA 및 TPP 타결로 해당 분야의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력, 가스, 용수제조업, 교육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내의 냉장/냉동창고, 냉장차량 현황은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지 포워딩 업체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5-10-13)

#### 상담사례 — 41 청산 절차 및 공단 외 투자 시 유의점

**Q** 기존 업체 청산 절차 문의 및 공단 외 신규 투자 시 유의점

**A** 베트남에서 청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절차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청산 시 대부분의 절차는 세무당국의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이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약6개월).

공단 외 공장 토지 매매 시 추후 설립 허가가 나지 않거나, 한국과 다른 토지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소유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극히 주의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토지사용권증서(레드북) 확인 및 해당 토지에 외투기업으로 투자가능 여부를 미리 계획투자청(DPI)에 확인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015-11-10)

**상담사례 — 42** 건설업 지사 설립 가부

**Q** 건설 분야의 베트남 측 양허 내용 중 건설서비스가 외국 기업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경제 신문 2015.5.7일자 기사에 따르면 FTA 발효 시 기존에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야 건설 등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점 또는 합작 투자 형태로도 가능해졌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별도의 시공법인 설립 없이도 International contract의 경우 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 PMO외에도 향후 자본금 납입이 없는 지점 형태로도 현지에서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대표사무소(Rep. office), PMO, 현지 건설법인을 제외하 타 형태의 진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말씀하신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512등)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문 원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 등의 서비스 양허표 부분 참고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은 당사국의 법인이어야 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 지사 설립이 허용됨
한-베 FTA: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정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점 설립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베트남 진출 형태에 있어 대부분의 분야에 지점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은행권 등 외에는 설립허가가 나지 않았던 점, 또한 자본금에 있어서도 유한회사 등 법정자본금 규정이 없었으나 실무적으로 적절한 자본금을 산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웠던 점, 베트남 당국이 지점에 대해 세무 관련 등을 PMO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PMO와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 실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실적으로 자본금 없는 지점 형태의 영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한베 FTA는 곧 발효를 앞두고 있고, 선례 등이 없어 실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15-12-18)



Ⅲ

# 투자 유치제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상담사례 — 43 환경오염유발산업 진출 허용 여부

**Q** 베트남 남부지역의 호치민, 떠이닌, 빈푹, 빈즈엉성에 전분공장 증설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환경법규와 관련하여 제한사항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4개 성의 환경법규 제한 사항 등의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최근 베트남은 환경오염유발산업에 대해 투자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성별로 차이가 있고, 호치민, 빈즈엉, 동나이성, 바리아붕타우성 등은 공단에서도 오염 유발 공장 유치에 소극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빈푹성의 경우 사람들의 건강, 천연 자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들은 투자금지되며, 빈즈엉성의 경우 직조, 염색(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조와 염색을 할 300헥타르 규모의 공업 단지를 Bau Bang Town에 건설할 계획이 있음) 등 환경오염유발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별로 환경오염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전분공장 설립 시 어떠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은 각 공단별로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룡안성이나 빈푹 등 외곽지역은 제한이 느슨한 지역입니다. (2015-02-26)

### 상담사례 — 44 원산지 증명서 중 AK Form 발행

**Q** 베트남 투자 시 AK Form 관련 문의

**A** 원산지증명서(C/O)의 성격은 거래물품의 제조지, 국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종류는 일반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대개 해당국 상의(商議)가 발행하며 WTO 원산지규정에 따릅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특혜 제공 목적으로 해당국 상의(商議) 또는 세관(베트남은 산업무역부 및 지방산업무역국)에서 발행하며 각 FTA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에 충족하여 생산한 후, 각 시·성의 수출입관리과에서 영어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 단위로 발급하며, 동일선적 B/L 분할 시에는 사전에 세관확인을 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 시 또는 수출신고 직후에 발급되며, 한 ASEAN FTA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15-01-20)

**상담사례 — 45** 현지법인 지분 양수도 절차 및 유의점

**Q** 베트남 현지법인 양도양수 관련 절차 및 유의점 문의

**A** 원칙적으로 지분양수도 판단 전 피인수업체에 대한 법률 및 회계(세무)실사를 통하여 인수 적격업체인지 사전 판단하신 후, 투자 적격 업체로 판단한 경우 본격적인 지분양수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분양수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분양수도 계약서는 통상 영문본과 베트남어 본으로 작성되며 동 계약서에는 지분양수도 대금은 얼마로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실지(에스크로 계좌 이용 여부 등),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문제 처리 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원칙적인 양수도 대금 지급방법은 귀사가 베트남 소재 은행에 투자계좌(USD)를 개설하고, 위 투자계좌로 한국에서 지분 양수도 대금을 송금한 후 동 투자계좌에서 피인수업체의 법인자본금 계좌(CCA)로 송금하였다가 세금을 공제하고 양도인의 개인(법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분 양수도 계약서, 정관변경 작업 등 기본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피인수업체의 투자허가증명서(I.C)를 변경해야 하는 바,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투자자 및 법인장(피인수업체의 사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피인수업체의 정관자본금을 포함한 투자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포함) 변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2015-01-26)

**상담사례 — 46**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Q** 베트남 투자 시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문의

**A**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인민 위원회 산업무역부(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업무역부(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 주소 :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 전화번호: (84,8) 3823-9570 팩스번호: (84,8) 3822-4536
- e-mail: tradehcmc@gmail.com 홈페이지: www.trade.hochiminhcity.gov.vn

**□ 대표사무소 제출서류 (②, ③번 공증 필요)**

- ① 무역부에서 승인한 신청서: 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 ② 본사 설립인가 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 서류
- ③ 지난 2년간 본사의 회계감사 자료

- ④ 대표사무소장이 될 분의 여권사본
- ⑤ 대표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과의 임대계약서 사본  
→ ②, ③ 번 공증 필요, \*주: 기존에 있던 '본사 정관'은 2016년 관련법령 개정 이후 삭제

#### □ 대표사무소 등록 조건

-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이 원칙. 5년 지나면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2015-01-26)

### 상담사례 — 47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Q** 베트남 투자 시 법인설립 절차 등 문의

**A**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지선정
- ② 부지가계약 체결(공단 내 부지: 공단 개발 회사와 가계약 및 MOU 체결, 공단 외 부지: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와 가계약 및 MOU 체결)
- ③ 투자허가서(IC) 신청 준비(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 본국 기업에 대한 증빙 자료/현지 투자 허가 신청서, 기업정관, 투자프로젝트 계획서 등 현지법인 운영에 대한 자료)
- ④ 투자허가서 신청
- ⑤ 투자허가서 발급(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업무일 15일 이내 발급. 단, 투자분야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함)
- ⑥ 투자허가서 발급 후 수속(법인인감 등록, 세무코드 등록, 은행계좌 개설, 핵심인사 등록, 신문에 설립사항 공고, 수입계획서 등록 등 수속)
- ⑦ 부지정식계약(공단 내 공단개발회사, 공단 외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 (2015-01-28)

### 상담사례 — 48 제약업

**Q** 베트남 제약 업종 진출 관련 문의

**A** 현재 베트남 법상 의약품은 외국투자법인의 유통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베트남 내에서 직접 제조한 의약품이 아닌 경우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투자방식보다는 베트

남 현지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한 우회적인 루트로 유통진출을 시도한 케이스가 있으나, 이 역시 호치민 시 기획투자국의 결정에 따라 불허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불과 4% 정도의 외국투자법인의 지분보유에 해당하였으나 현지법인까지 외국투자법인으로 간주되어 의약품 유통이 불허된 케이스입니다.

(2015-01-28)

**상담사례 — 49** 베트남 공단 현황

**Q** 베트남 투자 시 공단정보 현황 등 문의

**A** 베트남은 288개 산업공단, 80,809ha 전체 면적이며(2013년 12월 기준) 그 중 운영하는 산업공단은 190개, 54,093ha 면적을 차지하고, 나머지 98개 산업공단(26,716ha)은 부지 개발 및 보상 단계입니다. 베트남 남부지역 공단은 호치민시, 빈중성, 동나이성에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상황이며, 점점 롱안성, 바리아붕따우성, 빈푹성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예전처럼 무조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유발산업 등 베트남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투자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동나이성과 바리아붕따우성에서 투자 제한 사업과 금지 사업 분야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리아붕따우성은 향후 금지 사업으로 타피오카 생산, 기본 화학물질(산업폐기물 발생), 염색, 가죽, 제지, 어분, 환경오염유발 사업 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에도 도금, 수산물가공, 페인트 생산, 산업용 세척제, 일반 근로자 노동집약적인 산업, 토지 대량사용산업, 낮은 부가가치 사업, 폐기물 유발 사업 특히, CO<sub>2</sub> 발생 사업, 낙후된 기술도입 사업 등은 투자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성별 투자허가제한 업종은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들은 공단선정에 있어 검토해야 할 중요 사안입니다.

(2015-01-28)

**상담사례 — 50** 교육업

**Q** 베트남 교육 사업 진출 문의

**A** 일반적인 학원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학원 투자허가서 발급신청, 투자허가서 발급, 운영라이선스 발급 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원 설립에 관한 투자허가서 신청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또는 가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학원 위치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당 투자허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설립될 학원 명을 이용한 홍보, 상담, 학생 등록 등의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015-02-11)

**상담사례 — 51** 베트남 내에서 ISO 인증 가부**Q** 베트남 인증제도 관련 문의

**A** 베트남에서도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투자기업들도 심사를 거쳐 ISO 인증을 베트남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 표준화 기구로 "TCVN"이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2015-02-27)

**상담사례 — 52** 제약유통업 가부**Q** 베트남 제약 관련 투자환경 문의

**A** 베트남에서 제약 관련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약 유통업은 원칙적으로 불가이기 때문에 로컬법인과 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최근 제약관련 성분별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어 거래 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제조업종으로 진출보다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중입니다.

(2015-02-27)

**상담사례 — 53** 사행성 게임 가부

**Q** 이번에 베트남 우선으로 동남아 쪽에 비디오 게임장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게임 사업장이 심의가 있는 기기 아니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비디오게임기기의 심의나 허가 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디오게임의 사행성 관련 문의입니다.

게임 방식이 현금을 받고 게임기에 포인트를 줘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아 있는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형식의 방법이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사행성으로 불법 영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방식 즉, 비디오게임 포인트를 현금 아닌 경품(티비나 냉장고등) 혹은 금으로 반환을 해주고, 금이나 경품으로 수령한 고객이 게임을 한 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예를 들면 근처 금, 귀금속 판매처 혹은 전자제품 판매처) 다시 매입·판매를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금을 상품으로 준다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아야 합니다. 금이 어렵다면 전자제품(티비나 냉장고 등) 경품으로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방식으로 비디오게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외국인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베트남의 경우에도 비디오게임기 및 카지노 등의 사업장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총리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진행하시려는 사업의 사행성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프로젝트 투자 진행 후 해당 담당청 및 유관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 저희 무역관에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은 불가능하며, 법인 투자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법인의 투자자는 외국인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법인의 형태로는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투자허가 절차로 DPI와 인민위원회가 검토한 후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데, 이때 해당 사업은 추가로 총리허가 투자를 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 □ 총리허가 투자 심사 부가 설명

외국인 투자법인의 투자심사 대상자는 1. 투자규모가 3천억동 이상인 경우 2. 조건부 투자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부분은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총리 허가가 필요한 사업(국영 항구건설, 담배제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카지노사업 등)입니다. 총리 허가가 필요한 투자분야의 경우 투자심사 절차로는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성급 DPI에 접수하면 관련 부처의 심사 및 총리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자허가서가 발급됩니다. (2015-03-03)

### 상담사례 — 54 인쇄업 투자진출 가부 문의

**Q** 베트남 투자 시 인쇄업 등 투자 진출 문의

**A** 베트남은 최근 환경오염유발 산업 투자진출을 제한하고 있어 인쇄업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허가서에 업종코드 취득을 유사한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환경오염 발생 물질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및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015-03-16)

**상담사례 — 55** 외식업 100% 외국인 지분 진출 가부

**Q** 외식업에 대한 '100% 외국인 지분 투자' 질문입니다. 호치민에서 외식업(식당 및 배달)을 시작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이며, 프랜차이즈 혹은 주류 판매는 아닙니다. 베트남인이 설립한 식당의 '명의를' 사서 쓰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외국인도 외식업에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몇몇 컨설팅 업체를 만나 뵙고 여쭙보니, 1) 법은 바뀌었으나 개인이 허가를 받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베트남 명의를 사라. 2) 법은 바뀌었으나 허가가 날지 확실치는 않다. 3) 5천만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외식업 또한 100% 외국인 지분으로 투자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정도로 정리 됩니다. 혹시 개인이 외식업에서 지분 100%(명의를 한국인 이름으로 된)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A** 외식업에 대한 개방은 WTO 스케줄 상 개방 일정에 의해 현재 개방되었습니다. 작년에 로지스틱 중 일부 분야도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베트남은 WTO 개방 일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 편이지만, 개방 일정은 실무상 허가기관이 체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은 '법'이 개정되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식업종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일단은 조건부투자분야로서 투자허가기관의 '재량'이 있기에 투자진행을 하시면 베트남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보완 등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로지스틱의 경우를 본다면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투자허가서는 취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도 역시 허가기관의 내부적 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WTO 스케줄과 법률 등이 충돌하는 경우는 단시일 내에 결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트남은 점점 외국인투자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주: 2017년 현재 일반적 요건을 갖춘다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2015-03-30)

**상담사례 — 56** 합작법인 설립 시 지분을 설정

**Q** 베트남 투자 시 합작법인 관련 지분을 문의

**A** 합작 지분율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100% 단독투자의 경우는 의사결정에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합작투자 방식 + 유한책임회사로 진행하시는 경우 2인 이상 유한 책임회사는 의사결정속수 75% (2015. 7. 1.부로 65%) 의결정족수



- 일반 의결정족수: 출석한 사원 지분 총액 65% 이상 찬성
- 특별 의결정족수: 출석한 사원 지분 총액 75% 이상 찬성입니다. 결국 75% 이상 지분을 보유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인 회사지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파트너의 의사도 고려 되어야 하니 지분 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2015-03-30)

**상담사례 — 57** 수출가공공단 내 제조업체 설립

**Q** 베트남 수출가공공단 문의

**A** 베트남 수출가공공단은 정부 제29/2008/nd-cp호에 규정된 공업구에 대한 조건, 적용순서 및 절차에 따라 설치된 수출물품 생산, 수출물품 생산 및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화된 공단입니다. 호치민에 Tan Thuan 공단 등이 있으며, 토지임차료가 스퀘어당 260달러 이상으로 비싼 편입니다. 수출가공기업은 수출가공구 내에 설립되고, 활동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5-03-30)

**상담사례 — 58** 현물출자 기부 및 중고차 수입

**Q** 베트남 투자 시 현물출자 관련 문의 및 중고자동차 수입 문의

**A** 원칙적으로 베트남 투자의 방법상 현금, 현물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허가서 신청 시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향후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작성한 내용에 따라 투자설비로 들어오는 기계설비 등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수입세 면세 등을 받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입관련(5년 이내) 세금은 수입세, 특별소비세, VAT가 문제됩니다. 수입세와 관련하여 CC마다 차이가 있고 1,500CC에서 2,500cc의 경우 미화5,000불+수입차량 가격X새차 수입세입니다. (2014년 기준) 특소세도 10~60%까지 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령이 계속하여 개정되고 있으며, 실무상 적용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업무 추진 전 저희 무역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04-06)

### 상담사례 — 59 교육업종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가부

**Q** 베트남 투자 시 교육업종 관련 문의

**A** WTO 서비스 분야 개방 일정을 보면 고등교육 서비스, 성인대상 교육서비스(대학 등) 기타 교육기관(어학원 포함)은 2009년 이후 부터 100% 외투자회사 설립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학원의 경우 면적, 강사, 학생수 대비 일정한 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중등교육의 경우는 미양허 분야, 유아 교육의 경우는 관련 규정,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04-06)

### 상담사례 — 60 물류업

**Q** 베트남 물류업종 관련 문의

**A** 화물운송중개 서비스(CPC 748)의 경우 시행령 140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하역 중개를 포함한 운송 중개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나, WTO Commitment 상에서 CPC 748는 별도로 통관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바, 아직 해석상 화물중개서비스에 통관수속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베트남 관계기관으로부터 구두로 답변을 받은 결과 통관 절차에 관한 수속 서비스는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불가능한 업종 및 업태이므로, 이를 위하여 반드시 베트남 현지인과 합작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위의 통관 절차를 위해 별도로 현지 법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만, 위의 통관 절차가 운송 중개서비스에 포함되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또한 WTO Commitment상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100% 단독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시행령 140 제5(3)(c)조에서는 여전히 합작투자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바, 단 1%라도 베트남 파트너의 지분이 필요한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노이와 호치민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서 공문서를 보내 확인한 결과 외국 투자자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의 공적인 의견에 의하면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법인 설립 가능한 사업구조입니다. (2015-04-06)

### 상담사례 — 61 알루미늄 스크랩 통관

**Q** 알루미늄 스크랩 수입 통관 시 베트남 기준에 따른 품질 검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기준 미달 시 반송조치 된다고 하는데 품질 검사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및 통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수입 통관 이전 알루미늄스크랩 품목에 관한 품질감정을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까지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사기관으로는 정부 검사기관과 민간 검사기관이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품목, 품질관리 우수업체, 소액 수출, 바이어 검사물품 등은 수출검사를 면제 또는 제외하여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수출자의 신용도 및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참고하여 무작위추출 불규칙검사와 전량 필수검사로 나뉘어 실시되며, 검사 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 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015-04-08)

### 상담사례 — 62 무역업, 유통업

**Q** 베트남 무역업, 유통업 진출 가능 여부 문의

**A** 해당 업종은 법령상 외국인 100% 투자법인 설립을 허용합니다. 또한 사업 허가에 유통업 사업 분야가 없더라도 수입, 수출입 사업 부분만으로 일정 부분 해당 상품을 베트남 내에 유통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유통의 상대방은 해당 상품의 HS CODE에 관한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 한정되며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업 분야 이외에 별도로 유통업 사업 분야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2007년 까지는 외국인 지분한도 49%, 200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지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베트남 인과의 합작법인설립 의무사항이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

영업점포가 필요한 유통법인의 경우 1호점만 설립을 허가하고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를 고려하여 차후 2호점 이상에 대하여 별도 허가가 가능하며, 투자허가는 각 시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DPI)에서 주관하기는 하나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수, 투자자의 재정 능력, 시장 수요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15-04-21)

### 상담사례 — 63 틸라피아 양식업

**Q** 베트남 투자 시 양식업 관련 문의

**A** 베트남 투자법상 양식업은 투자우대분야이며, 투자 계획서에 따라 특별우대 투자분야 또는 일반 우대 투자분야에 해당합니다(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 새로운 동식물 품종 개발). 또한 프로젝트 형태로 현재 진출하고 ODA자금을 활용하는 현 단계에서 틸라피아가 성공적으로 양식이 이루어진다면 법인설립 등 투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식장 입지 선정 등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015-04-27)

### 상담사례 — 64 화장품 수입업체 설립 가부

**Q** 베트남 투자 시 화장품 수입관련 절차 문의

**A** 외국인 100% 투자법인 설립을 인정합니다. 또한 사업 허가에 유통업 사업 분야가 없더라도 수입, 수출입 사업 부분만으로 일정 부분 해당 상품을 베트남 내에 유통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유통의 상대방은 해당 상품의 HS CODE에 관한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 한정됩니다.

만약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업 분야 이외에 별도로 유통업 사업분야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유통 시 제품등록신청서, 품질명세서 및 제품 분석보고서, 등록 개인 및 업체의 사업(투자허가서)증명서, 제조사 베트남 수입자 지정 위임장, 제조사 본국 CFS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에 대한 수입을 위하여 수입업자(수입면장의 Consignee)는 베트남 보건부(MOH)에 수입과 관련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관련 허가에 있어 브랜드별로 신청서류가 작성되며 매번 수입시에 개별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수입에 있어 베트남 내 수입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해당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가 서류(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발급 비용은 공식적으로는 50만 동이나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빨리 하는 등의 급행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진행 속도는 개별 건으로 결정됩니다.

허가 서류에는 제품에 관한 정보, 제조자에 대한 정보, 국내 판매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 및 제품 원료 정보를 함께 요구합니다.

- 제품에 대한 정보: ■ 브랜드 및 제품 이름 ■ Sub-brand 이름 ■ 제품군(종류별) ■ 사용 용도
- 제조자 정보: ■ 회사명, 주소 ■ 포장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 기재

- 국내 유통자 정보: ■ 회사명 및 주소 ■ 대표자 이름
- 수입업자 정보: 회사명 및 주소 ■ 연락처
- 제품 원료 리스트: ■ ASEAN Cosmetics Ingredient Listing의 Annex II~VII에 합당한 검사 유무 확인 ■ 제품에 사용된 원료 기재 ■ 신고자 서명 (2015-04-27)

**상담사례 — 65** 최저 법정자본금 및 총 투자자본금과 정관자본금의 비율

**Q** 베트남 투자 시 법정자본금 관련 문의

**A** 베트남 진출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시 공장부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MOU) 원본 또는 공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시 통상 10~30% 정도의 계약금을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게 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지에 에스스로 계좌 개설을 통한 지급입니다.

빠른 진행을 목적으로 한국본사에서 에스스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인 측에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해지 시 계약금 반환조항을 신설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법상 총 투자자본금 중의 정관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대여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통상 대여금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현지법인의 명의로 대여약정체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상 계약금 지급을 대여금으로 지출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전 귀사 한국본사의 명의로 현지에 있는 은행에서 대여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지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 본사 명의로 현지은행에서의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도 자본금상 대여자본금이 아닌, '정관자본금'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관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당해 자금이 귀사의 현지 신규법인 투자금의 일부로 사용되며, 귀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거래 은행과의 사전 조율 등 법무법인의 검토 또한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관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총 투자자본금의 약 30% 규모로 예상하시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 총 8백만 달러(80억) 중 240만 달러를 정관자본금으로, 나머지 차액은 자기자본 또는 대여금으로 충당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총 투자자본금이 80억 규모라면 정관자본금 2억원으로는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상 최저자본금 규모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없으나, 투자당국에서 심사 시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05-11)

### 상담사례 — 66 프로젝트 투자 방식

**Q** 베트남 투자 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

**A** 베트남 투자 시 프로젝트 관련 투자 방식은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법인설립 후 진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찰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진출은 외국인계약자세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는 CPC 코드를 취득하신 후 해당 업종 영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2015-05-26)

### 상담사례 — 67 원산지증명서 취득

**Q** 중국의 차량을 부품으로 베트남에 들여와서 '메이드 인 베트남' 으로 판매하거나 한국으로 들여와 '메이드 인 코리아' 기준을 적용해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차종은 버스이고, HS 코드 8702번에 해당하는 차종입니다.

- ① 베트남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 ② 한국으로 중국 차량을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 '메이드 인 코리아'로 베트남에 수출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 ③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 ①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가치(원부자재, 인건비 등)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치 중 베트남 내의 가치(베트남 원부자재,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기준(해당국가, 원부자재 판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내 관세사 및 관세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③ 한-베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정해진 품목은 기준에 준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취한다면 수입관세 인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세율표, 상세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인하율이 다를 수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5-06-10)

**상담사례 — 68** 법인설립 전 광고계약

**Q** 베트남 투자 시 법인설립 전 광고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

**A** 베트남은 법인설립을 갈음하는 투자허가서를 취득하여야 그 다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서 없이는 법률상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 다음의 광고계약, 수출입 행위 등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015-06-18)

**상담사례 — 69** 물류업

**Q** 베트남 물류업종 투자허가서 취득 문의

**A** WTO상 100% 개방이 된 분야라도, 현지 법령과 다를 경우는 진행에서 각 관할별, 담당자별 해석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투자분 99%, 현지명의 1% 등 형태로 투자허가서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2015-06-18)

**상담사례 — 70** 사이공하이테크파크 입주 조건

**Q** 베트남 투자 시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 문의

**A** 기본적으로 입주 희망 기업 품목이 하이테크 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SHTP 기술검토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미비할 경우는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위면적당 적정 금액의 투자금을 요구하며(1ha 당 12~15 million USD 정도, 3.3m<sup>2</sup> 당 3,960~4,950 USD 정도), R&D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투자금액 합산됨), 고급인력 직원(전문대 이상) 15~20% 비율 충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

SHTP의 기술검토는 5~7명의 기술검토위원이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 상임위원제가 아닌 때 건별로 관련된 기술 전문가, 교수 등 민간 위촉으로 이루어집니다. (2015-06-22)

**상담사례 — 71** 무역법인 설립 가부 및 이후 절차

**Q** 베트남 투자 시 무역법인 설립 등 문의

**A** 베트남 투자 시 투자허가서 취득으로 법인설립이 인정되며, 무역법인의 경우 2009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 100% 개방된 분야입니다.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제품의 위생안전검사 등에 대해 MOH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15-06-25)

**상담사례 — 72** 투자자 국적

**Q** 베트남 투자 시 투자자 국적에 대한 문의

**A** 베트남 투자의 경우 첫 단계는 투자허가서 취득입니다. 투자허가서 취득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 어디인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분권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첨부서류에서 차이가 나게 되며, 인도네시아 법인인지 한국 법인인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절차상 자본금 송금 등에 있어 자국법 규정(투자자 법인이 적용 받는 법률), 각 FTA에 따른 투자 조건 차이(현실적으로는 국가별로 다르지 않음), 베트남 투자허가서 취득 전 단계에서 법인 내정자 계좌로 임시 이체 후 법인을 설립하는 기술적인 점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2015-06-25)

**상담사례 — 73** 청산

**Q** 베트남 투자 시 청산 등 문의

**A** 베트남 투자프로젝트 청산에 관하여 베트남 투자법 제65조,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법 제65조 투자 프로젝트 활동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 ① 투자증명서상 명기된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 ② 계약서, 기업정관에 명기된 활동 종료의 조건 혹은 투자 이행 계획에 관한 각 투자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경우



- ③ 투자자의 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
- ④ 법률 위반으로 인한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 활동 종료의 경우

#### □ 시행령 제69조 투자프로젝트 청산

- ① 진행되는 투자프로젝트가 투자법 제65조 제1, 2, 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는 청산 절차를 거친 후 투자승인 확인서를 회수한다.
- ② 투자프로젝트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투자프로젝트 청산이 기업의 해산과 연관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자산 청산 법령과 청산 계약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 b) 투자프로젝트 청산이 기업의 해산과 관련된 경우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기업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 ③ 투자프로젝트 청산 기간은 활동종료가 결정된 후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 반드시 해당국가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투자프로젝트 청산에 있어 경제단체의 투자자들 분쟁으로 인하여 3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와 관련한 분쟁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혹은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다.
- ⑤ 투자프로젝트 청산 절차 진행 중 만일 기업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청산 절차는 종료된다. 그리고 그 투자프로젝트는 파산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2015-07-20)

### 상당사례 — 74 — 바리아-붕따우 투자환경

**Q** 베트남 투자 시 바리아붕따우성 투자환경 등 문의

**A** 최근 바리아붕따우성은 포스코, 락앤락 등이 진출한 지역으로 호치민시와 빈증성, 동나이성과 근접한 지역이지만, 도로 사정 등으로 이동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만, 최근 롱탄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허가 관할청은 바리아붕따우성 투자기획국이며, 주요 공단으로는 푸미공단이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바리아 지역으로 가는 중에 있는 동나이성의 연짜 공단도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곳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2015-07-21)

### 상담사례 — 75 유통업

**Q** 저희는 포장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제조목적의 베트남 현지법인(주식회사, 한국법인의 100% 자회사)을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제조설비를 베트남에 비치하고 생산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자사 제품과 관련성 있는 상품을 베트남 내로 수입하여 자사 제품과 함께(또는 단독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유통사업 인가가 불가하며 베트남 회사와 합작(한국회사 지분 50% 미만)을 통해서만 유통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 합작을 통하여만 유통사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통업은 투자법상 조건부 허가업종으로 허가 관할기관 내부적으로 산업무역부(MOIT) 허가가 나와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호치민시의 경우 최근에는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해 허가가 어렵거나 조건부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설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투자허가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는 종전 45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 7. 1. 투자법 등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 공식 발효되지 않고 있어, 안정화 되기까지 투자허가 기간은 다소 길어질 전망입니다. (2015-08-03)

### 상담사례 — 76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전환 절차

**Q**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대표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프레스 금형설계 회사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2012년 대표사무실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면서 아는 베트남인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만 믿고 시작 하다보니 여러가지 법적으로 세금 면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끝나기 전에 대표사무실을 폐쇄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걸쳐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 ② 각종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 ③ 세무관계는 다른 한국법인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④ 한국인(사장님을 비롯한 설계자들) 비자발급은 법인으로 되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① 필요한 서류

준비중인 법인 설립에는 투자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본국: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의 본국 기업에 대한 증명 자료, 현지: 투자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 등의 현지법인운영에 대한 자료. 이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위 서류들의 신고는 공단 내 부지일 경우 관할 지방성 공단관리위원회에 서류 제출, 공단 외 부지일 경우 관할 지방성 기획 투자국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다만 2015. 7. 1. 이후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서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허가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근시일 내에 관련 시행규칙, 시행령이 나올 것이며, 업무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가 재정비되면 위 서류들은 어느정도 변경될 수 있으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세무관련

대부분 한국기업들의 경우 세무관련은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시내에는 로컬 회계법인, 한국 회계사/세무사가 근무하는 로컬 및 해외 회계법인, 한국계 회계법인 등 다양한 회계법인이 존재하며 만약 베트남인과의 업무 처리나 의사소통이 힘들시다면 한국인 회계사가 근무하는 세무법인을 통해 일처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④ 비자발급

2015년 초 비자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신법에 의하면 모두 취업비자(LD)를 받으시면 되며, 이를 위하여 법인 설립 및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 비자(DT)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받는 비자이고, 현지 법인장의 경우에도 위 취업비자(LD)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개정 이후에는 베트남으로 관광비자 혹은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5-08-06)

**상담사례 — 77** 건설업, 도급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필요 여부

**Q** 2014년 5월에 베트남 현지로부터 상담을 받은 바에 따르면 Foreign Construction License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In order to execute construction work in Vietnam, the contractor shall take a "Foreign Construction License" approved by MOC(Ministry of Construction).

\* 상기 질문은 공사를 외국P.O.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2016년 3월경 Vietnam JVC(투자지)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Construction works를 3ea Package로 나누어서 Local construction사에 하도급을 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를 위해서도 Foreign Construction License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외국 건설 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Construction Permit(아래 말씀하신 Foreign Construction license를 의미합니다)을 건설 관련법 분류 기준에 따라 그룹 A에 해당되면 MOC(Ministry of Construction), 그룹 B 또는 C에 해당되면 DOC(건설공사 현장이 소재한 시성의 Department of Construction)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P.O.(Project office)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건설공사 프로젝트 현장 소재의 DOC에 귀사 관련 정보 등록으로 설립됩니다(만약 수행할 업무가 bidding packages of construction planning formulation, construction project formulation, construction survey or construction design 중에서의 수행에 해당된다면 건설 현장 소재지가 속한 성이 아닌 다른 시성의 DOC에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하도급 업체가 사실상 모든 공사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외국 업체인 도급업자는 Construction Permit을 취득한 후 P.O 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5-08-15)

### 상담사례 — 78 금형설계 법인 설립

- Q** 저희 회사는 자동차프레스 금형 설계 업종이며, 이 업종으로 현지 법을 설립할 경우 투자법에 따르면 1. "조건부 프로젝트"에 속하며, 연합군 업종코드 체계 및 WTO 서약서에 의거하면 2.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CPC867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반 프로젝트보다 조건부 프로젝트 허가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① 저희 회사 업종이 WTO 서비스 개방 일정상 지금 법인 설립하는데 문제 없는 것이 맞는지
  - ② 또한, 100% 외국인직접투자 가능한 서비스 항목인지도 궁금합니다.

**A**

- ① 만약 귀사 업종이 CPC8673에 해당한다면 WTO 양허 규정 일정상 현재 개방되어 있습니다.
- ② 또한 100% 외국인직접투자도 가능합니다. 즉, 법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베트남에서 WTO 규정이 절대적인 상위 법령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WTO에 의해 100% 개방 분야인데도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아 결국 외견상 합작 투자로 설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시면서 투자허가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5-08-27)

### 상담사례 — 79 화장품 유통점 합작법인 설립

- Q** 베트남 로컬 파트너와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화장품 유통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유통(화장품 유통판매)과 무역업(화장품 수입)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현지 파트너와 법인 설립 시 외국인(본인) 합작 법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 합작회사, 현지법인이나 지분공유는 외국인과 가능함, 합자회사 등
- ② 외국인(본인)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 기준이 있는지, 투자자금의 기준이 있는지, 협의에 의한 계약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③ 추후 이익분배에 대한 것은 법인 설립 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A**

- ① 말씀하신 베트남 내 법인에 대하여 단독투자/합작투자 가능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로 설립 시, 주로 2인 이상 유한회사/주식회사로 설립됩니다. 올해 7.1. 이후 개정된 기업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51% 이상 지분율이 있으면 외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51% 미만이라면 법에 의해 베트남 기업과 같이 분류되어 투자허가(IRC)가 필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경영권에 관하여는 저희 국가정보 투자관련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의에 의한 부분은 제한적이며,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자허가서상 75%(2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5%(주식회사의 경우)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익분배는 지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정관 설정 등을 통해 일부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2015-09-08)

**상담사례 — 80**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Q**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며, 소요 기간, 비용,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베트남 상표출원 진행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사상표 검색 비용 지불 및 유사상표 검색(10일 소요)을 통해, 가능 여부에 대해 저희가 선정한 대리사무소 변호사의 소견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유사상표 재검색 또는 취소 경우가 생기며, 보호 출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때 업체에서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으로 구비해주셔야 하며, 이와 함께 보호협회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현지 대리사무소에 송금하셔야 합니다. 그 후 대리 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업체의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출원 신청(최소 1달 소요)을 진행 합니다. 이후 출원공개, 이의신청, 신체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표는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약 1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한국지식재산협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상표출원등록 업무 및 비용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출원 지원 관련 신청은 [www.ip-desk.or.kr](http://www.ip-desk.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상표출원 지원 한도는 등록비용의 50%(300달러 초과할 수 없

음)이며, 한 업체당 연간 8건의 상표등록 지원이 가능합니다.(제품 1개류당 지정상품 6개 이하) - 한가지 상표이지만 다수 상품 분류 신청 시 추가 지원 건으로 간주됩니다. (2015-09-15)

### 상담사례 — 81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Q** 최근 저희 회사와 베트남 내 병원과 MOU를 맺고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의사 면허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베트남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 의사들이 베트남 내에서 시술을 할 경우 적용되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내 성형외과들은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환자 모두에게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베트남에도 있는지, 없다면 한국 의사 보험가입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베트남 법은 보험에 관한 제도는 구체적이지 않고, 규제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도 상으로는 말씀하신 보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혹은 수익자)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베트남 보험회사와 개별 접촉하여 해당 상품 판매 여부 및 해당 조건을 알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내 최대 보험회사는 Bao Viet이며, 그 외 주요 보험사로 Bao Minh, PVI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계 보험사로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있습니다. (2015-09-16)

### 상담사례 — 82 파견업, 유료직업소 개업

**Q** 호치민시 내 헤드헌팅, HR컨설팅, 인력공급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설립 중이나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 베트남 내 파견업은 법규상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그렇다고 명시적인 허가 조항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청(성 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 및 노동부)의 재량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호치민 시내 기준으로 외투법인 허가가 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소개업의 경우 외투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실제 허가가 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모두 조건부 허가 분야로 허가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15-10-25)

**상담사례 — 83** 한국산 생수 유통에 필요한 등록 사항

**Q** 베트남 생수 진출 시 한국산 생수 등록에 관한 법규 문의

**A**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화학분석, 성분분석, 미생물분석 등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제품 등록을 위한 라벨링도 필요 합니다. 관련 법령은, <http://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Quy-dinh-1626-1997-QD-BKHCMNT-Quy-dinh-tam-thoi-quan-ly-chat-luong-nuoc-khoang-thien-nhien-dong-chai-va-nuoc-uong-dong-chai-41093.aspx>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10-28)

**상담사례 — 84** 폐기물 리사이클 사업

**Q** PET/PE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입 후 100% 재수출하는 신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허가가 가능할까요?

**A** 베트남 법상 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였는 바, 폐 플라스틱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리사이클 업종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환경오염유발업종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외투법인이 위 업종으로 법인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특정되었다면 해당 관할기관 및 공단에 사전 문의하여 이에 따른 지침을 받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11-10)

**상담사례 — 85** 저온 창고 운영

**Q** 저온창고 건설 시 허가 가능한지 여부 및 창고업의 경우 산업용 전기효율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문의

**A** 창고업의 경우 2007. 1. 베트남 정부가 비준한 WTO 양허안에 의해 2014년부터 외투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창고업에 대한 특별한 허가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설립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문 법무법인 의견). 일반적인 설립 절차를 짧게 설명드리면 해당 부지 가계약→투자허가→법인등록→세무/정관자본금 등 각종 제반 절차를 거치시면 설립은 완료되며, 이후 창고건

설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저온창고 건설이 흔치 않은 케이스이다 보니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창고업의 경우만 따로 전기요금에 대해 산업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5-11-10)

### 상담사례 — 86 우선주

**Q** 한국 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이 공동 투자로 각각 49% : 51% 지분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에서 신설 법인의 모든 경영은 한국 법인이 책임진다는 상호 합의가 있다면 현지 기업에게 의사결정권이 없는 제한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로, 국내에서는 우선주가 비슷한 경우로 생각되며, 베트남에도 이와 유사한 주식이 있는지, 있다면 최초 합작 법인 시 이 주식을 받는 당사자가 현지 법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지 문의 드립니다.

**A** 베트남에도 우선주가 있습니다. 2015. 7. 1. 시행 기업법의 해당 부분(아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Article 113. Types of shares

1. A joint stock company must have ordinary shares. Owners of ordinary shares are ordinary shareholders.
2. In addition to ordinary shares, a joint stock company may have preference shares. Owners of preference shares are called preference shareholders. Preference shares must be of the following types: a/ Voting preference shares; b/ Dividend preference shares; c/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d/ Other preference shares provided in the company charter.
3. Only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founding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hold voting preference shares. The voting preference of founding shareholders must be valid for only 3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of the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company. After that period, voting preference shares of founding shareholders shall be converted into ordinary shares.
4. Persons entitled to purchase dividend preference shares,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and other preference shares shall be provided in the company charter or decid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5. Each share of the same type must entitle its holder to the same rights, obligations and interests.
6. Ordinary shares may not be converted into preference shares. Preference shares may be converted into ordinary shares pursuan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요약하면, 귀사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 시 위 필요에 따라 의결우선주/배당우선주/상환우선주/혹은정관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한편 의결우선주는 창립 주주만이 보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결우선주는 3년 동안만 인정되며 이후에는 일반주로 전환 됩니다. 또한 주식을 받는 당사자의 국적은 현지법인/한국법인이든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합작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투자법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번 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015-11-16)

**상담사례 — 87** 건설업(하청)의 설립 형태

**Q**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 및 하청 관계 문의

**A**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는 건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오피스(PO) 형태로 설립한 후 참여 가능하며, 업무 종료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혹은 독립법인 설립 방법도 있습니다. (2015-12-15)

**상담사례 — 88** 공단사업체의 지분 인수

**Q** 현지 기업(공단 운영)의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한 법적 장애 요인 문의

**A** 개정 투자법에 의하면 지분을 51% 미만일 경우 투자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신규 허가는 매우 까다로운 공단조성 사업이지만 이미 투자허가를 받았으므로 ERC상 투자자 갱신 등만 요할 것으로 보이나 관청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5-12-15)

**상담사례 — 89** 현지인 명의 이용 호텔사업 시 위험성

**Q** 현지인 명의를 빌려 호텔 인수 중이나, 만약 명의 대여자가 추후 업무 지시를 따라주지 않는 경우 해결 방안

**A**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그 현지인의 소유입니다. 다만, 매도인을 상대로

이면 계약, 지분양도계약서 및 이에 대한 공증 등을 근거로 민사적 해결 방안 및 일부 형사적 방안이 있을뿐이나 근본적인 보호는 되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외투기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것을 추천합니다. (2015-12-16)

### 상담사례 — 90 영업을 위한 지사 설립

**Q** 호치민시 외곽에 섬유제조법인 두 곳을 보유 중입니다. 호치민에 영업을 담당할 지사 설립 시 대표사무소 개설이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표사무소보다는 지사가 원하시는 형태에 맞으며, 계약문제, 세무, 회계 문제에서도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사가 아니라 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지사를 설립하면 가능합니다. (2015-12-20)

### 상담사례 — 91 건설 중장비 개인 소유 가부

**Q** 베트남 내에서 개인(외국인)이 건설 중장비(예: 지게차/카고크레인)를 구매/소유할 수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승용차량에 대한 구매/소유는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건설 중장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개인이 일반 차량-오토바이 혹은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건설중장비 소유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유 목적 및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정 등을 보면 외국인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명의로 소유 및 임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2015-12-31)

IV

# 투자 절차



**상담사례 — 92** 의료기기 무역, 유통법인 설립 가부 및 절차

**Q** 의료기기 일종인 Stent를 베트남에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베트남 내 법인 설립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A** 외국인 100%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허가에 유통업 사업 분야가 없더라도 수입, 수출입 사업 부분만으로 일정 부분 해당 상품을 베트남 내에 유통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유통 상대방은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 한정됩니다.

만약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업 분야 외에 별도로 유통업 사업 분야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용기기(Stent)를 수입하여 내수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수출입 라이선스, 유통 라이선스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도 보건국(MOH)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수판매 시에도 현지법인에게 납품해야 하는 제약들이 많습니다. (2015-01-13)

**상담사례 — 93** 한국으로 채권 회수 시 절차

**Q** 베트남 투자 시 한국송금 및 채권회수 등 문의

**A** 만약 채권 회수에 관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경고장 작성 및 상대 회사와의 협상을 통한 대금 회수 업무를 위임하였고, 만약 협상이 성공적이어서 상대 회사가 이에 관한 Commitment letter를 작성하고 스스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상대회사로부터 귀사로의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협상이 아닌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하게 된다면 즉, 상대방이 직접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귀사에 해외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3자가 귀사를 대신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당 채무를 상환 받아 이를 해외 송금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법원이어야 하고, 법원 판결 및 강제 집행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해당 한국 본사의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해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업무 위임을 맡기시려는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과 베트남 내에서의 해당 미수금 회수 진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정확히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1-13)

### 상담사례 — 94 물류업종 투자 시 고려 사항

**Q** 베트남 투자 시 물류업종 투자 관련 문의

**A** WTO Commitment 규정상 2014년 1월 11일자로 운송업사업 분야가 일부분 개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송업사업 분야의 근거가 되는 규범은 WTO Commitment뿐만 아니라 베트남 상법, 운송업 관련 상법 시행령 140(Decree 140/2007/ND-CP)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운송업 서비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종 및 업태 하나하나 마다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2014년 1월부터 베트남 내 운송업 서비스 시장이 개방 되었다고는 하나, 사실 아직도 많은 관련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이 존재하므로 우선, 투자 및 운영코자 하는 업종 및 업태가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100% 지분으로 설립 가능한 분야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운송업 분야 근거 법령으로 이미 살펴보았던 시행령 140 규정을 보면, 보관 및 창고 서비스업 물품 보관과 저장 서비스를 컨테이너 보관서비스와 원자재 및 장비 보관을 위한 창고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51%의 지분제한이 있는 합작회사 형태로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WTO Commitment에 따라 올해 1월 11일부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인 지분 100%인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아닌 이동 불가능한 창고업과 관련하여 이를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창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고객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창고와 물품관리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고업으로 보아 운송업 관련 법령이 적용이 될 것이지만, 단순히 창고만 고객에게 임대하고 고객이 스스로 창고와 물품을 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이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01-13)

### 상담사례 — 95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Q** 베트남 법인설립 시 첨부서류 문의

**A** 베트남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는 ① 투자허가서 신청서 ② 기업 정관(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③ 창립 사원 명단(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④ 창립 주주 명단(주식회사 설립 시) ⑤ 합작 계약서(합작 투자 시) ⑥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시) ⑦ 재정능력확약서(별도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짐) ⑧ 사업 예비 조사(조건부 프로젝트 시) ⑨ 임대차 계약서(가계약,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⑩ 당국에 의한 법정자본투자확인(원칙은 최소자본금 없음, 일정한 법정자본금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⑪ 자격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의 경우 해당) ⑫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재정 능력 증명을 위해 필요함) ⑬ 투자자 설립 허가서 사본(투자자가 법인의 경우 해당, 본국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⑭ 법적대표 여권사본 ⑮ 모든 주주들 여권 사본(주식회사,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⑯ 위임장(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⑰ 수입자의 여권 사본(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⑱ 환경영향평가서(폐수처리규정 및 설비, 해당 업종의 경우 한함) 등이 있습니다. 단, 업종별로 다소 차이 있습니다. (2015-02-11)

### 상담사례 — 96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

**Q** 베트남 투자 시 대표자 명의 변경 문의

**A**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① 회사 상호,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② 기업의 현 법적 대리인과 대체 예정 법적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개인신분증 번호
- ③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 경우 이사회장의 성명과 서명날인 등 (2015-02-11)

### 상담사례 — 97 유통법인 진출 시 2호점 개설 관련

**Q** 베트남 투자 진출 시 유통법인 설립, 2호점 설립 절차 등 문의

**A** 유통법인의 경우 2007년 까지는 외국인 지분한도 49%, 200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지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설립이 의무사항이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업점포가 필요한 유통법인의 경우 1호점만의 설립을 허가하고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를 고려하여 차후 2호점 이상에 대하여 별도 허가 가능하며, 투자허가는 각 시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DPI)에서 주관하기는 하나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수, 투자자의 재정 능력, 시장 수요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15-03-16)

**상담사례 — 98** 요식업 외국인투자회사 진출 가부**Q** 베트남 투자 시 식품관련 산업투자 진출 방안 문의

**A** 베트남의 WTO 일정상 2015년부터 외식업종이 개방되어, 100% 외국인 지분 투자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베트남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납부 등 고려하여 진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베트남이 2007. 1. 11. 자로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WTO Commitment의 개방 스케줄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2008. 1. 1. 이전에는 49%까지 지분을 제한하였고, 2008. 1. 1.부터 2009. 1. 1. 이전까지는 지분제한은 없으나 현지인 또는 현지법인과의 합작 법인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1. 1.부터 100% 외국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랜차이즈업이 개방되었습니다. (2015-04-21)

**상담사례 — 99** 베트남 물류**Q** 베트남 투자 시 물류현황 등 절차 문의

**A** 2013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물류 연간 운송량은 10억 1,100만톤으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운송량이 7억 6,507만톤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육상운송은 대부분 도로가 편도 2차선이며 오토바이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포장도로가 많아 중량품목 운송이 제한적이며 지역마다 다른 통행세 부과 등으로 물류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베트남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인 내륙수로 운송량은 2013년 기준 1억 8,081만톤으로 2005년 대비 6,967만톤 증가하였으며, 해상·항공 운송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운송의 경우 단선, 노후화, 소요시간(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약 34시간 정도) 등으로 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04-27)

**상담사례 - 100** 제2공장 설립 시 신규법인 설립 여부

**Q** 당사는 하노이에 이미 해외법인투자업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호치민에 제2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법인번호는 같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신설되는데,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신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노이의 경우 1개 법인이 투자했지만 호치민은 당사 법인과 2개의 새로운 국내 법인이 투자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베트남 법인 주주명부상에 등재를 시켜야 맞는 것인지 궁금하며,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2공장 설립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루트를 알고 싶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국내법인 2개 업체가 함께 투자 예정인데,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호치민의 해외투자신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해외투자신고서를 호치민용으로 새로 작성하게 되면 재무제표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베트남 법인설립과 관련하여는 투자허가서(IC)를 취득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제2공장 설립의 경우도 하노이 본사의 지사나, 대표사무소가 아닌, 투자형태로 투자허가서를 취득하게 되면 법인설립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1인, 2인 등은 투자허가서에 투자자로서 명기되고, 특별히 법인이든, 개인이든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계약서 등은 필요하게 됩니다(지분율 등은 투자허가서에 명기됨).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명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등재가 기본적입니다. 투자허가서 신청시 투자자(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개인의 경우 잔고증명서 등)의 자산상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호치민시 지역에 투자허가서를 진행하면 호치민시가 관할이고, 동나이성에 투자하게 되면 동나이성이 관할입니다. (2015-05-12)

### 상담사례 - 101 물류업 현황

**Q** 베트남 투자 시 물류업종 진출 문의

**A** 2013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물류의 연간 운송량은 10억 1,100만톤으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운송량이 7억 6,507만톤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육상운송은 대부분 도로가 편도 2차선이며 오토바이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포장도로가 많아 중량품목 운송이 제한적이며 지역마다 다른 통행세 부과 등으로 물류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베트남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인 내륙수로 운송량은 2013년 기준 1억 8,081만톤으로 2005년 대비 6,967만톤 증가하였으며, 해상·항공 운송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운송의 경우 단선, 노후화, 소요시간(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약 34시간 정도) 등으로 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05-26)



### 상담사례 - 102 치과

**Q** 현재 국내에서 치과의사로 치과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여 법인 설립, 병의원 개원 등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사업투자 절차나 의원 설립에 필요한 특수한 절차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인이 운영하는 치과가 베트남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동반으로 진료하는 형태를 생각 중인데, 설립에 관계된 기관이 따로 있는지, 투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치과 설립과 관련하여 아래 법무법인 JP 홍은정 변호사(imaginaryplanet@hotmail.com)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 설립: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같이 해당 시·성의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인허가는 해당 시·성의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에서 투자허가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를 발급하나, 치과 업종 법인설립은 조건부 허가영역이기 때문에 계획 투자국에서 내부적으로 Ministry of Health 등 관련기관에서 승인절차를 밟게 되며, 법상으로는 45영업일이나 실무상으로는 3~6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정자본금은 USD200,000이고, 베트남 치과의사 최소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 ② 치과 영업 허가: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치과 영업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바, 관할기관은 해당 시·성의 Department of Health이고, 법상으로는 90일 소요되나 실무상으로는 역시 이보다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은 법상 병원 설계 및 시공, 의료장비, 인력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와 별개의 영업 허가 대표는 진료 자격증이 있는 치과의사로,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이 요구됩니다.
- ③ 외국인 치과 의사의 베트남 내 진료 자격증 취득 관련: 여기서 외국인 치과의사가 베트남에서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한 허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데, 외국인 치과의사가 베트남어 또는 진료 시 달리 사용할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모국어로 진료할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로 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치과의사의 모국어 또는 진료 시 달리 사용할 언어를 베트남어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관도 고용해야 합니다. 보통 통역관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역관은 다시 1) 베트남에서 한국어 또는 달리 진료시 사용할 언어 전공 학사학위 및 최소 전문 의대(한국에서의 전문대 수준의 과정 의미)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 베트남 국내 또는 한국 소재 전문 의대 2년 과정을 한국어 또는 달리 진료시 사용할 언어로 수료한 자 3) 최소 12개월 이상의 전문의 과정을 한국어 또는 달리 진료시 사용할 언어를 수료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학위 또는 증서들은 5년 이내에 발급 되었어야 합니다.

(2015-07-23)

**상담사례 - 103** 대표사무소 폐쇄하지 않고 법인 설립

**Q**

- ① 대표사무실을 폐쇄하지 않고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니까(즉, 대표사무실에서 법인으로 전환 여부)?
- ② 가능하다면 법인 설립 준비를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체진행 시 정부기관(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서류작성이나 일련의 준비사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③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국본사에서 한국의 관련 정부기관(국세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나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외환송금거래 시 한국은행에 신고한다든지, 베트남법인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본사에서 수주한 업무를 베트남법인에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A**
**① 대표사무소 전환**

대표사무소와 법인은 전혀 별개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법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진 고유한 법인이기 때문에 기존 대표사무소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의 의미는 ‘대표사무소를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법인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 ② 법인설립에 있어서 저희 KOTRA에서 서류 작성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베트남 현지의 회계법인/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③ 해외투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시필요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주로 한국 내 주거래 은행이 담당하게 되므로 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5-08-12)

**상담사례 - 104** 설계업체 설립 시 정관자본금 설정, 법적 대표자의 부재 시 처리

**Q**

- ① 한국본사에서 베트남법인으로 설계업무 발주서를 발행하여 베트남법인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발주서대로 설계업무도 하고 직원급여 및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자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 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다른 회사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② 투자허가서 작성 시 정관자본금을 설정한 뒤 일정기간 내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정관자본금을 좀 적은 금액으로 설정했을 때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 ③ 베트남법인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는데 30일 이상 부재 시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1) 위임장 작성 양식이 따로 있는지
  - 2) 위임장 작성 후 관련기관에 신고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3) 위임 받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지
  - 4) 만약 베트남사람(직원)에게도 위임 가능한지
- ④ 한국본사가 개인회사인데 베트남 법인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① 적법한 허가 및 세무 관련 서류만 갖춘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당수 한국 기업의 경우 세무 문제 -특히 베트남의 높은 개인 소득세- 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직원에 대해 일부 급여는 한국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베트남 현지에서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베트남 세무 당국이 해당 직원의 한국 세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인 청산이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 ② 정관자본금이 필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 1) 먼저 법인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증거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투자허가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초기 허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 2) 투자 허가를 받을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자본금이 사업에 비해 적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무법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보통 10만불 이상은 자본금으로 설정합니다.
- ③ 위임장 관련
- 1) 관련 양식은 따로 없으며, 일반적인 위임 내용 -위임인 및 수임인, 위임의 한도, 양자의 인감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 2)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시/성의 경우 별도 관리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3) 위임 받는 사람의 자격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 3) 참고로 2015. 7. 투자법/기업법 개정 이후 ‘30일 이상 부재 시’ 조항이 바뀌었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부재 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④ 네, 관계없습니다. (2015-08-19)

### 상담사례 - 105 제조업(공단 외 부지)

**Q** 근래 들어 공단이 아닌 일반 부지에 공장(제조업-자수)을 설립하려 합니다만, 외국 투자법인 허가가 나질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에 비해 일반 부지 공장 설립이 어렵겠지만 해당 지역의 투자 허가에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공단이 아닌 일반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외투 허가 주체는 공단 내의 경우 해당 공단관리위원회이며, 일반 부지 내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공단 내 설립의 경우 공단에서 투자허가서 발급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대행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그런 의미에서 투자허가를 받기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단 내/외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투자 허가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허가와 관계없이 공단 외 외투법인 설립의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없어 일반적으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힘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공단 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계약 후 계약금 반환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단 외 진출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만약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사전에 관할청에 문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토지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2015-09-01)

### 상담사례 - 106 경리장 채용 의무, 법인인감

- Q**
- ① 100% 외국인투자 법인을 설립할 때 경리장(Chief Account) 채용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설립과 동시에 즉시 경리장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 더군요.
  - ② 기업등록증명서(ERC)와 투자등록증명서(IRC) 둘 다 있어야 법인인감(Corporate seal)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등록증명서는 기존의 투자허가서로 대체된다고 해서 알 겠는데, 기업등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 ① 법상 경리장을 꼭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명은 채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경리장은 일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외투법인들은 회계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 직원을 경리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 ② 구법 IC는 개정(현행)법에서 IRC와 ERC로 분리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도 신법 기준에 의해 등록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IRC, ERC 둘 다 발급 받으신 상태에서 인감을 제작/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외투 법인 설립이 IRC, ERC를 순차적으로 발급 받는 것이고, 절차상 내부 처리 부서, 양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IC발급과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유사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업등록(ERC)이 이전에 없던 제도여서, 현행법에서 추가된 절차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2015-09-03)

### 상담사례 - 107 화장품 소매 유통업

**Q** 베트남에 신규 화장품 유통업 진출

**A** 소매 유통업은 투자법상 조건부 허가업종으로, 허가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화장품 수입 통관 시 Show room/창고 위생 안전 증명서, 수입증명서, 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 각 안전증명서 및 수입증명서는 총 80일 가량 걸립니다. 각 인증은 수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설립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품질검사는 통관 직후 신청하여야 합니다(업무일 기준 3~5일이 소요). (2015-09-25)

### 상담사례 - 108 현물출자

**Q** 베트남 호치민에 서비스센터(수리센터) 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설립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지 법인 설립 후 현금투자과 한국에서 구매한 설비(중고, 신규)에 대해 현지로 보내는데 이 또한 현물투자에 해당되어 사전에 준비하거나 신고 사항이 있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금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베트남 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사업 내용을 비롯한 사항들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로 투자허가를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설립허가를 진행 중이라 하니 이미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최종 투자허가서상 금액을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 계좌에 납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출자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물출자는 '베트남 화폐,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환, 또는 금을 제외한' 출자를 뜻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 허가 신청 단계에서 현물출자를 한다고 밝히고(설비 리스트 등 제공), 정관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사의 경우 이러한 서류가 이미 접수된 단계로

보이므로, 허가 대행 에이전트 등과 상의하셔서 현물출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를 확정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원, 주주 혹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가치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의 경우 사원 또는 창립주주 동의 하에 사원 또는 창립주주가 출자 자산의 평가를 하며, 사원 또는 창립주주가 자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경우 사원 또는 창립주주는 기업에 대하여 합의된 가치와 실제 가치 사이의 차액 및 기타 재정적인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설립 과정이 복잡해지고 출자자가 일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계 법인의 경우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부하신 후 그 자본금을 이용하여 설비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같음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2015-10-08)

### 상담사례 - 109 제조업 최소자본금

**Q** 외투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있는지 문의

**A** 제조업의 경우 유한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허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0만 달러 정도의 정관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종, 생산 품목, 공장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10-28)

### 상담사례 - 110 AEO 공인신청

**Q** 베트남 투자 관련하여 문의 - AEO 신청 절차

**A** AEO 신청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령 Circular No. 86/2013/TT-BTC에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AEO 인증을 받은 업체가 20~3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알 수 없고, 베트남 세관의 행정 처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임을 감안하셔서 넉넉하게 짐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내용이 방대하여 모든 사항을 안내해 드릴 수 없으나, 중요한 요건을 요약하여 드리면 설립한지 24개월 동안 별다른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어야 하며, 수출입규모가 직전 2년 동안 2억USD 이상(섬유, 신발, 하이테크 산업 등 일부 업종 예외)인 것 정도가 있습니다. (2015-11-24)

**상담사례 - 111** 공단/비공단 투자 차이점 및 투자인센티브

**Q** 공단/비공단 투자 차이점, 기본 투자 절차 문의

**A** 2015.7.1. 발효된 개정 투자법에 의하면 51% 지분부터 투자허가 대상입니다. 공단/비공단 투자 허가 신청 기관을 안내하자면 비공단일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야 합니다.

호치민 인근 지역의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 2년 면제, 4년 50% 감면 인센티브가 있으나, 공단 외 지역은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11-25)

**상담사례 - 112** 사출업체 설립

**Q** 베트남에서 사출(물티슈용 플라스틱 뚜껑 제작) 제조 법인 설립 시 절차 문의

**A** 일반적인 사출업체는 설립 허가가 어렵지 않으며, 허가기간은 보통 1~2달 이내로 짧습니다. 허가 절차는 공단부지 결정 후 부지가계약을 시작으로 진행하며, 이후 절차는 공단 혹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무난합니다. (2015-12-16)

**상담사례 - 113** 허가 절차대행

**Q** 삼성 협력업체로 동나이성 롯데코 공단 임대공장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투자 허가 절차 및 이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A** 공단에서 대행해 주는 투자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기본적인 투자허가서 발급 까지 대행해 주나, 일부 공단의 경우 법인장 비자 및 이후 문제까지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일부 공단은 공단 자체적인 도움 대신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를 원할 시 3,000달러 가량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12-30)

**상담사례 - 114** 제조업 인수 시 유의점

**Q** 종이박스 제조업체 설립을 원합니다. 기존 한국계 공장을 인수하면서 진행하려 하는데 유의점이 있나요?

**A**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대상 기업이 한국계 외투기업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투자허가서 상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업체의 부채 등도 같이 인수하게 되므로 토지사용권,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 등이 엄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법인의 경우 공단 외 부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꼭 하셔야합니다. 가능하면 현지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2015-12-30)



V

# 현지 경영관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1. 세무

## 상담사례 - 115 부가세

**Q** 베트남에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 수출을 목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 중인 부분이 부가세와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업체로 수출 판매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부가세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부가세를 적용하였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나마 안내 또는 참고할만한 사이트(문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베트남 부가가치세는 생산, 판매 또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외국 및 무관세지역에 대한 수출 재화 및 수출용역으로 베트남 밖/무관세지역에서 소비된 것, 해외수출용으로 가공 용역 처리된 재화 등등은 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매월 매입부가세가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을 12개월간 이월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과세당국에 부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 신청은 월/분기 단위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부가세, 관세에 대한 문의는 전문회계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5-03-17)

## 상담사례 - 116 BCC계약, 로열티

**Q** 국내 모바일 광고 플랫폼사에서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에 법인을 세우지 않고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베트남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 모델은 저희가 플랫폼(기술) 제공/서버관리/교육 및 지원 등을 맡고, 현지 업체가 실질적인 영업/마케팅/운영을 맡을 것입니다. 사업은 현지 업체의 명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업을 통한 수익은 Revenue Share 모델로 저희가 일정 %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또는 License Agreement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 저희가 부담하게 될 세율을 문의드립니다. License Agreement 하에 기술/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형식으로 하면 5%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License Royalty 10%라는 항목도 있어서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BCC를 통한 사업의 경우 세율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세율(현지업체가 내야 될 세금)보다 저희 한국 본사가 감당해야 할 세율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베트남 투자 형식중 하나인 BCC계약을 통하여 진출할 경우 운영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세금 관련인데, 이 경우 외국인 계약자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자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조직이 베트남에 없다면 베트남의 파트너가 계약자세를 베트남에 납부 후 남은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약자세 계산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간편법을 이용합니다. 외국인계약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직접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서비스의 제공일 경우 법인세율 5%, 부가세 5% 적용입니다. 로열티의 경우 법인세율만 10% 적용 받습니다. BCC는 투자형식이며 그 내용이 서비스든 로열티는 베트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쌍방이 정하면 됩니다.

한국본사 측의 문제는 이중과세 문제로 판단됩니다. 한-베 조세협정에 따라 동일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국가에 납부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동 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좀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은 전문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법인에 문의하셔서 좋은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 외국인계약자세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세액공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5-07-27)

### 상담사례 - 117 특별우대세율

**Q** 베트남 JVC와 계약 집행으로 한국에서 한국제품(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공급 시 관세는 FTA 타결에 따른 특별우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베트남 JVC와의 계약 집행을 위하여 중국에서 기계장치를 베트남에 공급 시 관세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FTA 타결에 따른 특별우대세율 및 관세를 확인하시려면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8474의 경우 관세율은 중국, 한국을 포함 0%입니다.

다른 HS code의 베트남 관세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이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language=en-US>

(2015-08-12)

### 상담사례 - 118 임대업 및 관련 세금

**Q** 베트남 임대업 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① 외국인이 임대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 ② 임대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특히,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 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업이란 건물을 사서 사무소를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A**

- ① 사무실에 대한 임대업 라이선스는 조건부 허가 분야에 속합니다. 조건부 허가 분야라 해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인 설립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관련 업종은 대부분의 다른 업종과 달리 최저자본금(200억동) 규정이 있습니다.
- ② 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구매할 때 매도자는 양도세를 냅니다. 실무상 매도자는 양도세로 매매가격의 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자는 내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세금으로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계실 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첨언하자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 대상 건물이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건물인지, 매도인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토지사용권 및 건물), 토지사용권은 완납을 하였는지, 토지에 대한 담보 관계는 어떠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5-12-01)

### 상담사례 - 119 부가세 환급

**Q** 저희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현물투자물품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베트남세관에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법인의 경우 매출발생은 없는 상황이며, 이번에 지불한 부가세의 경우 언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부과세 환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부과세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하신 법인이 신규투자법인으로 판단하고 말씀드리면, 법인이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투자로부터 발생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환급금액이 발생하거나 환급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급 신청을 하지 마시고 차월로 이월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015-12-28)

## 2. 외환/금융

### 상담사례 - 120 법인설립 전 자본금 인정 요건

**Q** 베트남 투자 시 법인설립 전 자본금 인정 요건 문의

**A** 베트남 법인 설립 시 초기 정관 자본금과 투자 자본금을 합하면 총 투자 자본금이 결정됩니다. 투자 허가서상 표기가 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금 납부, 출자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초기 설립 시 미리 개설한 베트남 내 역외계좌로 입금한 후 향후 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015-04-21)

### 상담사례 - 121 해외송금

**Q** 외국투자기업은 외환수취 금액이 이윤 배당금 등의 외환지출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코트라 베트남 자료 참고). 베트남 기업과 한국기업의 합작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의 궁금증입니다. 배당금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으로의 송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베트남 투자법 제9조에서는 자본과 자산에 대한 해외 송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a)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
  - b) 기술, 서비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따라 받은 보수
  - c)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 d) 투자 자본 및 투자 청산 후의 자금
  - e)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타 현금 및 자산
- ②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각종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③ 상기 자금의 송금은 투자자가 선택한 상업은행(시중은행)이 제시한 환율에 따른 국제통용 통화로 이루어진다.
- ④ 투자활동 관련 자금의 해외 송금 절차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015-06-05)

### 상담사례 - 122 본 · 지사간 자금대여 약정

**Q** 당사에서 해외건설법인 설립 시 본사와 베트남 법인간 자금대여약정 체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에서 본사로 대여자금 상환 시 한국으로의 송금상의 규제는 없나요? 또한 베트남 법인에서 본사 명의로 설립한 Project Management Office(현장)로 자금대여약정 체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Project Management Office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대여자금을 상환하는 것에 규제가 없나요? 해외건설법인 설립 시 본사의 Track records를 근거로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베트남 내 최고등급의 건설면허를 발급받아 현지건설법인 개시 초기부터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자금대여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부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고문(법무법인 JP 이수정 변호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관자본금과 투자 자본금

베트남에서는 법인설립 시 반드시 정관자본금 및 총 투자자본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는 자기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수주식의 전액(정관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유한회사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의 경우에도 정관자본금을 설정하면 이를 반드시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일정기간의 실제 투입 자금을 고려해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 · 간접 투자활동을 위한 베트남 동,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 및 기타 합법적 자산’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투자허가서에는 통상 정관자본금 및 합법적 자산에는 채권, 부채 또는 기타 형태의 채권도 포함 → 투자자본금은 부채로도 조달 가능. 타인자본을 의미, 타인자본 조달은 강제되지 않음. 중장기 대출의 경우 CCA 계좌 이용

#### □ 투자자본금의 해외 대출

① 대출 절차: Circular 09/2004/TT-NHNN 에서는 투자자본금의 해외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Requirements on, and procedures for, foreign loan registration: a) For short-term loans. Enterprises must not register them with the State Bank but the short-term foreign loan contracts must comply with the conditions mentioned in Section I, Chapter II of this Circular. b) For medium-, long-term loans: Based on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Section II, Chapter II of this Circular, enterprises may sign foreign loan contracts. Within 30 working days as from the date of signing foreign loan contracts and before withdrawing capital, the enterprises must register foreign loans and loan repayment with the State Bank.

대출은 중앙은행에 따로 등록이 필요 없으나(Circular 09/2004/TT-NHNN 제20항 제a호), 중장

기 대출의 경우 대출기업은 자본 출금 전, 대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해외 대출, 대출 상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Circular 09/2004/TT-NHNN 제20항 제b호).

- ② 대출 가능 금액: Circular 12/2014/TT-NHNN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11 1. Conditions for short-term foreign loans a) The borrower is not permitted borrowing short-term loan for purposes of using medium and long-term loan; b) If the borrower is the state enterprise, short-term foreign loan of that state enterprise must be approved, appraised and accepted by state competent agency according to the law on classification of rights,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of the state owners for state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 invested in state enterprise. 2. Condi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loan: a) For the borrower being state enterprise, medium and long-term foreign loan of state enterprises must be approved, appraised and accepted by state competent agency according to the law on classification of rights,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of the state owners for state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 invested in state enterprise. b) For the borrower being rather than state enterprise: (i) For borrowers having projects that use foreign loan that was granted the investment certificate, the borrowers' medium-, long-term loan balances (including domestic loan balance) must be with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investment capital and contributed capital in the investment certificate; (ii) For the borrower borrowing foreign loan to use for meeting production and business scheme, investment project that is not granted the investment certificate, borrower's medium-, long-term loan balances (including domestic loan balance) of the borrower must be within the total demand of loan in the production and business scheme, investment project approved by competent agencies as stipulated.

대출 가능 금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Circular 12/2014/TT-NHNN 제11조 제1항), 중장기 대출의 경우 IC상 총 투자자본과 납입자본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 이상을 대출할 수는 없습니다(Circular 12-2014-TT-NHNN 제11조 제2항).

- ③ 해외 대출 및 해외 상황 등록 서류: Circular 09/2004/TT-NHNN에서는 해외 대출 및 해외 상황 등록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 A dossier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for enterprises being other than credit institutions shall include: a) An application for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made according to a set form); b) The notarized copies of the establishment decisio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the investment license; or the operation permit, other relevant documents issued by competent bodies; c) The notarized copies of documents of authorities competent to approve investment projects or production and business schemes (exclud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d) The notarized copy of the competent agency's decision permitting the enterprise to issue

bonds overseas (in case where enterprises issue bonds overseas); e) The copy and Vietnamese version of the signed foreign loan contract (with certification by the enterprises's head)

대출 및 대출 상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류(Circular 09/2004/TT-NHNN 제25조 제a항), 투자증명서의 공증된 사본(Circular 09/2004/TT-NHNN 제25조 제b항), 대출 계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본입니다(Circular 09/2004/TT-NHNN 제25조 제e항).

- ④ 해외 대출의 상환: Circular 09/2004/TT-NHNN에서는 해외 대출의 상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When making capital withdrawal, loan repayment via licensed banks, enterprise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regulations: b) Upon loan repayment: Enterprises must produce to the licensed banks where they make the loan repayment the following documents: - The originals of the State Banks'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loan repayment registration (in case of medium-, long-term loans); - The originals of the signed (certified by enterprises' heads) of documents evidencing the capital withdrawal under (short-, medium-, long-term) foreign loan contract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and dossiers when so requested by the licensed banks. Where enterprises have withdrawn capital via licensed bank but do not make loan repayment via licensed bank within 5 working days as from the date of making the loan repayment, the enterprises must notify in writing the licensed bank where they have withdrawn capital of the loan repayment date and the loan amounts paid under the foreign loan contracts.

34. The licensed bank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regulations when effecting capital withdrawals and foreign loan repayments for enterprises; b) For medium-, long-term loans: - To check and compare documents produced by enterprises so as to ensure to properly implement the loan transactions of enterprises, already registered with State Bank; - To transfer money for foreign loan repayment on the basis of the State Banks's written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written certification of change registration, foreign loan repayment, the medium-, long-term loan contracts and documents evidencing the capital withdrawal and debt repayment, which are produced by enterprises; - To keep the copies of the State Bank'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and copies of other necessary documents and dossiers, which are produced by enterprises; - To make statistics on capital withdrawal, loan repayment transactions already conducted and the balance of each medium-, long-term loan already guaranteed or serviced by banks. c) The licensed banks shall not disburse capital, transfer money for foreign loan repayment at enterprises' requests in the following cases: - The enterprises' medium-, long-term loans are not evidenced with the State Bank'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or change registration; or foreign loan



contracts contain details not in compliance with Vietnam's law provisions. - The enterprises' short-term loan contracts are extended but the total time of the extension duration and the short-term loan term exceeds on year without the State Bank'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기업은 은행에 중앙은행의 해외 대출 승인서(중장기 대출의 경우에만), 대출 계약서, 금원 인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Circular 09/2004/TT-NHNN 제33조 제b항). 서류들을 확인하고 중앙은행의 등록 증명서, 변경 증명서, 대출 상환 증명서, 대출 계약서, 자금 출금과 부채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초로 외국 대출 상환을 위한 송금을 해야 합니다(Circular 09/2004/TT-NHNN 제34조 제b항). 대출이 중앙은행의 등록 증명서, 대출 상환 등록증 혹은 변경 증명서로 증명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상환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Circular 09/2004/TT-NHNN 제34조 제c항).

(2015-11-16)

### 3. 매각/청산

#### 상담사례 - 123 청산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Q** 베트남 청산 및 국내복귀지원제도(U턴 제도) 적용 대상 문의

**A** 베트남 청산 관련 기본 규정, 자산양수도 방식, M&A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과거 2년 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2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 ② 해외-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최대 지분보유자(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 ③ 해외사업장 철수: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혹은 생산량을 축소할 것(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유지도 가능)
- ④ 해외-신·증설 국내사업장 동일 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 신설 혹은 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2015-04-27)

**상담사례 - 124**    **청산방법**

**Q** 베트남 투자 시 청산 방법 등 상담

**A** 베트남 투자 시 투자허가서상 투자금액 이행, 업종변경이 가능함. 업종변경은 투자법상 인정되며 투자계획서를 추가하여 투자형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승인 확인서 등을 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신청서, 사원총회, 기업 소유주, 주주총회, 합의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M&A 방식의 경우 합병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작계약의 경우 변경된 계약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5-04-27)

**상담사례 - 125**    **청산, 영업정지**

**Q** 현지 법인 청산 절차 진행 중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본사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서라도 청산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이 부족하여 더 이상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법인을 영업정지만 시켜두고 청산까지는 안 한 상태로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 이후 베트남에서의 추가 사업 대비하여 기존 법인은 영업정지만 시켜두고 서류상으로는 법인을 유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후 서류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추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위하여 활용할 때 사업영역을 추가하는 것은 신규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영업정지만 시켜둔 상태라면(청산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상태) 해당 법인(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의 주주 또는 법인대표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주주나 법인대표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당분간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산 없이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영업정지 후 법인 유지) 필요한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업을 정지된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 또는 영업정지 후 법인유지가 가능한 기간 한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영업정지 시(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되므로 청산 포함) 특히 관세,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인장이 출국금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의견에 의하면 통상 투자자는 출국금지 되지 않는다 하나, 법상으로는 출국금지 여지가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12-30)



**2016**

I

# 투자 기초지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상담사례 — 3 농장설립

**Q** 농장 법인 설립을 해야 할 경우 자격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① 투자자금이 최소 얼마인지?
- ② 투자자의 조건이 있는지? 한국영농법인과 연계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 ③ 토지를 개인적으로 조사하려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① 먼저 투자자금에 대하여는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허가관청인 DPI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른 자본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② 법인설립(사업자등록)에 대한 인적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해당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가 몇 명인지는 별다른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 ③ 토지조사 또한 메콩 지역 농업 용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사 대행 업체 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각 성정부에 개설되어 있는 투자진흥청(성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나 보통 IPC 혹은 ITPC로 불립니다)에 문의하시고, 이에 토지물색부터 투자절차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2016-11-30)

### 상담사례 — 4 현물출자 납입기한 초과

**Q** 현금 출자는 기한 내 납입하였으나, 현물 출자 납입 기한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 드립니다.

**A** 정관자본금 기한 내(90일) 미납의 경우 기업법(2014) 제48조(2인 이상 유한회사), 72조(1인 유한회사)에서 해당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납입기한(90일) 이내 납입하지 못한 경우 회사 설립 형태에 따라 60일 혹은 30일 이내 감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1인 유한회사 형태라면,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미납입 분에 대하여(법문상은) 투자자가 미납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 패널티는 관련법상 한화 100~200만원 수준의 과태료이며, 호치민시 내 유사 케이스에서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법령과 같이 감자를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현물 출자의 경우 현금 출자와 같이 자본금계좌(dica)에 납입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설립 90일이 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통관 과정에서 세세하게 확인한다면 90일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약간이나마 존재하며, 법상으로는 귀사의 경우에도 감자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6-11-22)

### 상담사례 — 5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방

**Q**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하려는 제조 업체입니다. 이번 출장 중에 코트라에 내방하고 싶은데 내방 상담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투자 관련을 위해 저희 무역관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 저희 KOTRA의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사이트 ‘베트남 국가정보’를 미리 보시고 방문하시면, 조금 더 깊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6-11-18)

### 상담사례 — 6 제조업

**Q** 베트남의 건설기계 임대 및 매매, 기계제조업 등을 허가 받기 위해 공단지역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가계약서 등이 필요한가요?

**A** 공단 가계약서는 법인설립 신청에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에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공단 외에는 허가가 극히 까다롭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WTO 양허안상 단순 임대는 불가능하며 OPERATOR와 같이 임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2016-10-12)

### 상담사례 — 7 제조업체의 법적 최저자본금, 장기차입금 비율 제한

**Q** 제조업 최저자본금 및 장기차입금 비율 제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일반 제조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저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차입금도 마찬가지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비율이 과도할 경우 실무상 투자허가가 나지 않거나, 차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본·지사간 과도한 이자 지급건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10-31)

### 상담사례 — 8 재무이사 채용

**Q** 베트남에서 재무이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 시의 절차와 이사를 채용하되, 한국에 상주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사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채용신고 및 노동허가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채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 상주 시 원칙적으로 베트남 내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청에 등록된 사실과 충돌되어 세무적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2016-9-28)

### 상담사례 — 9 로컬기업 투자

**Q**

- ① 로컬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절차
- ② 지분 구조전환 및 자본금 납입 방법과 시간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A**

- ① 로컬기업 설립 시 이용되는 투자자 보호방법으로는 이면 계약, 지분양수도계약 사전 작성, 법인장 한국인 채용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도 완벽한 보호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 ② 설립 이후 9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단, 기존 법인에 투자 시는 90일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기업법상 외국인 지분율 51% 미만은 로컬법인과 같이 취급되어 법령상은 IRC발급 의무가 없고 ERC상 투자자 정보만 갱신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IRC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6-8-31)

### 상담사례 — 10 지분투자, 양도

**Q** 현재 공단 입주 후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 건립하려 하는데, 회사 설립 후 타회사에서 지분 투자, 양도가 가능한가요?

**A** 건설 중이라고 하시니 이미 유한회사로 법인설립 절차는 마무리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타회사(혹은 개인투자자)에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자를 통한 방법도 있고, 기존 지분을 인수하



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RC(법인등록증)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관할기관은 위치하신 성의 관할 공단관리위원회입니다. (2016-8-10)

### 상담사례 — 11 교육컨텐츠 수출 절차

**Q** 베트남 현지에 오프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를 공급(수출)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일반 무역과 달리 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출판물의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서는 출판물에 대한 교육부 인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 사업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의 경우 베트남 현지 기업이 처리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교육관련 사업, 출판관련 사업이 가장 허가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이며, 베트남 현지 기업 중에서도 허가받을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6-7-6)

### 상담사례 — 12 임가공

**Q** 한국에서 모든 재료를 보낸 후 베트남에서 임가공 하고 다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어떤 진출 형태를 취해야 할지, 관련 물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① 직접 임가공을 수행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이 필수이며, 법인 설립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파트너사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② 관세의 경우 임가공 신고를 한 후 관세 및 부가세 유예/환급 방법이 있으며, 수출가공기업을 설립하여 무관세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통관 물류를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베트남 내 물류업체를 통해 업무 대행을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16-6-5)

### 상담사례 — 13 노사분규

**Q** 베트남 호치민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할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노사분규 문제에 있어서 딱 잘라 말씀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는 달리 노동쟁의가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근로자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이며, 따라서 대부분 불법파업입니다. 노동쟁의 양태를 보면 대부분 비폭력적이고, 하루 이틀 정도 작업을 거부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대개 합의되는 즉시 복귀하여 정상 운영이 됩니다. 빈도수에 관하여는 2012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5-23)

### 상담사례 — 14 공단 외 부지

**Q** 공단 외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공단 외 지역 설립의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공장부지일 것, 적법한 임대인(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에게 임대했을 것, 추후 적합한 토지사용권 획득 가능한 곳일 것(미리 인민위원회 등에 확인)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법인설립이 허가되더라도 허가기간이 3~5년 정도로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치민시 인근 지역은 베트남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공단 내 설립을 유도하고 있고, 각종 인프라나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공단 내에 설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16-4-28)

### 상담사례 — 15 조건부허가업종의 의미

**Q** 베트남 외자 투자 시 IT 업종과 같은 '조건부 허가업종'의 경우 설립 과정에서 시간 등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부 허가업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A** 조건부 허가업종(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은 투자법상 개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현행 투자법(영문 번역본)을 참고 바랍니다.

현행 투자법은 투자법 부록에 조건부업종 리스트가 있습니다.

□ Article 7.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1.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are sectors and trades in which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must meet certain conditions for the reason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social order and safety, social ethics or community well-being.
2. The list of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is provided in Appendix 4 to this Law.
3. Condi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in the sectors and trades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shall be prescribed in laws, ordinances, decrees and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People's Councils and People's Committees of all levels and other agencies, organizations and persons may not promulgate regulations on business investment conditions.
4. Business investment conditions shall be prescribed in conformity with the objective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nd ensure publicity, transparency and objectiveness, and save time and compliance costs for investors.
5.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and business investment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sectors and trades shall be published on the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portal. (2016-4-12)

상담사례 — 16 공장 유휴 토지에 부동산 임대업

**Q** 베트남 법인(공장)에 유휴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려 합니다. 공단 사업도 가능할까요?

**A** 해당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사업법에 따른 부동산임대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는 통상 추가로 200억동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허가도 까다롭습니다. 만약 공단을 설립 하시려면 공단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는 수상허가 프로젝트에 속하고, 허가가 극히 까다롭습니다. (2016-4-2)

### 상담사례 — 17 소규모 제조업 라이선스 특수성 여부 및 공장 임대료

**Q** 베트남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설립하려 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임대 공단 등 기존 제조업체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A**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반 제조업체와의 허가 차이가 없습니다.

호치민시 인근 임대공단의 경우 대부분 1000㎡ 단위로 임대하며, 가격은 \$2.5~4.5/㎡/월 정도로, 이 임대료는 임대 후 5~10년 후, 사실상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수준이므로 사업성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단 형태는 전문 임대공단부터 일반 공단에 소규모로 부속된 형태, 그리고 일부 한국 기업이 자사 건물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기존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및 해당 토지에 적법한 외투허가가 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6-2-29)

### 상담사례 — 18 호치민 근교 투자환경

**Q** 호치민 근교 산업단지에 제조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① 호치민 인근의 지가 및 건축비
- ② 산업용 전력비
- ③ 임금 수준
- ④ 근교 항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① 지가 및 건축비: 지가(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사용권 비용 기준)는 호치민 시내 ㎡당 \$100~250, 동나이성 \$60~100, 빈증성 \$50~80선 입니다. 가격이 공단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귀사가 필요하신 인프라(물류, 거리 등)를 고려하시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건축비 또한 천차만별이나 대략 ㎡당 \$150선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부 산업/공단의 경우 지반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비용).

② 전력비는 전력공사(EVN)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호치민시 인근은 대부분 최저임금 1급지로, 월 최저임금 350만동이 적용됩니다. 이에 각종 수당, 3대 보험료 등을 합하면 사업자 부담은 생산직 근로자당 최소 월 \$250 이상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호치민시 근교 지역은 대부분 호치민시 Cat Lai항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단에서 1~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2016-2-18)

**상담사례 — 19** IT인력 평균 임금

**Q** 베트남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 문의

**A**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베트남 정부, 베트남 협회)는 없지만,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표한 베트남 근로자 평균임금 통계를 통해 대략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IT 근무자가 주로 근무하는 도심지역의 경우 2015년 평균 5.5백만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글로벌 HR기업인 ADECCO가 발표한 'Vietnam Salary Guide 2015'을 보자면 7~10년의 경력을 가진 IT인력의 경우 최소 1,400 USD~최대 3,000 USD를 받고 있습니다. (2016-1-22)

II

# 투자 환경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상담사례 — 20 투자환경

**Q** 베트남에 투자진출을 계획 중입니다. 베트남의 기후, 온도, 강수량, 지반, 산업공단, 공단의 우대조건 및 전력 인프라 시설 등을 문의 드립니다.

**A** 호치민 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4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합니다. 우기(5~10월) 시에는 하루 30분 정도의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입니다. 호치민은 연중 30℃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지반: 호치민시 및 인근 지역의 경우 주요 산업 단지는 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롱안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 호치민시와 롱안성의 경우 지반이 약한 경우가 많아 공장 건설 시 별도의 지반보강공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단별, 혹은 업종별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동나이성 및 빈증성의 경우 대부분 지반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산업공단: 산업공단 목록 및 대략의 가격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공단 입주 시의 경우 신규 투자 시 법인세 우대(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하이테크 및 지원산업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인세 혜택(4년 면제, 9년 50% 감면)이 있으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인증이 힘든 편입니다. 호치민 인근 지역 전력인프라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2016-2-26)

### 상담사례 — 21 호치민(남부), 다낭(중부) 비교

**Q** 호치민, 다낭 2곳을 공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 합니다.

- ① 호치민, 다낭 지역의 공장부지 평당 평균 매매가 및 임대료
- ② 호치민, 하노이 공인 평균 월 인건비

**A**

- ① 매매가 및 임대료: 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사인 및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빌리게 되는데, 이를 '토지사용권'이라 하며 아래 사항은 토지사용권 취득 비용입니다.

호치민 시 인근지역 공단의 경우, 호치민 시내 \$100~\$250, 동나이성 \$60~100, 빈중성 \$50~80으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하노이 지역 주요 산업공단의 경우 호치민시 인근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낭 지역(다낭시, 광남성, 광아이성)의 경우 \$10~\$2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다양합니다(모두 m<sup>2</sup> 기준, 토지사용권 기간 약 35~45년 정도 기준).

- ② 인건비의 경우 호치민 시 및 하노이 시 인근 주요 산업공단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1급지입니다. 1급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50만동이며, 이에 각종 수당 및 3대 보험료(22%) 등을 합하면 사업자 부담은 근로자 인당 월 약 250달러 정도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호치민/하노이시 인근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2, 3급지 지역이며, 다낭 인근 지역의 경우 최저급지인 4급지 지역도 있습니다. 대략 급지당 15% 정도 임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단,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물류 등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6-2-17)

## 상담사례 — 22 기업신용조사

**Q** 베트남 기업을 신용조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베트남 현지 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운영 중인 CIC를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CIC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면

- 1) 기본 기업조회는 31만동(베트남어 버전), 38만동(영어버전)
- 2) 기본 기업조회 + 1년간 재무상태는 63만동(베트남어 버전), 76만동(영어 버전)
- 3) 기본 기업조회 + 2년간 재무상태는 73만동(베트남어 버전), 89만동(영어 버전)
- 4) 기본 기업조회 + 3년간 재무상태는 84만동(베트남어 버전), 100만동(영어 버전)

모두 VAT포함입니다. 2015년 기준이며 2016년에는 서비스요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6-13)



Ⅲ

# 투자 유치제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상담사례 — 23** 제조업 공단 입주 필수적인지

**Q** 실내화, 목 배계 등 사출 제조업체의 베트남 공단 입주 여부

**A** 현재 호치민시 인근 지역(호치민 중심가에서 2시간 이내 거리)은 공단 내의 입주가 필수적입니다. 기타 지방성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공단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12-29)

**상담사례 — 24** 유통/창고업

**Q** 유통법인/보세창고 설립 가부 문의

**A** 유통 및 창고업의 경우 조건부 허가업종이나 기본적인 사업요건만 갖춘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법률적 제한은 없으나, 세관 인증 등 문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12-29)

**상담사례 — 25** 분쟁해결(유치권, 가압류)

**Q** 신규 건물 건설 중 기성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와 대금 결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결 방안이 있는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분쟁해결은 계약서가 우선이며, 해당 업체 건설계약서상 분쟁 해결은 베트남 법원입니다. 베트남에도 한국과 유사한 유치권이 있으며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귀사의 경우 점유가 일부 이전된 상황으로 유치권 행사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제도는 있으나, 가압류 행사가 반드시 소송을 전제로 하고, 담보 또한 현금 담보만을 인정하므로 사실상 실행하기는 힘듭니다. (2016-12-29)

**상담사례 — 26 전자상거래(유통업), 법인장 국적**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규제가 있나요?(저희는 패션, 잡화만 취급하고자 합니다)
- ② 전자상거래는 도, 소매에 포함되나요?
- ③ 100%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시 설립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④ 수출입 및 도소매는 법인 설립 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⑤ 현지 COD 사업을 외국인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 ⑥ 현지인을 법인장(CEO)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위의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나요?

**A**

- ①, ② 전자상거래도 유통업종에 들어가며, 베트남 투자법은 유통업에 대해 '조건부허가업종'으로 분류, 허가관청에 어느 정도재량이 있습니다. 호치민시 기준으로 허가 자체는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단, 외국인투자회사는 유통업종 외 HS코드 4자리까지 특정해야 하므로 다루는 품목이 많아 진다면 그에 따라 허가가 번거로워 질 수는 있습니다.
- ③ 최근에는 접수 후 투자허가를 받기 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 ④ 허가관청(DPI)에서 내부적으로 산업부(MOIT) 의견을 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 외에 2016년부터는 법인설립 시 취득하게 되는 투자허가서/법인등록증(IRC/ERC) 외에도 일종의 사후 라이선스인, 별도의 유통업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후 유통업라이센스는, 이미 법인설립 과정에서 MOIT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단순 등록에 가까운 형식상 절차로 파악됩니다.
- ⑤ 법령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금융 관련 신규허가가 잘 나오지 않으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⑥ 법인장 국적과, 법인이 외투법인인지 아닌지는 관계 없습니다. (2016-12-27)

**상담사례 — 27 현지 파트너에게 사업 위임**

**Q**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와 사업 위임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① 비거주자인 당사가 베트남 영내에서 당사 명의(상호)로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
- ② 비거주자인 당사가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에게 영업 등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업의 권한 주체로서 사업 관련 재산에 대한 권리(재산권)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③ 비거주자인 당사와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중재하는 사법기관명은 무엇인지?

**A**

- ① 가능합니다.
- ②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상표권 등은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에 관하여는 귀사가 에이전트보다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혹 에이전트 이름으로 먼저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빼앗긴 상호/상표를 되돌려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른 면으로, 업무 단순 위임은 특별한 조건 없이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명의를 사용하는 로열티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손해 배상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국제재판 관할은 거래 내용,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간단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1. 계약 시 분쟁해결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해당 합의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법원을 믿을 수 없는 경우 베트남 중재원, 혹은 심지어 대한민국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 싱가포르중재원 등도 가능합니다.)
  2. 합의가 없었고, 일반적인 케이스(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시, 만약 대한민국법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판결 후 최종적으로 집행을 위해 베트남법원의 집행판결을 다시 득해야 하므로, 결국 베트남법원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12-26)

**상담사례 — 28** 의료설비

**Q** 현재 베트남 내 합작회사로 해외법인을 낸 상태입니다. 베트남법인에서 X-RAY 검사기 관련하여 제조, 판매,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방사선협회에서 X-RAY 등 판매 제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X-RAY의 제조, 판매, 수출에 대한 인허가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X-RAY 제조의 경우 의료설비/방사선 관련 서비스 등이 모두 투자법상 조건부허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업종 설립에 보건부 확인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증 조건에 대해서는 호치민무역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12-9)

상담사례 — 29 기업법

**Q** 베트남 기업법 77조에 주주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 기업법 84조에 등록 후 90 이내 미납 시 주주 권리를 상실하며, 베트남 기업법 157조에 최소 주주 수 결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인이 해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상기 법 조항에 따라 당사만 자본금을 납입하고, 현지 합작투자가가 자본금을 미납하였으므로 해당 현지 법인의 해산이 필요하거나 자동 해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기업법의 경우 2015년 7월 시행된 최신 기업법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와 같이 현행 기업법에서는 정관자본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즉, 주식회사의 경우 매입 등록된 주식을 결제하지 않았을 때)

- a) 미납입 주주는 더 이상 주식 매입권 양도가 불가능하고,
- b) 일부 납입 주주는 총 납입에 비례하여 권리를 가지며,
- c) 미판매 주식은 이사회가 판매권을 갖는다, 라고 하며,
- d) 마지막으로 나머지 미납 금액 처리는 총 결제 주식수의 액면가액으로 정관자본금을 변경등록(즉, 감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구 기업법 157조의 최소 지분권자 결원 해산 부분도 변경되어, 신법에서는 '법상 최소 사원 결원 상태에서 기업유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변경되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한국 상법과는 달리 1인 혹은 2인 주식회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3인 이상의 주주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기한까지 미납한 주주가 있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새로운 주주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1인 유한회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업종이 베트남표준업종분류기준(VSIC) 4651(컴퓨터 등 유통)만 있다면,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즉, 이 경우 귀사 지분만 남겨놓고 1인 유한회사 전환도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물론, 나머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관할 DPI가 신청을 받아줄지는 의문이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12-8)

상담사례 — 30 합작회사 파트너의 자본금 미납

**Q** 조인트 벤처 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현지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 자사와 함께 현지인 2명이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자사에서 45%를 납입하고 현지인이 추후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① 자본금 납입까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② 정상적으로 납입이 안된 경우 법인 지위를 상실하는지, 독자법인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① 자본금 납입 기한관련: 자본금의 납입 기한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원칙적으로 법인등록증(ERC)발급일 기준] 90일까지입니다.
- ② 미납입 시 처리: 자본금을 위 90일 이내 납입하지 못한 경우 미납한 지분권자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기간부터 60일 이내 이미 출자한 자본금 기준으로 사원의 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즉, 사실상 감자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법문상 법인이 그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베트남 기업법 48조). 다만, 귀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지분을 조건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납입한 사원만을 기준으로 지분이 조정된다면, 사실상 정해진 지분율을 초과하여 법인이 설립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은 법상 미비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관할 DPI의 재량 및 협의에 달려있습니다. (2016-12-7)

**상담사례 — 31** 여행사 세무처리

**Q**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권업무를 할 경우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항공권 발급 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베트남 내 법인설립을 한다면 당연히 세무처리가 가능하며, 설립된 법인과 항공사와의 비용 처리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2016-11-30)

**상담사례 — 32** 국제학교 설립

**Q** 호치민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계로서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 제한은 없지만, 호치민 시내 국제학교 난립의 이유로 실제 허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호치민에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설립 시 사업성이 나오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A**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투자법(2014)상 조건부허가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73/2012/ND-CP)에 허가 요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허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교육관련 사업허가 조건이 극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고, 위 법령상 조건 이외에도 입지, 투자금, 교육 대상 등 많은 부분이 허가 가부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교육 카테고리 중 가장 쉽다고 알려진 사업이 short-term institute인데, 이 경우도 허가(법인설립 이후 교육부 서브 라이선스 포함)에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조언드립니다. (2016-11-22)

**상담사례 — 33** 수출입보험 여부

**Q** 한국 본사의 경우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등 수출기업으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제품 대부분이 수출될 예정이므로 베트남 내에서 상기와 같은 수출보험제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베트남에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공 수출입 보험기관이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험적인 제도를 운용하였다가 최근에는 적극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 기관(COFACE 등)을 이용하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11-5)

**상담사례 — 34** 레저스포츠업

**Q**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A** 말씀하신 업종의 경우 베트남의 WTO 양허안/한베 FTA/베트남 국내법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WTO 양허안상 유사 규정이라면 "Entertainment service"가 있는데, 이 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즉, 반드시 합작 법인을 설립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허가 여부는 베트남 허가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허가를 받으실 각 시/성 관할 관청인 기획투자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별도 문의를 거쳐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현지 법무법인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6-10-12)

### 상담사례 — 35 유한회사 전환

**Q** 베트남에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는데, 1) 설립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2) 설립된 1인 유한회사를 다수의 유한회사로 변경하는데 있어 절차, 절차별 필요서류, 제출처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A** 먼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는 기업법 제196조를 따르게 됩니다. 업종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베트남 주식회사는 1인 주식회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주 3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9-29)

### 상담사례 — 36 상장기업 공시정보 조회

**Q** 베트남 상장기업 공시 정보 조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에는 한국과 같은 공식적인 전자공시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가. 호치민증권거래소(HSX) 혹은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상장된 회사 해당기업은 반드시 연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인 [www.hsx.vn](http://www.hsx.vn), [www.hnx.vn](http://www.hnx.v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혹은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공개(IPO) 회사

이외의 경우에도 베트남 중앙은행(SBV) 산하 기관인 국가신용정보센터(NCIC, [www.cic.net.vn](http://www.cic.net.vn))에서 기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NCIC에서 모든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NCIC에 미리 요청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16-9-29)

### 상담사례 — 37 농약 제조/유통업

**Q**

① 농약 제조법인 혹은 유통법인의 설립 방법 및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② 현지 농약제조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절차 및 주의할 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 ③ 농약 유통 등록 시 대표사무소가 법적 지위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 ① 농약 제조법인 혹은 유통법인의 설립 방법 및 기간 안내: 대략 한달~세달 정도이며 업종별, 지역별로 다릅니다.
- ② 현지 농약제조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절차 및 주의할 점으로는 베트남 특유의 업종 삭제, 실시 시 유의점 등이 있습니다.
- ③ 농약 유통 등록 시 대표사무소가 법적 지위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9-28)

**상담사례 — 38** 약국 투자 가부

**Q**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내 약품 유통은 외국인에게 불허된 사업 영역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 존재하는 외국인 운영 약국들은 베트남 국적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합작, 혹은 단순 외국인이 운영하고 투자자는 베트남인인 경우로 추측됩니다.  
(2016-9-28)

**상담사례 — 39** 화장품

**Q** 당사는 베트남 수입 업체와 화장품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려고 하면 화장품 인허가 및 제품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① 베트남에서 수입 화장품을 수입하려고 하면,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는 모두 해당 화장품 인허가를 각각 해야 하는지요?
- ② 상기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하나의 베트남 바이어가 당사 화장품을 인허가 등록했을 경우 다른 베트남 바이어들, 즉 복수의 다른 베트남 바이어들이 동일한 화장품에 대한 인허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A

- ① ‘화장품 허가권’이란 Circular 06/2011/TT-BYT 제3조에 의거하여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단체나 개인에게 발급되는 “the number of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이하 “보고번호”라 하겠습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번호 등록은 유통업체에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며, 번호 발급은 시장에서 화장품이 유통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이것이 유통업체에게 등록된 제품을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하면, 법문상으로는 ‘보고번호’ 발급 및 사용이 통관/유통의 전제조건인데, 이 번호를 업체들 간에 share할 수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 ②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가 다 갖추어진다면 다른 바이어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2016-8-31)

## 상담사례 — 40 태양광 모듈 인증

**Q** 베트남의 태양광 모듈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A

- 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강제 인증은 없습니다. 바이어 측에서는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CE, Solar Key Mark를 선호 합니다.
- ② 강제인증에 관한 부분의 교차 확인을 원하신다면 1381 인증 표준 콜센터를 추천 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1381로 연락하시면 안내에 따라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2016-8-29)

## 상담사례 — 41 베트남 기업 인수 시 지분을 제한

**Q**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적 바탕은 2006년 한-ASEAN FTA 서비스 협정을 통해 발표된 양허표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작 및 서비스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회사의 법적 자본금 51%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11년 CJ CGV가 베트남 Megastar를 92% 지분으로 인수했습니다. CJ CGV가 베트남 기업을 높은 비율로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Megastar의 경우 미국 엔보이 미디어 그룹과 베트남 현지기업이 각각 8:2의 자본으로 출자한 외국 합작회사라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기업이 베트남기업을 인수하는 데에는 먼저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그리고 업종별로 관련된 베트남 특별법, 그리고 WTO 양허안 및 한-베 FTA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한-ASEAN FTA 협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양허 조건이 WTO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업종별로 합작 자체만을 허가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50% 미만 등으로 지분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지어 양허안에 없더라도 실무상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고, 이전에 허가를 내어주었다가 현재는 허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이전 지분구조 외국인 8, 현지 2라면, 투자법/기업법상 외국인투자법인 범주에 들어가므로, 인수 전 법인이 투자법상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인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16-8-11)

**상담사례 — 42** 유통법인 설립 및 법인장은 베트남인이어야 하는지

**Q** 본사에서선 선글라스와 옷을 준비하여 호치민에 법인 설립 및 매장을 두고 소비자에게 판매 및 바이어에게 유통을 하려 합니다. 현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현지인이 대표로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소비자에게 선글라스 및 옷 등을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의약품이나, 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제조업보다는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편으로, 실무상으로는 법인 설립 기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린다거나(3개월 이상), 한국 또는 기타 외국에서 기존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경력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된다고 하여, 현지인이 대표(법적대표자, 법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2016-7-25)

**상담사례 — 43** 조달시장 참여 조건

**Q** 베트남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해외법인도 가능한지, 갖추어야 할 법인 조건이 있는지 여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조달시장의 참여에 대하여 해외법인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베트남 조달시장은 3,000여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공기업이 주요 참여자이며, 2013년을 기준으로 공개입찰 중 국제입찰은 약 5%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가능하나 아직까지 실무적으로는 해외법인에게 기회가 드문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외 해외법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시장임은 염두에 두시고 개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7-12)

#### 상담사례 — 44 무역업

**Q**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수출입 무역회사 설립 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비용에 대하여는 설립형태, 규모, 위치, 업무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명쾌하게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설립 비용 항목별로 대략의 금액을 알려드리니, 귀사 형태에 맞게 계산하시면 비용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단위 US\$, 대략의 비용입니다.)

- 인지 및 번역공증 비용: \$1000
- 법무법인 등의 법인설립 대행 비용: \$5,000~\$20,000
  - 순수 법인 설립 대행이며 추가 업무 요구 시 늘어날 수 있음
- 일반적인 현지 근로자 노무비: 월 \$300~, 한국어 가능한 경우 \$500~\$1,000 이상일 수 있음
- 호치민시 사무실 임차료: \$10~40/m<sup>2</sup>/월
  - 예) 100m<sup>2</sup>(약 30평)의 경우 월 \$1,000~\$4,000, 보증금은 2달~6달치 차임 기타 설립에 필요한 설비 비용, 출장비, 주재인원에 대한 파견비, 세무대행 비용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16-6-30)

#### 상담사례 — 45 여행사(캠핑)

**Q** 베트남 현지 여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여행사 및 요식업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나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합작 시 외국인이 법인장을 맡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A**

1.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행업의 경우 단독으로(지분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베트남 현지인/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2. 캠핑이 명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령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내국인을 불문하고 숙박 시 반드시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온전히 합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한 고충이 예상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아직 인적이 드문 경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지 업체와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여행사/요식업 모두 허가는 가능합니다. 또한 그 회사에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법인장)도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대행 업무는 베트남 내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6-21)

**상담사례 — 46**    **현물투자 여부 및 방법**

**Q** 현물투자 가능 여부 및 방법 문의

**A** 현물투자도 가능하며, 투자 허가 시 신청(리스트 등 제공)해야 하고, 적법한 감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최초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는 현물투자로 변경이 아주 까다로우며, 어쩔 수 없이 약속한 현금 자본금 납부 후 증자 등을 통해 현물투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물투자는 감정 절차가 까다롭고 출자자의 보증 등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무상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현물 투자를 잘 선택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2016-6-5)

**상담사례 — 47**    **유통업 허가**

**Q** 베트남 유통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허가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는 달리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현지에 직접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을 향유하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귀사의 경우 유통업 이외 수출입업종도 추가되어야 하며, 유통 및 수출입업 모두 허가 과정에서 HS코드 전단 4자리를 특정하게 됩니다. (추후 추가도 가능)

한편, 위 법인 형태는 1인 혹은 2인 이상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의 경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대부분 법인 설립의 경우 현지 컨설팅업체 및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통관에 있어서도 현지 물류 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제도가 한국과는 다르고, 까다롭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 사항이 있으실 때마다 무역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5-19)

**상담사례 — 48** 물류업

**Q** 현지 포워딩 업체의 물류업 설립 대행비용이 3,000달러인데(한국계는 10,000달러) 적당한 가격인지, 또한 100% 외국인 투자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물류업종의 경우 업종마다 다르나 해당 업종의 경우 100%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기업의 경우도 명목상 합작-99:1지분-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류업체의 경우 까다로운 허가 과정 때문에 대행업체 또한 비용을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높게 요구하고 있어, 10,000달러라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한국계 법무법인 기준). (2016-5-3)

**상담사례 — 49**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 전환

**Q** 원사 유통 및 무역 회사로 베트남에 현지인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에 문제없으며, 지방 계획투자청(DPI)에 기업등록허가증(ERC)을 변경하고 투자허가증(IRC)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2016-4-28)

**상담사례 — 50** 자본금

**Q** 정관자본금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이전에 송금했던 1차 부지대금을 영수증 처리하여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령 정관자본금이 100만 달러이면 1차 토지대금으로 20만 달러를 선납했기에 이를 영수증 처리하고 베트남 회계사무소를 통해 2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잡고 나머지 80만 달러만 베트남 정관자본금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자본금의 경우 2014년 발표된 중앙은행 시행령(No.19/2014/TT-NHNN)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은행에 “투자 계좌(Investment account)”를 개설하여 송금할 수 있고 이는 자본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토지대금을 투자자가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위 투자계좌(성격상 역외계좌 혹은 대외계정-overseas account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로 송금한 다음, 이 투자계좌

에서 1차 부지대금이 송금된 경우라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직접 1차 부지대금을 공단 등으로 송금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국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2016-4-21)

**상담사례 — 51** 유료직업소 개업

**Q** 베트남의 인력 소개업에 법규나 정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서는 써치펌을 운영할 때 자격증이나 현지 회사 등록에 관한 규제가 있는지요?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 명의로 베트남에 인력을 소개하고 플레이스하고 빌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 적용되는 규제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WTO 양허 스케줄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인력소개에 있어서는 베트남에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CPC865 Management consultant services에 해당, 스케줄상 cross border 업무는 제한이 없음) 법인설립도 가능한데 인력소개 법인 설립 시에는 노동청에 의한 사후 허가 절차가 추가됩니다. 싱가포르 회사의 자회사(법인)가 아닌, '지점' 설립은 실무상 힘듭니다. 또한 cross border로 업무 진행 시 대금을 청구할 경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 징수될 수 있으며, 송금을 위해 계약서 내용 자체도 HR Management Consulting 등으로만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 기관과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6-4-13)

**상담사례 — 52** 음식 제조업 vs 유통업

**Q** 베트남 호치민 내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할 반가공식품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등록 시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통업인가요? 또한 각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현지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A** 전처리 및 각 매장의 조리 정도에 따라 각 매장들이 '유통'이 아니라 '음식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유통보다 제조업이 허가가 간편합니다). 또한 육고기 가공 처리를 하는 시설이 위치할 건물이 식품안전증서(food safety certificate)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건물주 및 관할 관청(호치민시 DPI 등)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4-11)

### 상담사례 — 53 지연이자

**Q** 회사의 귀책으로 베트남법인에 대금지급을 못하고 있을 경우 향후 베트남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은 몇% 인가요?

**A** 베트남 민법은 지연이자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과 같이 5%, 6% 정률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SBV) 발표 기본 금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 SBV 기본 금리는 6%입니다. 참고로 이자율을 약정하더라도 기본 금리의 15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조항 베트남 민법(2016.12.31) 제 474조 및 제476조)]

(2016-4-6)

### 상담사례 — 54 프랜차이즈

**Q** 베트남에서 산업무역부에 가맹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사업 소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프랜차이즈 사업 소개서의 현지 영문 표현이 'Instruction of Franchise Business'가 맞는지요?  
 ② 해당 서류가 정보 공개서와 같은 것인지요? 즉, 제출 서류에 정보 공개서가 포함되는지요?

**A**

- ① 사업소개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소개서는 Circular(Guiding The Commercial Franchising Registration), No. 09/2006/TT-BTM, appendix III의 내용입니다.
- ② 정보공개서 작성 및 제공 의무: 위 Decree 35 제8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5일 전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사전 제공의무가 연방 및 각 주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3-25)



상담사례 — 55 중고기계 수입

**Q**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① 80% 이상의 잔존가치 보유조건을 삭제하고 '제조 표준 조건'으로 대체하였는데, 이 '제조 표준 조건'의 의미나 기준, 내용 등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② 수입자가 중고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년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 표준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나 '관할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기준이나 양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히 제품에 붙여진 라벨로만 가능한지, 제조업체가 최근에 성능검사 등으로 인해 발행한 인증서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 관할 검사 기관이 수출국 검사 기관인지 수입국 검사 기관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정된 관할 검사 기관이 있다면, 그 리스트도 문의 드립니다.

**A**

- ① 1. "제조 표준 조건" 의미, 기준, 내용: 수입업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년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혹은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 중고기계수입 시행령 Circular 20/2014는 '제조년한 5년 이내' 그리고 '잔존가치80% 이상'으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10년 까지 연장하였으며 과거 모호한 평가기준으로 비판 받았던 80% 이상 잔존가치 보유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제조 표준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 ② 2-1. 인증서 양식관련 본 시행령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세부적인 규정이 미확정인기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업무를 진행하실 때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와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의 인증서의 경우 규정된 양식이 아닌 범용양식이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 법령이 시행될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2. 검사기관 리스트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의 경우 해당 검사는
  - 1)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과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 2) 베트남 표준(TCVN)
  - 3) G7 표준 해당 표준규격을 인증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3. 예외사항-신규 및 증액 투자 시 신규 및 증액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관세청에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면 제조년 한 10년 이상의 중고 기계 역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투자자는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투자등록증명서 신청 및 수정 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여 상기 수입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눈여겨 봐야 할 사항으로는 동 수입된 중고기계들은 다른 투자 프로젝트 및 다른 기업으로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업 파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2016-3-23)

### 상담사례 — 56 건설시방서

**Q** 베트남 건설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의 건설용 시방서가 없어서 표준 건설 시방서를 찾고 있는데, 혹시 베트남의 표준 건설 시방서(Construction specification)가 있는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베트남은 지방정부 규정, 공단 개발회사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공단 내의 지역이라고 하셨으니, 공단 개발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타 공단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 □ Long Giang 공단/Tien Giang성

- 건폐율: 토지면적의 40~70%
- 건물 높이: 1~5층
- 용적율: 0.7~2.0배
- 조경면적: 토지면적의 20%
- 벽/울타리: 도로면 벽은 최소 2m로 창살(보이는 형태), 옆 공장과 사이 벽은 최소 2.2m, 벽돌(가림 형태)로 되어야함.
- 그외 전력 연결로, 우수로, 폐수로에 대한 규정이 있음 (2016-3-21)

### 상담사례 — 57 대금결제

**Q** 베트남 공장 건설 시(혹은 거래 시) 대금결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동화로 무조건 환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달러로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착수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베트남에서 대금 결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화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즉, 대부분 동화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수금 경우는 건설사마다 워낙 다른 조건을 제시하므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 시 원하시는 내용을 피력하시고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6-3-21)

**상담사례 — 58** 총 납입자본금의 의미

**Q**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외국인투자사업에서 투자하는데 필요한 "총 납입자본금"의 뜻은 무엇일까요?

**A** 총투자금은 납입한 자본금(실제 은행에 송금한 자본금, 정관자본금)에 영업을 위해 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2016-1-30)

**상담사례 — 59** 중고제품 수입

**Q** 중고제품 판매업에 대한 베트남에 유사 플랫폼 진출 사례 혹은 한국 중고제품 수출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단순 플랫폼 구축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한국 중고제품의 경우 진출 업체 명의로 물품을 들여온 후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개개 물품 등록/검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핸드폰 등 일부 중고 품목은 사실상 합법적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내 합작기업을 두고 통관 등은 그 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추천합니다. (2016-1-22)

**상담사례 — 60** 비료 생산

**Q** 당사는 호치민에서 서남방향 약 250km에 위치한 허우장성(Hau Giang Province)에서 투자협의를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판매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사업구도는 허우장 성 차원에서 지원, 유수의 베트남회사가 투자, 당사는 기술제공 및 지원하는 구도입니다.

- ① 베트남의 "비료공정규격"(한국의 비료공정규격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 ② 베트남의 유기질비료 및 부숙 유기질비료(퇴비)의 종류, 그리고 시장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A**

- ① 베트남 비료 사용 현황(2014년 기준)
  - 총 수요량: 1,100만톤(2013년 대비 4% 증가)

- 제품별 수요량: NPK 4백만톤(37%), 요소비료 2.2백만톤(20%), 인산비료 1.8백만톤(17%), 칼륨비료 1백만톤(9%), SA와 DAP 비료가 각각 90만톤(8%)
  - 지역별 수요량: 남부 6.24백만톤(57.8%), 북부 2.59백만톤(24.0%), 중부 1.97백만톤(18.2%)
  - 작물별 비료 사용 비율: 벼 65%, 옥수수 9%, 고무나무 8%, 커피 5%, 사탕수수과 캐슈 너트가 각각 3%
- ② 베트남 비료 생산 현황
- 국내 비료생산량은 약 8백만톤으로 수요 대비 80% 수준으로, 신규공장 설립 및 기존공장 확장으로 NPK, 인산비료, 요소비료는 수요대비 공급량이 초과함
  - DAP 비료의 경우, 수요 대비 30~35% 공급 수준이나, 연 330,000톤 규모의 공장 설립 중임
  - SA와 칼륨비료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제품별 생산량: NPK 3.8백만톤, 요소비료 2.4백만톤, 인산비료 1.8백만톤, DAP 비료 33만톤
- ③ 베트남 비료 수출입 현황(2014년 기준)
- 비료 수입 규모: 3.79백만톤/12억3천7백만 달러(2013년 대비 수량은 17.85%, 금액은 26.38% 감소)
  - 제품별 수입 증감 현황(2013년도 대비): 요소비료 213,000톤(전년도 798,000톤 대비 73.3% 감소), NPK 234,000톤(전년도 421,000톤 대비 44.4% 감소), 칼륨비료 986,400톤(전년 대비 수량 0.57%, 금액 21.58% 감소)
  - 주요 수입국: 중국 53%, 러시아 11%, 일본 7%, 벨라루스 6%, 이스라엘/캐나다 각각 4%, 한국 3% 등
  - 비료 수출 규모(2014년): 107만톤/384만 달러(2013년 대비 수량은 0.51 증가했으나, 금액은 8.06% 감소함)
  - 주요 수출 품목은 NPK 338,861톤/요소비료 300,284톤/DAP 비료 210,345톤 등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캄보디아(461,790톤, 46%), 한국(10%), 말레이시아(7%), 필리핀(7%), 라오스(4%)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④ 참고로 베트남 남부 농업기술기관 사이트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iasvn.org/>. 영문이 있사오나 자료들의 대부분은 베트남어로만 제작되어 있습니다. phân bón(비료)로 검색 시 비료가격, 베트남 비료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6-1-21)

## 상담사례 — 61 법인 혹은 대표사무소의 부동산 구매

### Q 베트남 부동산 투자 관련 문의

- ① 해외 소재 법인 - 해외소재 법인(베트남 현지에 법인 부재)이 베트남 내 부동산(아파트, 빌딩) 구매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구매기간(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②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에서 부동산(아파트, 빌딩) 구매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구매기간(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A

- ① 해외 소재 법인은 베트남 내 부동산 소유(이하 말씀드리는 '소유'는 편의상 말씀드리는 개념이며, 정확하게는 토지사용권의 취득입니다)가 불가능합니다.
- ② 현지 대표사무소(이 부분은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의 기고 부분을 인용합니다): '외투기업/사무소의 경우 소유연한은 당해 외투기업/사무소의 영업허가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영업허가 기간의 연장으로 연장가능) 대표사무소의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또한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은 대표사무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허가가 발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연한이 상당히 짧다는 부분입니다. 연장이 되는 경우가 문제 없지만 최근 각종 사유로 대표사무소 연장이 거부 혹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한가지 덧붙이자면, 대표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로서만 가능하고 베트남 내 영업은 불가능하므로, 소유하시더라도 임대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1-6)

IV

# 투자 절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상담사례 — 62 식당 프랜차이즈

**Q**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설립하고 싶습니다.

- ①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할 때, 외국인 100%투자로 설립이 가능한지요?
- ② 가능하다면 법인 설립을 대행사에 맡겼을 때, 일반적인 비용과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A** 베트남에서 외국인 100% 투자로, 식당 프랜차이즈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 허가 외에 프랜차이즈 허가에 별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요건 중 1년 이상 가맹본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있어,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외에서 1년 이상 본점을 운영해야, 그 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행요금의 경우 어떤 업체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투법인 설립의 경우 한국계 컨설팅업체들은 최소 \$5,000 이상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10,000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 외식업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 별도의 대행료 추가가 예상됩니다. 법인설립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종 인허가 등에 과거와 같은 인사 비용 등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호치민 시 소재 법무법인들의 의견입니다. (2016-12-27)

### 상담사례 — 63 합작투자 유의점

**Q** 해외합작투자 초기 유의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베트남 현지의 'H사' 라는 업체에 엘리베이터를 수출하고 있던 중, H사 측에서 당사와 합작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동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당사가 위 업체와 합작투자를 할 경우 절차, 유의점, H사 사장에게 따라 받아두어야 할 서류 등(한국의 경우 공증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투자형태의 종류: 투자형태에는 단독기업, 합작투자, 사업협력계약 등이 있음. 투자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는 투자형태의 장단점에 따른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나. 합작투자가 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중 합작투자 형식은 1) 토지와 관련된 투자(오피스 빌딩 건설 등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베트남 파트너 측이 토지 사용권을 합작법인의 자본으로 납입하는 경우 및 2) 100% 내수판매 대상 투자를 할 때에 베트남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의 합작 등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함.
- 다. 합작투자의 장단점:
  - ① 합작투자의 장점으로는 1) 현지인력, 생산라인, 판매구조, 현지 네트워크 등 이용으로 초기 투자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 2) 현지 파트너의 조력으로 내수시장 진입이 용이함 3) 사업인허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등이 있음.

- ② 단점으로는 1) 파트너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고 2)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크고 3) 투자이익을 독점할 수 없으며, 4)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라. 단독 투자의 장단점: 반면 단독기업의 경우에는 1) 투자자의 경영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2) 기술, 정보 유출 방지가 가능하며 3) 투자 이익을 독점하게 됨.

다만, 단점으로 1)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고 2)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장시간 소요되며 3) 투자제한 분야 내수 시장 진출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임.

마. 회사 운영 관련 고려 사항: 합작 회사 설립 시 단점으로 1)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 형태와 관련하여 1인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2) 2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한국과 달리 65% 또는 75% 지분 비율을 가져야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자세히 설명하면, 베트남 기업법상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회사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임. 주식회사는 최소 3인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재무 및 공시에 까다로운 규제가 존재하므로 유한회사가 주로 설립되고 있음. 유한회사는 1인 유한회사도 가능하나, 합작회사의 경우라면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참여하므로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를 갖추게 됨.

#### 1)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합작을 하는 경우)

- 2인 이상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임.
-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정관 자본의 75% 이상 출석 및 출석 정관 자본의 65% 또는 75%(중요 결정의 경우)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데 과반수 확보만으로는 불완전함.
- 과거에 설립된 49%: 51% 합작법인 또는 65% 이하 지분소유로는 완전한 경영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함.
- 한편, 지분 양도가 사원들 상호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가 있는 점과 그 절차가 쉽지 않음. 즉, 지분 양도 시 기존 사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존 사원 우선 인수권 제도가 있음. 기존 사원의 우선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 기존 사원에 제시한 조건(양도금액 등)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함.

#### 2) 1인 유한책임회사(합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음.
- 다만,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업을 전제로 하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따라서 증·감자가 다른 회사에 비하여 자유롭지 못하며(감자는 사실상 금지) 이익 배당 송금에 있어서도 다른 회사 종류에 비하여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음 (2016-12-19)



**상담사례 — 64 M&A 유의사항**

**Q** 현지 한국인 운영 법인 인수 시 유의 사항 문의

**A** M&A 관련 일반 유의사항으로 베트남에서 공단 외인 경우 법인 인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공단 내 위치한 외투법인 인수가므로 세무 실사 이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베트남의 경우 우발채무 발생에 취약하므로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 드립니다.

(2016-11-30)

**상담사례 — 65 프로젝트오피스 업무 범위, 청산 기간**

**Q** 일부 공사 하청을 맡았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상 공사시간이 끝난 후에도 프로젝트오피스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프로젝트오피스로 입주민으로부터 건물 운영/관리 업무로 이윤 창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프로젝트오피스(PO)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 등이 수반하여 설립되는 사무실이고,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종료(공사 종료)와 함께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허가를 받을 때 PO의 예정 존속기간은 원청과 이루어지는 계약서(하도급 약정서 등)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기간이 원청과 계약으로 만족이 된다면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PO로 계속 존속은 가능하다고 하며, 실무상으로는 건설 계약 특성상 워낙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아닌 원청과 하청간 청산계약서(liquidation contract) 제출로 청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엄밀한 법 해석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한편 자산 운영/관리를 통하여 이윤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면, PO 특성상 돈을 받는 명목은 해당 계약서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질의와 같이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형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 조건으로 입주 후 3년동안 '발주처' 로부터 금액을 받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경우 발주처가 세무 처리를 하기에 무척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2016-11-16)

### 상담사례 — 66 유아용품 유통업

**Q** 유아, 아동 놀이매트와 유아용품 관련 상품을 베트남에 매장(road shop)을 오픈하여 베트남 현지인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베트남 개인사업등록증을 받는 신청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유통업 라이선스는 법인설립 시 업종으로 유통업(다른 나라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신다면 수입업 종도 추가)을 취득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을 위해 물품마다 별도의 유통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조건부허가업종이고, 이러한 경우 허가 자체는 베트남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한다고 알려진 것은 유통하는 물품, 타국가에서의 업력, 투자규모(충분한 자본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예전과 같이 허가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가가 나는 경우 법인설립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16-10-28)

### 상담사례 — 67 제조업

**Q** 베트남에서의 제조업 개인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유한책임회사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같은 이름의 한국인 법인장이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형관련업과 연관된 것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된 형태는 법인, 지사, BCC(경제협력 계약)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완전히 불가능하며, 말씀하신 금형 관련 제조업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면 금형 관련 제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 및 유통업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물론 제조에 비해 부동산업/유통업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2016-8-16)

### 상담사례 — 68 PC방, PC제조업

**Q** 베트남 호치민에 PC방(Internet Cafe) 사업과 PC & 노트북 제조 및 판매 분야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① 호치민에서 PC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PC방 운영을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② PC 제조 및 판매를 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 ① PC방 운영에 맞는 업종을 가진 법인을 설립하면 되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 기존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의 선례를 확인하고는 하는데, 확인 결과 PC방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케이스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는 카페, 컴퓨터서비스 등 여러 업종을 등록 함으로써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 허가과정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로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식당업, 유통업(담배 등), 레크리에이션, 영화관,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 판매 등 다양한 업종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외투기업이 로컬업체와 같이 다양한 업종 취득은 실무상 쉽지 않은 편이며, 담배 유통 등은 원천적으로 불허되어 있어 업무상 제약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설립된 법인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프랜차이즈 등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프랜차이즈 허가를 받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기존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산업부(MoIT)로 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② PC 제조 및 판매를 하기 위해 라이선스

위 PC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설립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PC를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유통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8-8)

### 상담사례 — 69 유통업체의 물류, 창고업종 추가

**Q** 베트남 물류 법인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① 베트남 내 물류 법인 설립 절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② 또한, 당사는 베트남 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베트남 지사(화학제품 판매 법인)가 물류 라이선스만 추가로 발급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물류 법인을 별도로 설립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③ 베트남 내에서 창고 설립(혹은 임차)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법인(혹은 물류 사업 라이선스)이 있어야 하는지요?

**A**

- ①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다른 법인과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허가업종이며, 물류업의 경우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합작투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설립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 ② 유통법인이 물류업종 추가를 통해 물류업 영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일반 물류업의 세부 업종 중에는 법령상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있고, 실제로 100% 외국인투자회사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한하여는 물류업 추가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물류 업종이라도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물류업종 중 일부 업무는 외투기업에 원천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류업 법인 설립의 경우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③ 창고를 설립하여 빌려주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창고업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2016-7-6)

### 상담사례 — 70 지사설립

**Q** 운동기구 업체입니다. 지사를 설립하려는데 무역회사, 그리고 현지지사 중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에서 순수한 법적 의미의 지사(branch)는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대부분 현지 법인이거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의 진출(은행권 제외)입니다.

이중 대표사무소는 본사의 연락사무소, 시장조사 역할 등만 허락되어 있고, 자기 명의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로 설립하는 경우 본 계약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본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본사에서 수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신 법인에 비해 세무 등 업무가 간소화되고, 법인에 비해 허가가 쉽습니다.

반면, 법인은 독립적인 주체이므로, 현지 법인 명의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 바이어에 납품하는 단순 수출입 업무라면 대표사무소로 충분할 수도 있으나, 직접 유통을 하신다거나, 현지 에이전트 없이 베트남에서 직접 창고를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 추가 업무를 보시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2016-7-2)

### 상담사례 — 71 수출입업(다낭 지역)

**Q** 베트남 다낭에서 공예품을 수출하려는데 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수출입업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소매유통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더욱 쉬운 편입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수출입업에 실무상 최저자본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나 다낭시의 경우 상당히 완화하여 운영하는 편입니다. (2016-6-5)

### 상담사례 — 72 건설업

**Q**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관련하여 자료 요청 드립니다. 중화학 플랜트 시공 전문업체(배관, 철골, 기계설치)로 등록하려 합니다. 한국의 1군업체(삼성ENG, GS ENG, SK ENG, 현대 중공업, 두산 중공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수주하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인 설립은 대등소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업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또는 자격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내 법인 투자가 아닌 개인 투자로 법인 설립 예정입니다.

- 건설업 법인 설립 절차
- 예상 법인 설립 소요 기간
- 건설업 법인등록 요구 조건(자격증) 및 관련 서류
- 건설업에 적합한 법인 형태
- 현지법인 OFFICE는 호치민에 주소지 등록예정이며 현장은 호치민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사무소에 대한 별도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한지요?
- 현장에 따라 현장 인근에 현장사무소 이외에 제작SHOP(FRICATION SHOP, 철골제작 및 용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관련 법규가 있는지요?

**A** 건설업 법인 설립

- 건설업종은 투자법에 의하면 조건부허가업종이고, 따라서 허가기간은 일반 제조업체 보다는 조금 더 긴 최소 2달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문상으로는 영업일 기준 15일이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 건설업 진출에는 법인 설립 외에도 프로젝트오피스(줄여서 PO라고 말하기도 합니다)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수반한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프로젝트오피스도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 현장사무소에 별도 등록이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제작SHOP도 추가 등록/허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문법무법인 의견)
- 건설업과 관련하여(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는 없습니

다. 다만, 최근 호치민시의 경우 건설법인 설립에 모기업의 업력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소명이 조금 힘들 수 있고, 투자허가도 힘들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2016-5-25)

### 상담사례 — 73 M&A 체크리스트

**Q** 기업 인수합병 시 영업 체크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신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 영업 및 재무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A** 문의 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M&A 에센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여러가지 기본 사항 설명과 더불어 요청하신 체크리스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6-5-18)

### 상담사례 — 74 업종코드, CPC코드

**Q** 물류업 법인 설립 시 업종 코드를 어떻게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업종의 경우 CPC코드를 따르면 되며, 어떤 업종을 택할 것인가는 기존 다른 외투 기업의 사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가기업 등록 포털에서 기업의 ERC 조회가 가능하며 일정 수수료를 내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CPC748이 적합합니다. (2016-5-3)

### 상담사례 — 75 섬유·유통업

**Q** 재래시장에서 단추 등의 섬유 부자재를 직접 유통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판매 진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직접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법인 설립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해당 조합 및 DPI 등에 외투허가가 가능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6-4-28)

### 상담사례 — 76 정관자본금

**Q**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을 연장 신청하려 합니다. 이번에 회사가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는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① 투자신청서에 보니까 100% 현금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경우 토지사용권이나 기계설비로 바뀌서 정관자본금으로 납부할 수는 없는지요?
- ② 90일 이내에 납입 가능한 금액만 기입하고 법인설립 후 증자하면 된다는데, 최소 얼마만큼의 비율을 납입하면 되는지요? (가령 100만 달러일 경우 30만 달러정도만 납부해도 된다.)
- ③ 정관자본금 납입기한 연장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요?

#### A

- ① 이미 법인설립이 된 경우 실무상 자본금 액수 변경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인설립 전이라면 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공단 내 입주 경우)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신청 내용 자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 ② '정관'자본금은 반드시 전액을 9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투자'자본금은 정관자본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전체를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③ 연장신청은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어느 정도 여유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와 상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연장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6-4-6)

### 상담사례 — 77 연락사무소, 제조업

**Q** 호치민에 연락사무소 및 제조공장을 설립하려 합니다.

- ① 베트남 호치민 연락사무소 → 호치민에서 외국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의 연락사무소 임대 / 운영 가능여부
- ② 호치민 내의 영세공장(50명 이하의)을 설립하려는데 영세제조업체 설립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 여부
- ③ 호치민 내 현지공장에서의 직원 채용 후 실 사무실 없이 연락사무소 운영 시 문제점

#### A

- ① 베트남 국외 소재 법인의 베트남 내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설립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등록 조건은
  - 1)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 2)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 3)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이 원칙입니다.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4) 베트남 투자법상 사업금지항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사무소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책상 공단에 입주하여야 투자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공단 외 지역은 설립이 가능한지 등을 DPI(기획투자청) 등과 긴밀하게 논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③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란, 마케팅 등 단순히 모회사의 연락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도 직원채용은 가능하나 공장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표사무소 설립 조건이 반드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사무실이 없는 대표사무소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2016-3-21)

**상담사례 — 78** 노동허가증, 임시거주증

**Q** 노동허가증 및 임시 거주증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① 건강진단서의 경우 베트남 지정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비자나 거주증이 없는 상태인데 보통 어떤 방식으로 베트남에 들어가나요?
- ② 근로계약서 샘플을 받고 싶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거주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은 베트남 어디에서 발급 받는건지요?

**A**

- ① 건강진단서의 경우 베트남에서 받아도 되나 국내 병원에서도 받으시고 영사확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단, 번역공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베트남에서 받으시는 편입니다. 베트남에서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비자면제제도(한국 국적일 경우 15일간 면제)를 이용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② 근로계약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단,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므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베트남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 ③ 이는 고용된 회사에서 발급 혹은 확인해줘야 합니다. (2016-3-17)

**상담사례 — 79** 번역/공증 절차

**Q**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번역/공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번역 및 공증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 ① 한국에서 법률사무소 번역 공증                      ② 외교부 영사확인  
 ③ 베트남어 번역    ④ 베트남기관(대사관 또는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

이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 즉, 우선 한글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한국 법률사무소 공증(영/한) →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번역(영문에서 베트남어로 번역) → 베트남대사관 공증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한글에서 베트남어로 바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한국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베/한) →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번역 체크(번역이 잘 되었는지 확인) → 베트남 대사관 공증 절차를 거칩니다.
2. 일부는 한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법률사무소 번역 공증(영/한) → 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친 후, 그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베트남 번역 기관의 번역 → 베트남공증기관의 공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3. 대부분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고 번역만 베트남에서 하는 경우 한국에서 법률사무소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공증(영문본 만으로도 공증 가능)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며, 베트남 별도의 번역기관에서는 베트남어 번역만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즉, 위 1번 절차 중 미리 베트남 기관 공증(영문본)부터 받고 추후 베트남에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2016-2-29)

## 상담사례 — 80 서비스업

**Q** 베트남에 서비스 센터를 진출하려 합니다. 이에 대하여

- ① 베트남 서비스 센터 진출 절차  
 ② 서비스 센터 설립을 위한 부동산 임대 또는 구입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 ① 서비스업의 경우 조건부 투자 분야로, 일반 제조보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업종(기계 수리 서비스 등)의 경우 CPC코드 6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 사이트 해당 분야 검색 결과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으며, 법무법인 등의 전문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② 호치민시 내 부동산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심가 A Grade 오피스의 경우 40~60/m<sup>2</sup>/월) 부동산 중개 한인 업체들의 경우 현지 교민잡지에서 쉽게 광고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민잡지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1-18)

V

# 현지 경영관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1. 세무

### 상담사례 — 81 재고자산

**Q**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 한국과 같이 기업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베트남 현지의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회계는 베트남 회계기준(VAS)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재고자산은 VAS0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재무제표상 수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해 보시되, 참고로만 부탁 드리고 실 업무에 적용함은 현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2016-12-5)

### 상담사례 — 82 EPZ, 관부과세

**Q** 베트남의 수출입 관세 및 부과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 ① 베트남 내 EPZ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여 베트남 내외의 제조 수출 및 내수판매 업체에 판매 시 관세와 제세금은 몇 %이며 환급은 가능한가요?
- ② 한국 기업→베트남 내 당사→베트남 내 고객 즉, 베트남 내에 수출입전문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베트남 국내외에 수입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 제세금의 부과 비율과 환급여부 등에 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A**

- ① EPZ 내의 기업으로서 원부자재에 대하여 관세유예/면세 등을 받았고, 제도가공 후 베트남 국내(외국계 기업유무에 상관없음)로 납품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해당 EPZ기업이 유예/면세된 관세 및 제세(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PZ 내 기업의 경우로서 EPE기업에 해당여부 따라 관부과세가 유예/면세 됨. 관부과세의 환급은 수출여부가 중요함.
 내용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부과세의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예/면세된 관부과세가 있다면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베트남 내 납품 받은 기업이 제도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라면 관부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납품받은 베트남 내국기업이 제조/가공 후 수출한다면 상기 납부한

수입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수출기업이 수출 시 납부한 수입세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정산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급을 받는 기업은 EPZ기업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납품 받는 베트남 기업이 EPE 기업 등으로 관세유예/면세가 가능한 경우라면 계속해서 관세유예가 가능합니다.

- ②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베트남 HS코드는 8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베트남 HS 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11-29)

### 상담사례 — 83 베트남 당국의 한국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요구

**Q** 대표 사무소 청산 시 미납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한국 내 소득에 대한 납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상 거주지(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거주 조건)가 베트남인 소장은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소득세 기준은 베트남 소득과 한국의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미납한 소득세 및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출국금지도 가능합니다. (2016-10-31)

### 상담사례 — 84 세율

**Q** 회사 설립 형태에 따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ex. 1인 유한책임, 2인 이상 유한책임 법인세, 소득세 등)

**A** 회사설립 형태에 대하여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형태를 정하셔야 합니다. 특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출자금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사원)의 수에 따라 다른 것이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달리 3인 이상의 출자자(주주)가 필요합니다. 필수기관 등을 고려하면 가장 운영이 간편한 형태는 1인 유한책임회사이나, 투자자가 1인일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립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율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20%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는 구간별로 5~35%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고 구간은 8,000만동 이상입니다. (2016-10-9)

### 상담사례 — 85 결산

**Q** 2015년 10월 초에 공장임대료로 5만 달러를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외에 2015년도에는 회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경우 2015년도 결산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하면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호치민 내 회계법인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 2015년에는 결산을 할 필요 없이 2016년에 같이 결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상담사례 — 86 관세환급

**Q** 베트남 기업 운영 시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래하던 베트남 업체가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에 대해 당사가 사업양수 후 해당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당사가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 ① 임가공 계약: 베트남의 임가공 기업의 경우 수입 시 관세유예제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하고 수출 시 소요량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가공 계약의 경우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받고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수입신고 시점에 원부자재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가세 등의 수입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원재료 관세환급: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기초세액납세증명서(기납증), 분할증명서(분증), 평균세액납세증명서(평세증) 등의 세액증명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부자재를 수입한 자와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소요량정산서, 대금입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수입자가 관세 등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한 기업이 없어져서 환급 받을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2016-5-12)

### 상담사례 — 87 오토바이, 자동차산업

**Q** 오토바이 시트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베트남의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 ①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오토바이 제조사, 기종 등을 알고 싶습니다.
- ②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 통관 부분입니다.
- ③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수출 하는 것(미국과 일본에)은 무관세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관세 부분, 세금 혜택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① 베트남 2015년 1~6월 기준 판매된 오토바이 순위입니다.
 

1) Honda Wave Alpha(175,463대)	2) Yamaha Sirius/Sirius Fi(166,261대)
3) Honda Air Blade 125(158,180대)	4) Honda Wave RSX/RSX Fi(128,154대)
5) Honda Vision(123,893대)	6) Honda Lead 125(99,339대)
7) Yamaha Exciter 150(66,113대)	8) Honda Blade 110(64,062대)
9) Honda Future(61,532대)	10) Honda SH mode(51,447대)
- ② 베트남 관세 부분의 경우 2016년 3월 4일 호치민 무역관에 FTA 활용지원센터가 개설 되었습니다. HS Code, C/O 등을 준비하시어 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베트남에서는 완성차 수입 혹은 부품수입 후 조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시장통합으로 현재 조립을 하는 공정도 차츰 사라질 전망입니다. 아세안 국가간 자동차 수출입 시 관세가 0% 되는 바, 현재 생산비가 20% 비싼 베트남에서는 더이상 자동차를 조립 혹은 생산할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산업은 자연스럽게 태국으로 집중,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은 전자, 기계 산업으로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2016-3-20)

### 상담사례 — 88 비용처리

**Q** 대표사무소 세무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후 tax code를 부여 받게 되는데, 대표사무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베트남 세무당국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임대료, 전력비, 교통비 등 비용 지출 등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는 한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소득세나 3대 보험 신고 납부 등은 베트남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경비 지출 시 정식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운영과 관련 없는 경비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 추징하는 사례가 많으니, 대표사무소 경비 지출 시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3-2)

### 상담사례 — 89 대표사무소 직원 급여 지급 및 세금 처리

**Q**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려 합니다.

- ① 회사 직원의 급여는 현재 한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베트남 통장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거주증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베트남 통장에서 집행되어야 하나요?
- ② 베트남에서의 세무 신고가 필요 없다면, 베트남 경비는 베트남 영수증을 받아서 한국에서 세무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A**

- ① 급여 지급은 베트남에서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베트남 상주 인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베트남에서 하셔야 합니다.
- ② 경비는 한국에서 세무신고 하면 됩니다. 다만 대표사무소 경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운영과 관련 없는 경비로 간주,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에 가산 추징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비 지출 시에도 세금계산서는 구비하여야 합니다. (2016-2-24)

### 상담사례 — 90 프로젝트오피스 소득세를 협력업체에 전가 가부

**Q** 베트남 현지에 PO(Project Office) 설립을 고려 중입니다. 법인 소득세를 Hybrid법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생각 중인데 이 경우 Hybrid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이 소득세를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법상 'hybrid법에 따르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는 외국인계약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므로 귀사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1-25)

## 2. 외환/금융

### 상담사례 — 91 배당금 해외송금

**Q** 베트남 현지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때 수익 배당금에 대한 한국으로의 송금이 잘 이루어지는가 및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에 대한 베트남 동(Dong)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A** 현지 진출한 다수의 한국계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의견은 현재 투자 절차, 지분 구조 등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설정되어 있다면 해외 송금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베트남 법상 기본적 절차인 배당액 송금 전 결산 완료, 세금 납부 및 관련 결의 완료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한편, 합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배당액의 액수 제한 등은 없습니다. 다만, 화력발전소 운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태환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2016-11-11)

### 상담사례 — 92 주식시장, IPO

**Q** 베트남 주식시장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① 베트남에는 한국처럼 전자공시시스템(Dard)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 ② 베트남에 상장된 기업(호치민 기준)의 목록이나 정보, 재무제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돈을 내고 구매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③ 베트남 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3, 6, 12개월에 따라 재무제표가 공개되나요?

**A**

① 베트남에는 한국과 같은 전자공시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가. 호치민증권거래소(HSX) 혹은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상장된 회사 해당 기업은 반드시 연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인 [www.hsx.vn](http://www.hsx.vn), [www.hnx.vn](http://www.hnx.vn) 에서 각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업체 홈페이지 혹은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공개(IPO) 회사



- ② 이외의 경우에도, 베트남 중앙은행(SBV) 산하기관인 국가신용정보센터(NCIC, www.cic.net.vn)에서 기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NCIC에서 모든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NCIC에 미리 요청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③ 참고로 NCIC의 정보는 유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1) Basic Information Report (S72): Providing background business information of an enterprise, including: Company profil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registration date, registered capital, address, business lines & employee number; Shareholder information & board of management; Banking relationship Several key financial ratios over the last 3 years: Sales, total assets, owner's equity & net profit before tax
- (2) Business Information Report (S73):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 enterprise's performance & financial situation, including: Business summary, historical background; Banking relationship Financial statements: Balance sheet; Profit & loss statement Credit rating & risk analysis Industry comparison Corporate family tree (if any)
- (3) Comprehensive Report (S74): Providing in-depth business information and analysis on a Vietnamese enterprise, including financial position, prospects & signs of possible changes in the status: Legal information Company profile Company operations Banking relationship Structure & shareholders, including linkage to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 affiliates Board & executive profiles Financial ratios & analysis Credit rating & risk analysis Industry comparison
- \* 비용(대략의 가격이며 요청마다 변경될 수 있음): S72: US\$ 40~60/enterprise S73: US\$ 60~80/enterprise S74: US\$ 100~150/enterprise (2016-11-4)

### 상담사례 — 93 법정 최고금리

**Q** 베트남의 법정 최고 금리가 있는지, 있다면 연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은 없으나, 베트남 민법에 의하여 이자율이 제한되며, 중앙은행(SBV) 금리의 150%로 제한합니다. 즉, 합법적인 연 이자율 제한선은 11%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2016-3-9)

### 3. 매각/청산

#### 상담사례 — 94 청산

**Q** 대표 사무소 청산 시 대표자가 반드시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는지, 청산 완료까지 예상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A** 청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대표사무소 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새로 대표사무소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표사무소장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임명하면 됩니다. 위 절차는 현 소장이 베트남에 있지 않더라도 서류 작성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청산업무의 주 내용은 법인청산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으로 예상되며 대표사무소는 매출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소득세 정도가 이슈 됩니다. 청산기간은 보통 6개월 소요되거나 1년 정도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2016-9-28)

#### 상담사례 — 95 자본회수

**Q** 한국 투자자가 해외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한국인은 현금이 없는 상태라 개인이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절차를 한국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베트남 은행에서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한지요? 위의 방법 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A** 설립 형태를 2인 유한회사로 간주하고 말씀 드리면, 자본 회수 방법으로는 지분 양도, 배당, 자본 감소, 지분환매, 청산 등이 있고 각각의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법인의 형태를 존속하면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해당 토지사용권은 법인에 현물출자된 상태로 법인 자산인 상태이므로, 애초에 귀하가 설립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아니므로 저당권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토지법에 의하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채권채무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단, 베트남 금융기관의 저당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법인 인가를 받은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 기관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감자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귀하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 록

## I. 호치민시 수출가공공단, 공단

(단위 : Ha, %)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입주 기업수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 가능	임대 완료				
01	An Ha IZ	159.06	123.51		23.22	18	- 외국기업 없음	68~75
02	Binh Chieu IZ	27.34	21.00	21.00	100	28	- 100% 임대완료	-
03	Cat Lai II IZ	124				58	- 100% 임대완료	-
	+ Phase 1	42.6	30.74	30.74	100	30		
	+ Phase 2	69.1				28		
04	Dong Nam IZ	342.53	286.76	-	80	10	- 한국기업 1	68
05	Hiep Phuoc IZ	908.4					- Hiep Phuoc 항구 접근성 좋음 - 한국기업 2	125
	+ Phase 1	311.4	186.0	-	98	120		
	+ Phase 2	597.0	308.0	-	25	-		
06	Hoa Phu	99.34	64.48	-	80.00	5	- 한국기업 2	65~70
07	Le Minh Xuan IZ	100.0	62.23	62.23	100	167	- 100% 임대완료	120
08	Linh Trung EPZ 1	62.0	42.0	42.0	100	35	- 100% 임대완료	-
09	Linh Trung EPZ 2	61.7	44.36	44.36	100	48	- 100% 임대완료	-
10	Tan Binh IZ	129.96	79.22	79.22	100	152	- 100% 임대완료	-
11	Tan Phu Trung IZ	590.0	359.0			35	- 한국기업 1	75~85
12	Tan Tao IZ	443.8	233.2			275	- 임대료비쌌 - 한국기업 4	230~280
	+ Phase 1	181.8	84.70		100			
	+ Phase 2	262	148.49		87			
13	Tan Thoi Hiep IZ	28.41	21.4	21.4	100.0	22	- 100% 임대완료	30
14	Tan Thuan	338.8				183	- 베트남 및 호치민시 최초 수출가공공단 - 한국기업 6	260~550
	+ EPZ land	300.0	216.96		90	173		
	+ IP land - For hi-tech industry	38.8	38.8		22.7	10		
15	North-West Cu Chi IZ	381.24	256.93		57.44	43	- 한국기업 4	90
16	Vinh Loc IZ	203.18	121.90	120.40	98.77	122	- 임대가능: 1.5ha (2016.01.07 기준)	250

## 호치민시 HI-TECH PARK &amp; SOFTWARE PARK

(단위 : Ha, %)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입주 기업수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 가능	임대 완료				
01	Saigon Hi-tech Park	913				94	- 한국기업5 (삼성CE 및 협력사)	1.2~2.3 /m <sup>2</sup> /yr
	+ Phase 1	300	145		97			
	+ Phase 2	613	500		96.4			
02	Quang Trung Software Park	43			100	119	- 소프트웨어, IT업종만 입주가능	

**II. 빈증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단위 : Ha, %)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 가능	임대 완료			
01	Ascendas - Protrade	500.00	342			- Phase 1 임대가능 - 입주기업: 45 (일본 60%) - 한국기업 3	55
	+ Phase 1		53		65-70		
02	Binh An IZ	24.14	18.40	18.40	100.0	- 100% 임대완료	
03	Binh Duong IZ	16.50	14.01	14.01	100.0	- 100% 임대완료	37.62
04	Dai Dang IZ	274.50	166.40		45.82	- 100% 대만 투자 공단 - 대만 회사들이 다수 입주 - 입주기업: 40 - 한국기업 1(금호 Electric)	65
05	Dat Cuoc IZ	212.8				- 입주기업: 39 - 한국기업 6	53~55
	+ Section A	104.0	62.0		80.0		
	+ Section B	108.0			45.0		
06	Dong An I IZ	138.70	92.84	92.82	100.0	- 100% 임대완료	120
07	Dong An II IZ	210	110		64.0	- Dong An I IZ 조성주체가 지분 보유 - 입주기업: 34 - 한국기업 2	75
08	Kim Huy IZ	213.63	144.69		50.52	- 입주기업: 12 - 한국기업 X	70
09	Mai Trung IZ	50.50	34.82	22.50	64.62	- 마스터플랜 제출 요구받음	
10	My Phuoc IZ	7,400				- 마스터플랜 제출 요구받음 - 빈증성에서 가장 큰 공단 - 조성주체: Becamex - 입주기업: 410 - 한국기업 98	60
	My Phuoc 1	400			100		
	My Phuoc 2	800			100		
	My Phuoc 3	2,200			98		
	Bau Bong (My Phuoc 5)	4,000			95		45 (Bau Bong)
11	Nam Tan Uyen IZ	620.5				- 조성주체: Nam Tan Uyen JSC - 입주기업: 148 - 한국기업 8	66
	Nam Tan Uyen I	332	288.98		100		
	Nam Tan Uyen II	288.5	200.75		82.7		
12	Phu Tan IZ	133.29	85.63		19.88 (2011)	- 개발업체 변경 중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 가능	임대 완료			
13	Rach Bap - An Dien IZ	278.60	189.0	-	79.0	- 조성주체: 국영기업 Dau Tieng Rubber Corp. - 조성주체가 고무쪽 기업이므로 고무, 라텍스를 이용한 제조업에게 매력적 - 입주기업: 39 - 한국기업 3	42
14	Song Than I IZ	178.00	153.23	153.23	100.0	- 100% 임대완료	37
15	Song Than II IZ	319.43	194.06	194.06	100.0	- 100% 임대완료	38
16	Song Than III IZ	533.84	319.79		67.0	- Song Than II 와 III IZ 조성주체 동일 - 입주기업 60 (주로 대만기업) - 한국기업 3	85
17	Tan Dong Hiep A IP	52.80	37.42	37.42	100.0	- 100% 임대완료	
18	Tan Dong Hiep B IP	162.92	104.00		80.0	- 100% 임대완료 - 한국기업 2	120~125
19	Thoi Hoa IZ (or My Phuoc IV IZ)	202.40	124.50			- My Phuoc I, II, III & Bau Bang IZ 개발업체인 Becamex가 조성주체 - 인프라 건설 중	
20	Viet Huong I IZ	36.06	25.07	25.07	51		35
21	Viet Huong 2 IZ	250.0	168.59		75.0	- Viet Huong I and II에는 대만기업이 많이 입주 - 하이테크 산업의 대규모 투자 우선시	50
	+ Phase 1	110.0				- 입주기업: 39	
	+ Phase 2	140.0				- 한국기업 5	
22	Vietnam-Singapore IP I (VSIP I)	500.0	325.0		100.0	- JTC Internatiional, KMP, United Overseas Bank, Mitsubishi Corp. led, Becamex의 JV가 조성 - 투자자: 485 - 한국투자자 40	
23	Vietnam-Singapore IP II (VSIP II)	345.0	224.25		100.0		
24	Vietnam-Singapore IP II-A	1,700.0	700		60-70		60

##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II-A (VSIP II-A)

소재지	Tan Uyen Town, Binh Duong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 J. V. Co., Ltd.
	주소	No.8, Dai Lo Huu Nghi, VSIP, Thuan An Town, Binh Duong
	연락처	(84.274) 374 3898
	팩스	(84.274) 374 3430
	이메일	thom.nt@vsip.com.vn
	홈페이지	www.vsip.com.vn
	Contact Person	Ms. Nguyen Thi Thom - Marketing Officer (한국어) H.P: 84 93 886 3637 - Email: thom.nt@vsip.com.vn

## ASCENDAS - PROTRADE SINGAPORE TECH PARK (AN TAY INDUSTRIAL ZONE)

소재지	An Tay Commune, Ben Cat Dist.,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ASCENDAS - PROTRADE COMPANY LIMITED
	주소	Unit 1801, Melinh Point Tower, 02 Ngo Duc Ke, Dist1, HCMC
	연락처	(84.28) 3823 9933
	팩스	(84.28) 3825 6080
	이메일	ascendasvietnam@ascendas.com
	홈페이지	www.ascendas.com/ascendasprotrade
	회사명	Ascendas Protrade Singapore Tech Park
	주소	An Tay Commune, Ben Cat Dist.,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786 388
	팩스	(84.274) 3786 392
	이메일	vietnam@ascendas.com
	홈페이지	www.ascendas-protrade.com / www.ascendas.com/apstp
	Contact Person	Ms. Tran Kim Tuyen - Senior Executive, Sales & Marketing H.P: 84 903 31 5717 - Email: tuyen.tk@ascendas.com

## DAT CUOC IZ

소재지	Dat Cuoc Commune, Tan Uyen Dist.,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BINH DUONG MINERAL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BIMICO)
	주소	Binh Duong Avenue, Thuan An Dist.,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682 792
	팩스	(84.274) 3682 563
	이메일	kcndatecuoc@bimico.com.vn
	홈페이지	www.bimico.com.vn
	Contact Person	Mr. Nguyen Thanh Liem - IZ's Vice Director Email: liemkcnatecuoc@gmail.com; liemenvir@gmail.com



## DONG AN II IZ

	소재지	Hoa Phu Ward,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Hung Thinh Trading, Manufacture,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주소	Binh Hoa ward, Thuan An Town,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752.130
	팩스	(84.274) 3.742.016
	이메일	hungthinh@dongancorp.com
	홈페이지	www.dongancorp.com
	Contact Person	Mr. Bui Manh Lan - General Director Mr. Pham Van Truong - Chief of Development Division Email: vantruong434@yahoo.com.vn

## KIM HUY IZ

	소재지	Phu Tan Ward,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KIM HUY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 LTD.
	주소	27/3 DT 743, Binh Chuan Commune, Thuan An Town,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815 015
	팩스	(84.274) 3815 014
	홈페이지	www.kcnkimhuy.com.vn
	Contact Person	Ms. Vo Thi Ngoc Thanh - Chief Accountant, Email: khip@kcnkimhuy.com.vn

## MY PHUOC INDUSTRIAL PARK (MPIP)

	소재지	Ben Cat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BECAMEX IDC CORP.
	주소	230 Binh Duong Blvd,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vince, Vietnam
	연락처	(84.274) 3811777
	팩스	(84.274) 3811666
	이메일	vninvest@becamex.vn
	홈페이지	www.becamex.com.vn
	Contact Person	Mr. Nguyen Cao Thuan - Deputy Marketing Director Email: thuanvn1979@becamex.com.vn

## NAM TAN UYEN INDUSTRIAL PARK

	소재지	Khanh Binh Commune, Tan Uyen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NAM TAN UYEN JOINT STOCK COMPANY
	주소	Khanh Binh Commune, Tan Uyen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연락처	(84.274) 3652 326~30
	팩스	(84.274) 3652 325
	이메일	namtanuyen@vnn.vn
	홈페이지	www.namtanuyen.com.vn
	Contact Person	Mr. Nguyen Minh Hung - General Director Email: nmhung@namtanuyen.com.vn

## RACH BAP INDUSTRIAL ZONE

	소재지	An Dien - An Tay Commune, Ben Cat Town, Binh Duong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An Dien Industry Joint Stock COMPANY
	주소	D1 Road, Rach Bap Industrial Park, An Dien Commune, Ben Cat Town,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578.963
	팩스	(84.274) 3578.964
	이메일	investment@rachbapip.com
	홈페이지	www.rachbapip.com
	Contact Person	Mr. Tran Bao Yen - Deputy General Director Ms. Tran Phuong Thao - Sales Executive Email: tranphuongthao.mkbr@gmail.com

## SONG THAN III INDUSTRIAL ZONE

	소재지	Tan Uyen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DAI NAM JOINT STOCK CORP.
	주소	1765A, Binh Duong Blvd., Hiep An Ward, Thu Dau Mot City,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845 845
	팩스	(84.274) 3821 734
	이메일	hd.group@hcm.vnn.vn
	홈페이지	www.laccanhdainamvanhien.vn
	Contact Person	Mr. Quach Hai Chau - Vice General Manger Email: qquang8888@yahoo.com.vn

## TAN DONG HIEP B IZ

	소재지	Tan Dong Hiep Commune, Di An Town,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PHU MY CO., LTD.
	주소	1, Road No. 4, Tan Dong Hiep B IZ, Dong Thanh, Tan Dong Hiep, Di An Dist.,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729 287
	팩스	(84.274) 3729 466
	이메일	phumy@tandonghiepbiz.com.vn
	홈페이지	www.tandonghiepbiz.com.vn
	Contact Person	Mr. Vo Tuong Lai - Vice General Director Email: tuonglaica@gmail.com

## VIET HUONG II IZ

	소재지	Hamlet 2, An Tay Commune, Ben Cat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VIET HUONG INVESTMENT DEVELOPMENT JSC
	주소	Viet Huong II IP, An Tay Commune, Ben Cat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연락처	(84.274) 3581368
	팩스	(84.274) 3754989
	이메일	vhip@viethuongip.com
	홈페이지	www.viethuongip.com
	Contact Person	Mr. Hang Vay Chi - General Director Ms. Ta Khiet Trinh - Vice General Director Email: jennyta@viethuongip.com

**Ⅲ. 동나이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단위 : Ha, %)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입주 기업수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가능				
01	Agtex Long Binh	34	28	100	13	- 100% 임대완료	45
02	Amata IZ	700	357	82.0	151	- 태국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SONADEZI의 JSC가 조성주체 - 한국기업 17	90
03	An Phuoc IZ	201	136.31	31.0	6	- 조성주체: Tin Nghia Corp. - 한국기업 1	65~75
04	Bau Xeo IZ	499,799	353	88.52	27	- 한국기업 7	50
05	Bien Hoa 1 IZ	335	231.08	100	93	- 100% 임대완료	70
06	Bien Hoa 2 IZ	365	261.00	100	120	- 100% 임대완료	65
07	Dau Giay IZ	330	210	50	16	- 주거지역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에 속함 - 한국기업 2	55
08	Dinh Quan IZ	54	37.80	100	11	- 100% 임대완료	25~30
09	Giang Dien IZ	529.2	332.81	38.26	27	- 한국기업 10	65
10	Go Dau IZ	184	136.70	100	21	- 100% 임대완료	45~60
11	Ho Nai IZ	496.65	302.35	41.68	99	- 한국기업2	65
12	Loc An - Binh Son	497.77	347.33	60.0	12	- 한국기업 9	65~70
13	Long Duc IZ	270	200	50	47	- 일본기업 46 - 한국기업 1	90
14	Long Khanh IZ	264.47	180.01	70	21	- 한국기업 2	48
15	Long Thanh IZ	488	309.13	88	97	- 한국기업 35	105
16	Long Binh Techno Park (LOTECO)	100	81.00	100	47	- 동나이성의 유일한 수출가공공단(EPZ) - 산업공단(IZ)도 함께 있음 (EPZ: 30%, IZ: 70%) - 100% 임대완료	40
17	Nhon Trach I IZ	446.5	321.72	95.0	74	- 한국기업 22	85
18	Nhon Trach II IZ	291	276.00	100.0	53	- Sonadezi: 51% 지분보유	45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입주 기업수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가능				
19	Nhon Trach II - Loc Khang IZ	70	42	70.0	8	- 조성주체: Loc Khang Trading & Investment Co., Ltd. - 한국기업 2	80
20	Nhon Trach II - Nhon Phu IZ	183.1	127	90.0	8	- 조성주체: Thao Dien Real Estate Corp. - 한국기업 1	95
21	Nhon Trach III IZ	697.2	495.5	95.00	119	- 조성주체: Tin Nghia Corp. - 한국기업 7	80~90
	+ Phase 1	336.7	233	100.0			
	+ Phase 2	360.3	262.5	92.0			
22	Nhon Trach V IZ	309.4	215.51	100.0	18	- 조성주체는 Ba Ria-VungTau 성의 2개 IZ에도 투자 (My Xuan A & Phu My 2) - 한국기업 12	60
23	Nhon Trach VI IZ	314.23	219.36	35.00	25	- 조성주체: Nhon Trach 6A Investment Construction Industrial Zone Co., Ltd., Tin Nghia Corp, Tuan Loc Construction Investment Corp. - 한국기업 4	100
24	Ong Keo IZ	823	486.4	59.0	16	- 중공업에게 유리 - 한국기업 1	110
25	Song May IZ	500	350	80.0	64	- 한국기업 5	60
26	Tam Phuoc IZ	323	214.74	100.0	58	- 100% 임대완료	60
27	Tan Phu IZ	49.76	33.41	30.0	1 (대만)	- 조성주체: Tin Nghia - 지리적 여건으로 임대료 저렴	24
28	Thanh Phu IZ	177.2	127	58.0	16	- 조성주체: DONA Transportation Construction JSC (DOTRANCO) - 한국기업 3	80
29	Vinatex - Tan Tao IZ	183.9	120.06	83.0	28	- 한국기업 8	75~80
30	Xuan Loc IZ	108.8	65.88	87.0	3	- 농업자원 풍부	50

**AMATA IZ**

	<b>소재지</b>	Long Binh Ward,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b>조 성 주 체</b>	<b>회사명</b>	AMATA (VIETNAM) JSC.
	<b>주소</b>	Long Binh Ward,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991 007
	<b>팩스</b>	(84.251) 3892
	<b>홈페이지</b>	www.amata.com
	<b>Contact Person</b>	Ms. Somhatai Panichewa – President Ms. Lieu Ngoc Mai – Marketing and Sales Manager H.P: 0903 90 3686 – Email: mai@amata.com

**AN PHUOC IZ**

	<b>소재지</b>	An Phuoc, Long Thanh, Dong Nai province, Vietnam
<b>조 성 주 체</b>	<b>회사명</b>	TIN NGHIA CORPORATION
	<b>주소</b>	96 Ha Huy Giap Street, Quyet Thang Ward,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 822486
	<b>팩스</b>	(84.251) 3 823747
	<b>홈페이지</b>	http://www.tinnghiacorp.com/
	<b>Contact Person</b>	Mr. Vu Van Luyen – Deputy Director – Email: luyen.vv@tinnghiacorp.com.vn Mr. Le Son Tung – Sales Dept. Email: sontungvn2002@yahoo.com Cellphone: 0982 399 579

**BAU XEO IZ**

	<b>소재지</b>	Song Trau, Tay Hoa, Hill 61 Commune, Trang Bom town, Trang Bom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b>조 성 주 체</b>	<b>회사명</b>	THONG NHAT JOINT STOCK COMPANY
	<b>주소</b>	Trang Bom District,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92 4377 – 392 4690
	<b>팩스</b>	(84.251) 392 4692
	<b>이메일</b>	info@bauxeo.com.vn
	<b>홈페이지</b>	www.bauxeo.com.vn
	<b>Contact Person</b>	Mr. Nguyen Hoang Dung – General Director Ms. Nguyen Thi Lo Hue – lohue26@yahoo.com.vn

## DAU GIAY IZ

	소재지	Bau Ham 2 Commune and Xuan Thanh Commune, Thong Nhat Dist.,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DAU GIAY INDUSTRIAL ZONE JOINT STOCK COMPANY
	주소	Thong Nhat District,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770945
	팩스	(84.251) 3771156
	이메일	kcn_daugiay@yahoo.com.vn
	홈페이지	www.kcndaugiay.vn
	Contact Person	Mr. Chau Van Hiep - General Director Email: kcn_daugiay@yahoo.com.vn

## GIANG DIEN IZ

	소재지	Giang Dien and An Vien communes, Trang Bom District and Tam Phuoc communes,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SONADEZI CORPORATION
	주소	No.1, Street 1, Bien Hoa 1 IZ,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연락처	+ 84 251 8860 561
	팩스	+84 251 8860 573
	이메일	marketing@sonadezi.com.vn
	홈페이지	www.sonadezi.com.vn
	Contact Person	Mr. Nguyen Anh Tuan - Business Manager Email: tuanna@sonadezi.com.vn

## HO NAI IZ

	소재지	Thanh Hoa Hamlet, Ho Nai 3 Commune, Trang Bom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HO NAI INDUSTRIAL ZONEJOINT STOCK COMPANY
	주소	Thanh Hoa Hamlet, Ho Nai 3 Commune, Trang Bom District,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617 039
	팩스	(84.251) 3671 040
	이메일	honiz@vnn.vn
	홈페이지	www.honiz.vn
	Contact Person	Mr. Thai Minh Quang - General Director Mr. Truong Quoc Khanh - Marketing & Business Director Email: khanhhoniz244@gmail.com

**LOC AN – BINH SON IZ**

	<b>소재지</b>	Loc An, Long An, Binh Son Commune, Long Than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b>조성주체</b>	<b>회사명</b>	VRG LONG THANH CORPORATION
	<b>주소</b>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527 544 – 545 – 546
	<b>팩스</b>	(84.251) 3527 918
	<b>이메일</b>	vrglongthanh@vnn.vn
	<b>홈페이지</b>	www.vrglongthanh.com.vn
	<b>Contact Person</b>	Mr. Nguyen Thanh Tung – General Director Email: vrglongthanh@vnn.vn

**LONG DUC IZ**

	<b>소재지</b>	Long Duc Ward, Long Than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b>조성주체</b>	<b>회사명</b>	LONG DUC INVESTMENT CO., LTD.
	<b>주소</b>	Long Duc Industrial Park, Long Duc Commune, Long Than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b>연락처</b>	(84.251) 320 1032
	<b>팩스</b>	(84.251) 320 1001
	<b>홈페이지</b>	www.longduc-ip.com
	<b>Contact Person</b>	Ms. Le Dung Hanh – Marketing Executive H.P: 0909 24 0679 – Email: hanh.le@longducip.com

**LONG KHANH IZ**

	<b>소재지</b>	BINH LOC Commune, LONG KHAN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b>조성주체</b>	<b>회사명</b>	LONG KHANH INDUSTRIAL ZONE JOINT – STOCK COMPANY
	<b>주소</b>	Long K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725.070
	<b>팩스</b>	(84.251) 3725.080
	<b>이메일</b>	kcnlongkhanh@vnn.vn
	<b>홈페이지</b>	www.kcnlongkhanh.com ; www.kcnlongkhanh.com.vn
	<b>Contact Person</b>	Mr. NGUYEN THANH SON – General Director Email: sonlokiz@yahoo.com



## LONG THANH IZ

	소재지	National Road 51,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Vietnam
조성주체	회사명	SONADEZI LONG THANH SHAREHOLDING COMPANY
	주소	Long Thanh Industrial Zone, Tam An Village, Long Thanh Dist,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51 4494 - 351 4497
	팩스	(84.251) 351 4492/99
	이메일	longthanhiz@sonadezi.com.vn ; sonadezilongthanh@gmail.com
	홈페이지	www.szl.com.vn
	Contact Person	Mr. Pham Anh Tuan - General Director Ms. Huynh Hoang Oanh - Deputy General Director Email: longthanhiz@sonadezi.com.vn

## NHON TRACH I IZ

	소재지	Nhon Trach District, Dong Nai Province, Vietnam
조성주체	회사명	IDICO URBAN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MPANY LIMITED
	주소	Ton Duc Thang St., Nhon Trach District,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560475
	팩스	(84.251) 3560477
	이메일	lockhang.ip@gmail.com
	홈페이지	www.idico-urbiz.vn
	Contact Person	Mr. Trinh Hung Lam -Director Email: urbizco@hcm.vnn.vn Mrs. Nguyen Thi Hoi - Investment Expert

## NHON TRACH II - LOC KHANG IZ

	소재지	Hiep Phuoc Commune and Phu Hoi Commune,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조성주체	회사명	LOC KHANG TRADING & INVESTMENT CO., LTD.
	주소	A3-09 Saigon Pearl Villas - 92 Nguyen Huu Canh Street, ward 22,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연락처	(84.28) 3514 9189
	팩스	(84.28) 3514 9144
	이메일	lockhang.ip@gmail.com
	Contact Person	Mr. Nguyen Manh Ha - Vice Director H.P: + 84 913.630.909

**NHON TRACH II – NHON PHU IZ**

	<b>소재지</b>	Phu Hoi Commune, NhonTrach Dist., Dong Nai Province
<b>조성주체</b>	<b>회사명</b>	THAO DIEN CORPORATION
	<b>주소</b>	25 Hoang HoaTham St., Ward 6,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b>연락처</b>	(84.28) 35510555 – 35510666
	<b>팩스</b>	(84.28) 35510777
	<b>이메일</b>	thaodiencorp@vnn.vn
	<b>홈페이지</b>	www.thaodienland.com
	<b>Contact Person</b>	Mr. Quach Hoang Hung – Deputy General Director Mr. Nguyen Tran Hai Dang – Marketing & Business Deputy Director H.P: 84 907 68 3688 email: haidang3007@yahoo.com

**NHON TRACH 3 IZ**

	<b>소재지</b>	Ton Duc Thang road, Hiep Phuoc commune, Nhon Trach district, Dong Nai province
<b>조성주체</b>	<b>회사명</b>	TIN NGHIA CORPORATION
	<b>주소</b>	96 Ha Huy Giap Street, Quyet Thang Ward,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 822486
	<b>팩스</b>	(84.251) 3 823747
	<b>홈페이지</b>	http://www.tinnghiacorp.com/
	<b>Contact Person</b>	Mr. Le Son Tung – Sales Dept. Email: sontungvn2002@yahoo.com

**NHON TRACH 6 IZ**

	<b>소재지</b>	Long Tho Commune, Nhon Trach District, Dong Nai Province, Vietnam
<b>조성주체</b>	<b>회사명</b>	NHON TRACH 6A INVESTMENT CONSTRUCTION INDUSTRIAL ZONE CO.,LTD.
	<b>주소</b>	Nhon Trach 6 IP building, Long Tho commune, Nhon Trach district, Dong Nai province
	<b>연락처</b>	(84.251) 3 566 789
	<b>팩스</b>	(84.251) 3 566 788
	<b>이메일</b>	nhontrach6ip@gmail.com
	<b>홈페이지</b>	www.nhontrach6ip.com
	<b>Contact Person</b>	Mr. Nguyen Thanh Dat – General Director Email: ntd91987@gmail.com

## ONG KEO 6 IZ

	소재지	Phuoc Khanh Commune,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ONG KEO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주소	Ong Keo IP,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569582
	팩스	(84.251) 3569584
	이메일	tinnghiaips@tinnghias.com.vn
	홈페이지	www.tinnghiacorp.com.vn
	Contact Person	Mr. Nguyen Duc Thang - Deputy Director Email: thang.nd@tinnghiacorp.com.vn

## SONG MAY IZ

	소재지	Bui Chu Hamlet, Bac Son Commune, Trang Bom Dist.,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SONG MA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JOINT VENTURE COMPANY (SINPACO)
	주소	Provincial Road No. 767, Bac Son Commune, Trang Bom District,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869 436, 3869 553/4
	팩스	(84.251) 3869 493
	이메일	songmayip@gmail.com
	홈페이지	www.songmayip.com.vn
	Contact Person	Mr. Tran Viet Hai - General Director Email: viethai_kcnsm@yahoo.com.vn

## TAN PHU IZ

	소재지	Ta Lai Street, Tan Phu Town, Tan Phu District,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TIN NGHIA CORPORATION
	주소	96 Ha Huy Giap Street, Quyet Thang Ward,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 822486
	팩스	(84.251) 3 823747
	홈페이지	http://www.tinnghiacorp.com/
	Contact Person	Mr. Le Son Tung - Sales Dept. Email: sontungvn2002@yahoo.com / Cellphone: 0982 399 579

**THANH PHU IZ**

	소재지	Thanh Phu Commune, Vinh Cuu Dist.,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Sonadezi Long Binh Shareholding Company
	주소	No. 1, 3A Street, Bien Hoa 2 Industrial Zone,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Viet Nam
	연락처	(84.251) 3834 700
	팩스	(84.251) 3 835 164
	이메일	thanhphu@szb.com.vn
	홈페이지	www.szb.com.vn
	Contact Person	Ms. Nguyen Thi Thanh Tam - Sales & Marketing Manager Email: tamnguyen@szb.com.vn

**VINATEX-TAN TAO IZ**

	소재지	Hiep Phuoc & Phuoc An Communes,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VINATEX - TAN TAO INVESTMENT CORPORATION
	주소	2A-4A Ton Duc Thang street, Saigon Riverside Office Center, District 1, Ho Chi Minh city
	연락처	(84.28) 38247922 - 38247923
	팩스	(84.28) 38247925
	홈페이지	www.vinatexin.com.vn
	Contact Person	Mr. Ngo Manh Hung - General Director Email: ngomanhung@gmail.com

**XUAN LOC IZ**

	소재지	Xuan Tam and Xuan Hiep Communes, Xuan Loc District, Dong Nai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SONADEZI LONG BINH SHAREHOLDING COMPANY
	주소	Bien Hoa 2 IZ,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연락처	(84.251) 383 4700
	팩스	(84.251) 3835 164
	이메일	marketing@szb.com.vn
	홈페이지	www.szb.com.vn
	Contact Person	Mr. Phan Dinh Tham - General Director Email: thamphan@szb.com.vn Mr. Nguyen Minh Duy - Sales Expert - person in charge H.P: 84 908 55 6279 - Email: duynguyen@szb.com.vn

### IV. 롱안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단위 : Ha, %)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투자 기업수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 가능				
01	Cau Tram IP	78.08	53.75	45.00	18	- 조성주체: Trung Thanh JSC - 한국기업 1	75
02	Duc Hoa I - Lucky IP	273.23			80	- 한국기업 4	82
	+ Phase 1	70	55	100			
	+ Phase 2	203.23	170	30			
03	Duc Hoa III - Anh Hong IP	55	41.91	60.00	5	- 조성주체: Anh Hong Investment Corporation - 한국기업 1	70~90
04	Duc Hoa III - Hong Dat IP	100.03	64.72	22.00	12	- 대만 2 베트남 10	50~55
05	Duc Hoa III - Resco IP	295.66	208.63	20.00	6	- 현지기업 9개가 함께 조성	55~60
06	Duc Hoa III - Viet Hoa IP	83.2	48.30	30.00	10	- 한국기업 x	60
07	Long Hau IP					- 기술인프라 훌륭 - 한국기업 13	95
	+ Long Hau 1, 2	288	220	87	145		
	+ Long Hau 3	150					
08	Long Hau - Hoa Binh IP	125	86	50.00	16	- 일본, 베트남 JV가 조성 - 한국기업 4	56~58
09	Nhut Chanh IP	105.95	73.92	85.00	22	- 조성주체: Thanh Yen JSC - 한국기업 1	70~90
10	Phu An Thanh IP	307	211	44.00	19	- 한국기업 6	82~92
11	Phuc Long IP	79	55.84	50.00	24	- 한국기업 7	95~110
12	Tan Duc IP	1,142	545		134	- 조성주체: Tan Duc Investment JSC - 한국기업 9	90~120 75~90
	+ Phase 1		275	95.00			
	+ Phase 2		270	10.00			
13	Thai Hoa IP	100.27	70.28	63.00	57	- 베트남, 대만기업 조성 - 한국기업 7	55~60
14	Thuan Dao IP	765			25	- Phase 1: 100% 임대완료 - 한국기업 3	75~80
	+ Phase 1	113	73.92	100.0			
	+ Phase 2	189	130.25	65.00			
	+ Phase 3	461					
15	Xuyen A IZ	481	350	49.00	94	- 한국기업 9	60~90

**CAU TRAM IZ**

소재지		Cau Tram Hamlet, LongTrach Commune, Can Duoc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조성주체	회사명	TRUNG THANH SERVICE CONSTRUCTIONS & IMPORT - EXPORT JOINT STOCK COMPANY
	주소	Cau Tram Hamlet, LongTrach Commune, Can Duoc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연락처	(272).3721.941
	팩스	(272).3721.940
	이메일	bqlkcn_cautram@yahoo.com.vn
	Contact Person	Mr. Vo ThanhTrung - General Director H.P: 84 903.006.028

**DUC HOA I - LUCKY IZ**

소재지		Hamlet 5, Duc Hoa Dong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조성주체	회사명	LUCKY EXPLOIT SHAREHOLDING COMPANY
	주소	Duc Hoa I Industrial Park, Duc Hoa Dong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779 435
	팩스	(84.272) 3779 437
	홈페이지	www.duchoa1.com.vn
	Contact Person	Ms. Tran Khanh Tam - Sales Manager Email: tamkhanh77@yahoo.com

**DUC HOA III - ANH HONG IZ**

소재지		Duc Hanh 2 Hamlet, Duc Lap Ha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조성주체	회사명	ANH HONG INVESTMENT CORPORATION
	주소	Road No. 823, Duc Lap Ha Commune, Duc Hoa Distric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759669
	팩스	(84.272) 3759667
	이메일	anhhongip@yahoo.com.vn
	Contact Person	Mr. Le Anh Hong - General Director

## DUC HOA III - HONG DAT IZ

	소재지	Duc Lap Ha Commune, Duc Hoa District, Long An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Hong Dat Long An Joint Stock Company
	주소	371B Pham Ngu Lao St., Pham Ngu Lao Ward, Dist. 1, HCM City
	연락처	(84.28) 3925 5645
	팩스	(84.28) 3925 5644
	홈페이지	www.hongdatiz.com
	Contact Person	Mr. Ta Ngoc Huy - Director Ms. Tran Thi Thu - Sales Manager Email: thuhd2012@gmail.com

## DUC HOA III - RESCO IZ

	소재지	Duc Ngai 2 Hamlet, Duc Lap Thuong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DUC HOA III - RESCO INDUSTRIAL & TOWN PARK JSC
	주소	My Hanh Bac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HCMC) 267 Dien Bien Phu St., W.7, Dist. 3, HCMC
	연락처	(84.28) 3930 5757
	팩스	(84.28) 3930 5959
	이메일	dieuvtk@daresco.com.vn
	홈페이지	www.daresco.com.vn
	Contact Person	Mrs. Vo Thi Kim Dieu - Sales and Marketing Manager Email: dieuvtk@daresco.com.vn

## DUC HOA III - VIET HOA IZ

	소재지	Duc Lap Ha village, Duc Hoa District, Long An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PHU MY VINH CONSTRUCTION AND INVESTMENT COMPANY
	주소	287 Nguyen Thien Thuat St., Ward 1, Dist.3, HoChiMinh City
	연락처	(84.28) 38357282
	팩스	(84.28) 38357283
	이메일	info@phumyvinh.com
	홈페이지	www.phumyvinh.com
	Contact Person	Mr. Tran Nguyen Phuoc Cuong - General Director Mr. Nguyen Phuc Hung - Marketing & Business Email: nguyenphuchung@phumyvinh.com

**LONG HAU IZ**

	소재지	Long Hau Commune, Can Giuoc District, Long An Province
조성주체	회사명	Long Hau Corporation
	주소	CanGiuoc Commune, Long Hau Distric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8) 37818929
	팩스	(84.28) 37818940
	이메일	sales@longhau.com.vn
	홈페이지	www.longhau.com.vn
	Contact Person	Mr. Cho Chang Seok - Investment Promotion Manager H.P: 0120 788 5911; Fax: (84.8) 37818940; Email: cho.changseok@longhau.com.vn

**LONG HAU - HOA BINH IZ**

	소재지	Hamlet 7, Nhi Thanh Commune, Thu Thua Dist., Long An Province
조성주체	회사명	HOA BIN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VESTMENT CORPORATION
	주소	Hamlet 7, Nhi Thanh Commune, Thu Thua Dis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613 554
	팩스	(84.272) 3613 565
	이메일	sales@longhau-hoabinh.com.vn
	홈페이지	www.longhau-hoabinh.com.vn
	Contact Person	Ms. Duong Thi Minh Thu - Sales Manager

**NHUT CHANH IZ**

	소재지	Road No.832, Hamlet 5, Nhat Chanh Commune,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조성주체	회사명	Thanh Yen Joint Stock Company
	주소	Road No. 832., Hamlet 5, Nhat Chanh Commune,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HCMC) 07 Thanh Da St., Ward 27, Binh Thanh Dist., HCM
	연락처	(84.272) 3633 597 / (HCMC) (84.28) 3899 9988
	팩스	(84.272) 3637 299 / (HCMC) (84.28) 3899 0077
	홈페이지	www.thanhvien.com
	Contact Person	Mr. Nguyen Ngoc Ngoan - Sales Executive Email: nguyennngocngoan@thanhvien.com



## PHU AN IZ

	소재지	Provincial Road No. 830, An Thanh Commune,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PHU AN THANH COMPANY
	주소	Ben luc Distric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655746
	팩스	(84.272) 3655709
	이메일	info@pat-ip.com
	홈페이지	www.pat-ip.com
	Contact Person	Mr. Nguyen Thanh Quang - Vice Director Email: quang.nguyen@pat-ip.com

## PHUC LONG IZ

	소재지	Quarter 9, Ben Luc Commune,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PHUC LONG COMPANY LTD.
	주소	No 400, National way 1A, Ben Luc Commune,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연락처	(84.272) 3655.705
	팩스	(84.272) 3655.704
	이메일	phuclong-kcn@phuclonggroup.com
	홈페이지	www.phuclonggroup.com
	Contact Person	Mr. NGUYEN DINH THUY - Marketing & Sales Manager H.P: +84 982 39 40 51 / Email: thuykhucongnghep@gmail.com

## TAN DUC IZ

	소재지	Duc Hoa Ha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TAN DUC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TADICO)
	주소	Lot 8, Duc Hoa Ha St., Tan Duc Industrial Park, Duc Hoa Ha Co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761 821 - 3762 565
	팩스	(84.272) 3761 820
	이메일	contact@itagroup-vn.com
	홈페이지	www.itaexpress.com.vn ; www.tanduccity.com
	Contact Person	Mr. Le Hung Anh - Sales & Marketing Expert lhanh@itagroup-vn.com

## THAI HOA IZ

	소재지	Tan Hoa Hamlet, Duc Lap Ha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Vietnam
조 성 주 체	회사명	VIETS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주소	Tan Hoa Hamlet, Duc Lap Ha Commune, DucHoa Distric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 759 999
	팩스	(84.272) 3 759 015
	홈페이지	www.thip.vn
	Contact Person	Mr. Veerapong Sawatyanon - General Director Mrs. Tran Thi Cam Nhung - DGM Email: cn@thip.vn

## THUAN DAO IZ

	소재지	First Phase: Nguyen Trung Truc St., Ben Luc Town,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Second Phase: Long Dinh Commune, Can Duoc Dist., Long An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Dong Tam Industrial Zone Joint Stock Company (Dong Tam Group)
	주소	Nguyen Trung Truc St., Ben Luc Town, Ben Luc Dist., Long An Province
	연락처	272 363 1518- Ext. 105 or 168
	팩스	272 363 1519
	홈페이지	www.thuandao.com
	Contact Person	Mr. Nguyen Mon - Director Email: monn@dongtam.com.vn ; monnguyendt@gmail.com H.P: (+ 84 -0) 903 980 243 ; (+ 84 -0) 909 82. 1368

## XUYEN A IZ

	소재지	Tram Lac Hamlet, My Hanh Bac Commune, Duc Hoa District, Long An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NGOC PHONG JOINT STOCK COMPANY
	주소	Trans-Asia Industrial Park, My Hanh Bac Commune,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연락처	(84.272) 384 9272 - 384 9305
	팩스	(84.272) 384 9271
	이메일	info@xuyenatip.com
	홈페이지	www.xuyenatip.com
	Contact Person	Mr. Truong Minh Tho - Sales Manager Email: minhtho.sale@gmail.com

### V. 바리아-붕따우성 수출가공공단, 공단

(단위 : Ha, %)

연번	수출가공공단/공단	부지면적			입주율	입주 기업수	비고	임대료
		전체	임대 가능	임대 완료				
01	Cai Mep IZ		284			20		70
02	Chau Duc IZ		1,556			5		55
03	Dat Do 1 IZ		301					42
04	Dong Xuyen IZ	160.8	104.30		100	72	- 100% 임대완료	1.76 /m <sup>2</sup> /yr
05	My Xuan A IZ	304	228	197.6		32		
06	My Xuan A2 IZ	313	100			26	- 한국기업 1	60
07	My Xuan B1 - CONAC IZ	226.15	157.71			13	- 한국기업 3	50
08	My Xuan B2 - Dai Duong IZ	147.5	94.98			3		55~65
09	My Xuan B1 - Tien Hung IZ	200	140			16	- 한국기업 2	40~50
10	Phu My 1 IZ		695		91	21		1.65 /m <sup>2</sup> /yr
11	Phu My 2 IZ		212.4			9	- 한국기업 2	
12	Phu My 3 IZ	999	465.49			1		70

#### CAI MEP IZ

소재지	Phuoc Hoa,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Saigon Construction Corporation
	주소	18A Dinh Tien Hoang, Dakao Ward, District 1, HCMC
	연락처	(84.28) 3910 4922
	팩스	(84.28) 3910 4052
	이메일	info@kcncaimep.vn
	홈페이지	www.kcncaimep.vn
	Contact Person	Anh Duy Email: duydonz@gmail.com

## CHAU DUC IZ

	소재지	Nghia Thanh, Suoi Nghe, Chau Duc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Sonadezi Chau Duc JSC
	주소	101 Nguyen Thai Hoc, Vung Tau City,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574775
	팩스	(84.254) 574776
	이메일	chauduc@sonadezi.com.vn
	홈페이지	www.sonadezi.com.vn
	Contact Person	Vu Quan - Deputy Sales Manager Email: vuquan@sonadezi.com.vn Mobile: 0908409090

## DAT DO 1 IZ

	소재지	Phuoc Long, Dat Do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Tin Nghia - Phuong Dong IP JSC
	주소	Long Hai, Long Dien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3363511
	팩스	(84.254) 3663499
	홈페이지	tinnghiaips.com/contact.html
	Contact Person	Phan Thanh Lam Email: tinnghiaphuongdong@timexco.com.vn

## DONG XUYEN IZ

	소재지	30 Thang 4 Street, Rach Dua Ward, Vung Tau City,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IZICO(Phu My 1 and Dong Xuan IZ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Operation Company)
	주소	20 3 Thang 2 Street, Ward 8, Vung Tau City,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359 3440
	팩스	(84.254) 359 3441
	홈페이지	www.izico.com.vn
	Contact Person	

## MY XUAN A IZ

	소재지	Tan Thanh Distrci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IDICO(Vietnam Urban and IZ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주소	151 Nguyen Dinh Chieu, District 3, HCMC
	연락처	(84.28) 3931 2660
	팩스	(84.28) 3931 2705
	홈페이지	www.idico.com.vn
	Contact Person	

## MY XUAN A2 IZ

	소재지	My Xuan,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FIDC(Formosa International Diabolo Competition)
	주소	My Xuan,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389 9164
	팩스	(84.254) 389 9164
	Contact Person	

## MY XUAN B1 - CONAC IZ

	소재지	Tan Thanh Distrci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IDICO - CONAC(IDICO Investment Construction Oil and Natural Gas)
	주소	326 Nguyen An Ninh, Ward 7, Vung Tau City,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383 8423
	팩스	(84.254) 383 8422
	홈페이지	idicoconac.vn
	Contact Person	Ms. Trang Email: trang_idicoconac@yahoo.com

## MY XUAN B1 - DAI DUONG IZ

	소재지	My Xuan,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Dai Duong Company Ltd.
	주소	162/7 Binh Loi, Ward 13, Binh Thanh District, HCMC
	연락처	(84.28) 2216 3688
	팩스	(84.28) 3526 2487
	홈페이지	daiduongcompany.com.vn
	Contact Person	Nguyen Van Tu Email: tunguyen@daiduongcompany.com.vn

## MY XUAN B1 – TIEN HUNG IZ

	소재지	My Xuan,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Tien Hung Trading Manufacturing Co., Ltd.
	주소	150-152 Ngo Quyen, Distrcit 10, HCMC
	연락처	(84.28) 3855 2757
	팩스	(84.28) 855 3137
	Contact Person	

## PHU MY 1 IZ

	소재지	Phu My,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IZICO(Phu My 1 and Dong Xuan IZ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Operation Company)
	주소	20 3 Thang 2 Street, Ward 8, Vung Tau City,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359 3440
	팩스	(84.254) 359 3441
	홈페이지	www.izico.com.vn
	Contact Person	

## PHU MY 2 IZ

	소재지	Phu My,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IDICO(Vietnam Urban and IZ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주소	151 Nguyen Dinh Chieu, District 3, HCMC
	연락처	(84.28) 3931 2660
	팩스	(84.28) 3931 2705
	홈페이지	www.idico.com.vn
	Contact Person	

## PHU MY 3 IZ

	소재지	Phuoc Hoa Ward,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조 성 주 체	회사명	Thanh Binh Phu My JSC
	주소	Phuoc Hoa Ward, Tan Thanh District, Ba Ria - Vung Tau Province
	연락처	(84.254) 393 6838
	홈페이지	www.phumy3.com
	Contact Person	